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

2025. 6.



Contents

I. 기술지주회사 개요 9

1.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및 관련 법령	10
가.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배경	10
나.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및 제도 유형	13
다. 기술지주회사 제도별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20
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요	23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주요내용	23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유형 및 방식	26
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개정내용	27

II.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33

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검토 단계	34
가.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거버넌스 개선 및 발전전략 검토	34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사업타당성 절차 기반 마련	35
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단계	39
가.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39
나. 사업화 대상기술(현물출자용 기술)의 선별 및 기술가치평가 실시	41
다.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설립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44
라. 설립인가 정량 요건 등 사전검토 및 설립인가 신청 안내	46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법인설립 단계	48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48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법인설립	49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53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53

III.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 57

1. 경영일반	58
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업무	58
나.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업무	60
2.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리	63
가. 자회사 설립방식	63
나. 자회사 투자실무	64

다. 자회사 성장지원	69
라. 자회사 투자회수	71
3.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79
가.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방안	79
나. 대학창업펀드 결성 및 운영 방안	83
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방안	86
4. 수익사업 모델	92
가. 기술지주회사의 수익모델	92
나. 공공사업	92
다. 컨설팅사업	93
라. 기타 수익사업	94
5. 수익금 처리 및 보상	99
가. 수익금 처리	99
나. 발명자 보상	102
다. 기여자 보상	107

IV. 부록 111

1.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 및 각 단계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112
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114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117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	121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정관 예시	128
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	134
7.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신청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양식	141
8. 기술사업화 발명자보상 계약서 예시	146
9.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50

참고문헌 155

표 목차

<표 1-1> 산학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10
<표 1-2> 대학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	11
<표 1-3> 간접 기술사업화 모델의 한계	11
<표 1-4> 국내 법률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 보유 요건	13
<표 1-5> 기술지주회사 제도별 주요 내용 비교	16
<표 1-6> 현행 법령 상의 기술지주회사 제도 유형	18
<표 1-7> 기술지주회사의 개념에 따른 국내외 대학의 사례 구분	19
<표 1-8> 기술지주회사 설립 유형에 따른 장·단점	26
<표 1-9> ('11.07.25.) 「산학협력법」 개정 주요내용	28
<표 1-10> ('20.12.) 「산학협력법」 개정 주요내용	29
<표 1-11> ('24.12.20.) 「산학협력법」 개정 주요내용	30
<표 2-1>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발전모형(예시)	34
<표 2-2>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접근방법(예시)	35
<표 2-3> 사업화 유망기술 및 사업화아이템 검증 절차(예시)	36
<표 2-4> 기술사업화 분야별 협력기관 구축(예시)	36
<표 2-5> 사업화 타당성 검토(예시)	36
<표 2-6> 자회사 설립을 위한 세부사업기획 절차(예시)	37
<표 2-7>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접근방법(예시)	38
<표 2-8> 기술가치평가 체크리스트(분석요소) (예시)	42
<표 2-9>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 기술평가기관(2025년 6월 기준)	43
<표 2-10> 정관 기재사항	45
<표 2-1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법적 설립요건	47
<표 2-12>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지방세 납부 세율	50
<표 2-13> 4대보험 관련기관 연락처	51
<표 2-14> 신고사항 이행에 따른 필수 주의사항	52
<표 3-1> 주주총회 결의사항(권한) 및 의사결정방법	59
<표 3-2> 이사회 결의사항(권한) 및 의사결정방법	59
<표 3-3> 기술지주회사 변경사항 중 분기별 조사 보고 갈음 항목	62
<표 3-4> 자회사 설립 유형에 따른 장·단점	64
<표 3-5> 주주간계약서 주요 항목	69
<표 3-6> 창업 보육 활동	69

<표 3-7> 투자회수 주요 방식	71
<표 3-8> 상장의 종류	74
<표 3-9>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	76
<표 3-10> 개인투자조합 관련 법령	79
<표 3-11> 개인투자조합 요건	80
<표 3-12> 대학창업펀드 선정 대학 현황	83
<표 3-13> 모태펀드 자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85
<표 3-14> 벤처투자조합 관련 법령	87
<표 3-15> 벤처투자조합 결성 요건	87
<표 3-16> 벤처투자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제출서류	91
<표 3-17> 기술지주회사 업무 범위 및 수익모델	92
<표 3-18> 기술지주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사업 예시	92
<표 3-19> 기술지주회사 컨설팅사업의 한계	94
<표 3-20> 펀드 운용에 따른 수입	94
<표 3-21>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 개요	96
<표 3-22>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평가항목	96
<표 3-23> 자회사 주식 매각 수익의 종류와 고려 사항	100
<표 3-24> 출자비율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
<표 3-25>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발명보상 할 수 있는 「산학협력법」 개정안	105
<표 3-26> 기여자 보상 항목 및 총액 산정 예시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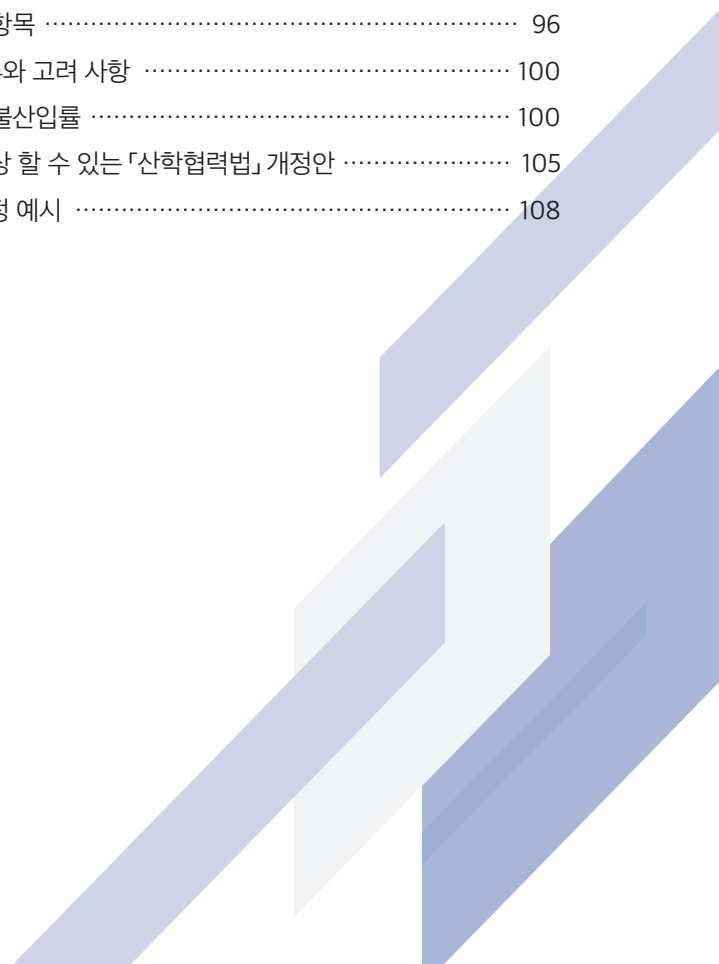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1] 산학협력단의 조직체계 및 업무흐름	11
[그림 1-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배경	12
[그림 1-3] 대학의 R&D와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13
[그림 1-4] 지주회사 유형별 구분	15
[그림 1-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체계	15
[그림 1-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절차(예시)	20
[그림 1-7]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절차	21
[그림 1-8]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절차	22
[그림 1-9]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개념	23
[그림 1-10]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역할 및 주요업무	24
[그림 1-1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체계(예시)	24
[그림 1-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수익모델	25
[그림 1-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투자회수	25
[그림 1-1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유형	26
[그림 2-1] 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단계 프로세스	39
[그림 2-2] 단독설립형 - 설립 프로세스(예시)	40
[그림 2-3] 공동/연합설립형 - 설립 프로세스(예시)	40
[그림 2-4] 사업화 대상기술 발굴 프로세스(예시)	41
[그림 2-5] 기술가치평가 절차(소득접근법 기준)	43
[그림 2-6]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설립 계획서 양식	46
[그림 2-7]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단계 프로세스	48
[그림 2-8]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양식(산학협력법 시행규칙 - 별지 제4호 서식)	49
[그림 2-9]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법인 설립 단계 프로세스	49
[그림 2-10]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단계 프로세스	53
[그림 2-11]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 양식(산학협력법 시행규칙 - 별지 제4호의3 서식)	54
[그림 3-1] 주식회사 운영체계	58
[그림 3-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업무 추진 프로세스(예시)	61
[그림 3-3] 기술지주회사 분기/연간조사 안내문(예시)	61
[그림 3-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편입)·지원·투자회수 프로세스(예시)	62
[그림 3-5]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방식	63
[그림 3-6] 일반적인 자회사 설립 절차	64

[그림 3-7]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절차	67
[그림 3-8]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68
[그림 3-9] 기술지주회사 창업 전/후 성장지원(예시)	70
[그림 3-10]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회수 방식	72
[그림 3-1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출자와 수익 흐름	72
[그림 3-12]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76
[그림 3-13]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신청	80
[그림 3-14] 대학창업펀드 운영 구조	83
[그림 3-15] 창업기획자가 GP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업무 이행 판단 사례	89
[그림 3-16] 운용사별 결성가능한 투자조합 형태	95
[그림 3-17] 펀드 투자 프로세스	97
[그림 3-18] 기술지주회사 주요 수익모델	98
[그림 3-19]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의 흐름	99
[그림 3-20]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의 활용	102
[그림 3-21] 현물출자 자회사의 수익 발생 후 발명자 보상까지의 과정	103
[그림 3-22]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발명자 보상 불공정 이슈	10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



I

기술지주회사 개요

01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및 관련 법령

가.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배경

- 주요 선진국은 지식기반으로 하는 국가경제체제 구축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산학협력을 활용
 - 글로벌 경쟁 속 주요 선진국의 각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속한 시장 적응을 위해서 기초과학과 응용기술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산학협력 전략 적극 활용
 - 대학에서도 현장중심, 글로벌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연구실(Lab)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순환형 연구개발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협력 추진
 - 이러한 산학협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과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산업융합 및 신산업을 만들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2002년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를 주축으로 15개의 정부부처가 범부처적 기획단을 구성하여 발표한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현재의 대학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개정(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지식산업사회에서 대학과 산업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대학 스스로 능동적인 산학협력체제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표 1-1> 산학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 경 제 환 경: 전통적 산업사회 → 지식기반경제사회 • 경쟁력의 기반: 자본 / 노동력 → 신지식/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통한 새로운 부의 창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혁신체제(NIS) 확립
• 기업 및 대학의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 촉매제 개발 - 산업체가 기술경쟁력을 구비함에 있어 산학연협력에 적극 동참하게 하여 협력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체험하도록 유도 - 산(産)·학(學)·연(研) 협력을 통하여 대학은 폐쇄적 상아탑에 안주하기 보다는 기업가정신과 산업현장의 경쟁풍도를 학내에 고취하고, 재정적 자생력 향상이 절실

자료: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협력활성화 종합대책(2002. 02.) 中 발췌

- 상기 종합대책은 기본방향에서 ‘산학연 협력을 조장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완화, 인센티브제도 및 법적 지원·촉진 체제 마련 등에 중점을 둔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목표에서는 ‘지식/기술의 체계적인 이전 여건 구비’와 이에 따른 ‘산학연 관련 사업 계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하고, 특허권 등 연구성과의 소유주가 되는 대학 내 법인격 부여 조직 설치’ 및 ‘산학연 협력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지식재산권 등)의 합리적 배분체계 확립’ 등의 내용을 제시
- 2003년 9월 1일부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본격화
 - 개정된 「산학협력법」에 따라 이전에는 산학교육에 국한하여 협력관계를 이루어 왔던 교육계와 산업계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산업계와 교육계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체·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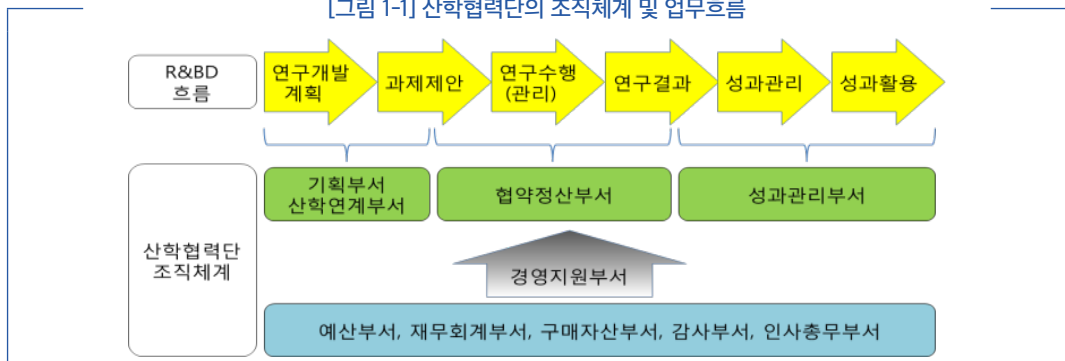
- 「산학협력법」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치,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며, 대학 내의 하부조직이기는 하나 독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취득 및 권리 행사, 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지출을 대학의 일반회계, 교비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회계로 운영

<표 1-2> 대학 산학협력단의 주요업무

- 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②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③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④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⑤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⑥ 직무발명과 관련 기술을 제공,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등

-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산학협력 R&BD 전단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그림 1-1] 산학협력단의 조직체계 및 업무흐름



출처 : 이지훈(2021),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춘 정부정책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구조개혁, 대학 정원감축, 학과 간 구조조정 및 지역산업과 연계 등의 사유로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학협력 인프라(제규정·시스템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업무 체계화),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 기술이전, 학교기업, 교원창업, 창업보육센터 등을 도입하였으나, 간접 기술사업화 모델의 한계에 봉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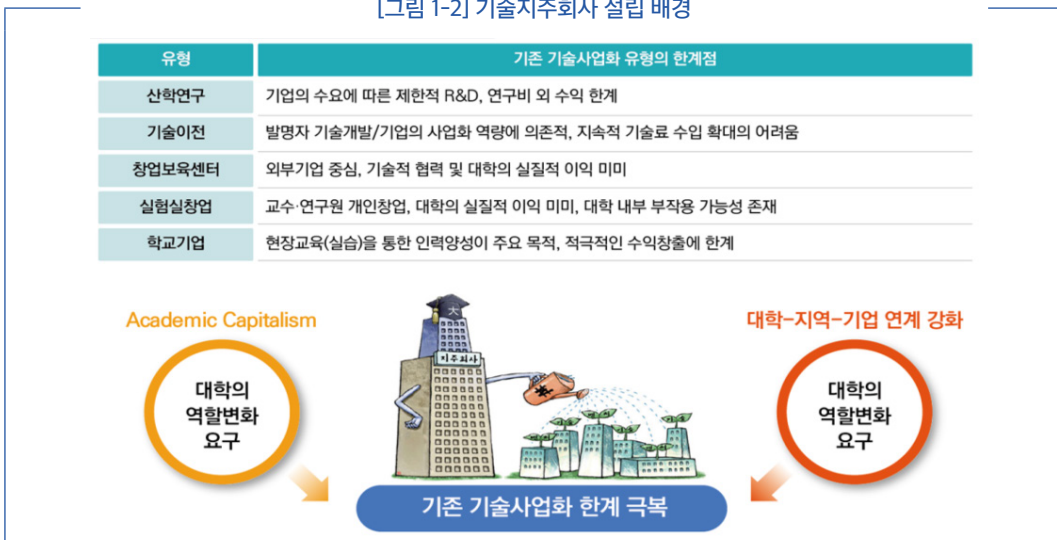
<표 1-3> 간접 기술사업화 모델의 한계

구분	사업화 유형	간접 기술사업화 모델(BM) 한계점
기반 구축	산학연구	연구개발이 기업의 수요에 따른 제한적 R&D, 연구비 외 수익 한계
	성과관리	지식재산권 권리화(출원·등록)를 하였으나 유지관리 한계
간접 사업화	기술이전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의존적, 지속적 기술료 수입 확대의 어려움
	학교기업	비영리적 교육목적의 실험·실습 중심의 운영 구조로 수익사업 활동 한계
	실험실창업	교수 개인 창업, 대학의 실질적 이익 미미, 대학 내부의 부작용 가능성
	창업보육센터	외부기업 중심, 기술적 협력 및 대학의 실질적 이익 미미

● 기술지주회사 설립 배경

- 산학협력 패러다임의 변화는 유형자산 위주의 산업사회에서 기술력,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이 핵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과학과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져 더욱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산학협력이 필요하게 됨
- 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역할과 더불어 연구결과물을 활용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 재정에 기여 및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할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능동적인 산학협력 모델이 필요해짐에 따라 대학의 간접 기술사업화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 및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모델을 도입하여 산학협력 기반의 기업연계, 기술이전, 기술창업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그림 1-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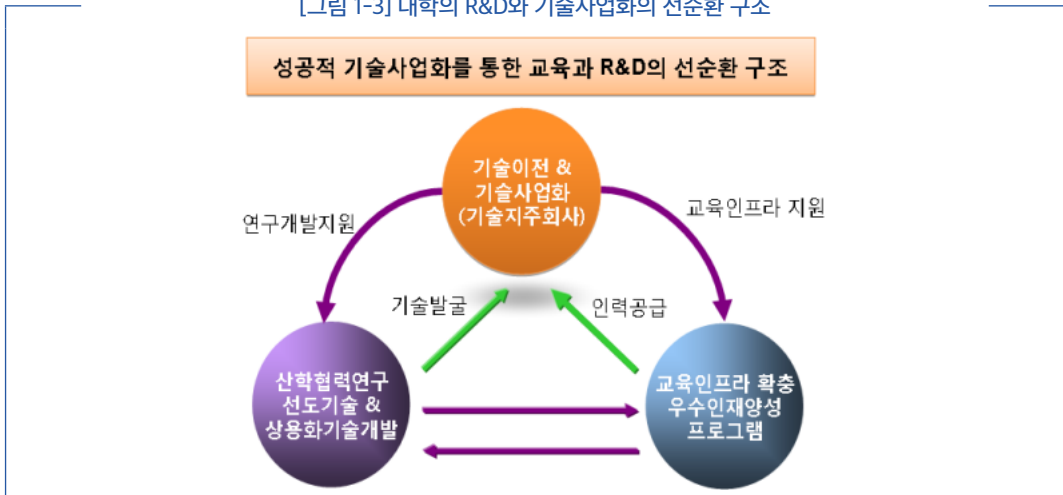


출처 : 김유신·이지훈 외(2012),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매뉴얼”, 한국연구재단

- 기존 기술사업화 유형의 단점을 극복·보완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연구개발→지식재산권 확보→기술사업화→수익금 환류) 고도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 2007년 8월 3일 「산학협력법」을 일부 개정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하여 운영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하여 운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대학의 연구 활동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에서 창출한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산학협력 모델 도입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으로 사업지주회사가 아닌 순수지주회사¹⁾로서,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자·이전하여 자회사를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직접 기술사업화를 통해 대학 연구성과의 산업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 창출을 도모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원을 확충·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

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목적은 기술의 직접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지원에 있으며, 경영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설립하는 상법상 지주회사와는 다름

[그림 1-3] 대학의 R&D와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출처 : 김유산·이지훈 외(20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매뉴얼”, 한국연구재단

-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²⁾(1차: 2019~2023, 2차: 2024~2028)」의 수립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공공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전환, 육성하여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주기 주도 및 지원하는 모델로 구축하고자 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음

나.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및 제도 유형

〈표 1-4〉 국내 법률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 보유 요건

유형	관련 법률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 보유 요건
지주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야 함 •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벤처 지주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금융 지주회사	금융 지주회사법	•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어야 함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2) 2024.1.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안) 발표

<표 1-4> 국내 법률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 보유 요건

유형	관련 법률	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 보유 요건
산학연협력 기술 지주회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산학협력단 등 설립주체기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하여야 함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지주회사 개념

- 우리나라 법령상의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주식의 일정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상법」 제342조의 2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와 그 다른 회사 간의 관계를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한다는 지주회사의 개념을 적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최소 지분율 규정을 적용

● 대학의 지분 보유 관계로 볼 때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산학협력단 등)의 자회사임

- 대학(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42조의 2에 따른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 관계가 성립
- *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기술지주회사 공동 설립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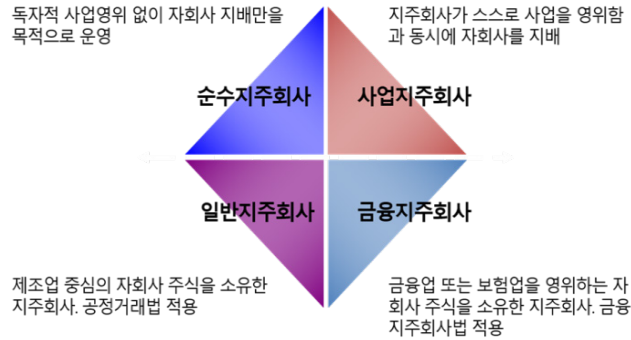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지는 「산학협력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의 규정을 고려할 때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기는 어려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전문조직(주식회사)이며, 다양한 자회사 설립 유형³⁾(단독형, 합작설립형, 지분편입형)이 있음
 - 국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순수/일반, 사업/금융 지주회사로 분류할 수 있음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운영 및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사업지주회사 성격도 있음

3) 단독형: 독자적인 신규회사를 설립, 합작설립형: 외부기업과 조인트벤처 형태로 설립, 지분편입형: 기존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해 설립

[그림 1-4] 지주회사 유형별 구분

국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순수/일반, 사업/금융 지주회사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주회사 성격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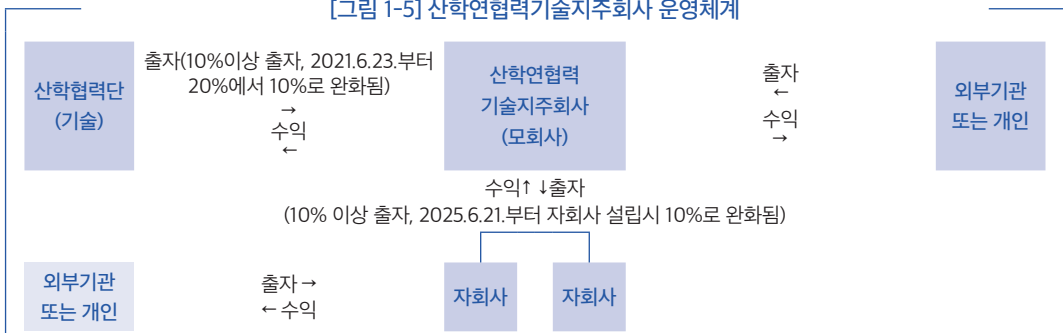
지주회사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
 *「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출처 : 집필진 작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개념

-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교육부에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
- 「산학협력법」 제2조의 8호에서 정의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그림 1-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체계



출처 : 집필진 작성

● 국내 기술지주회사 제도 유형

-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중

<표 1-5> 기술지주회사 제도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근거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산학협력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벤처기업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기술이전법)
주무 부처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설립 방식	인가제	등록제	등록제
대상 및 설립주체	산학협력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 (위의 기관과 공동으로 학교법인(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기관도 설립 가능)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 단, 대학 산학협력단은 제외)
	공공연구기관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산업교육기관하고 공동 설립으로만 참여 가능	공공연구기관 가능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할 필요)	공공연구기관 가능
목적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창업촉진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특징	「산학협력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대학 또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법」을 준용	「벤처기업법」은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개의 조문마다 특례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음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를 설립 또는 편입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
설 립 요 건	회사종류	주식회사	주식회사
	임원결격 규정	있음	있음
	현물출자 특례규정	있음	있음
	시설규정	있음	있음
	보유기술 제한규정	별도규정 없음	녹색기술, 첨단기술 (단, 산학협력단 보유기술 제외)
	설립주체 지분 보유율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 현물출자,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 초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자 회 사 설 립 요 건	주주총회	보통결의 (2011년 7월 법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 삭제)	특별결의 (단, 대학은 자회사 설립불가)
	회사종류	주식회사/유한회사	별도규정 없음
	지분 보유율	설립(편입)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이상 보유	2년간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 보유

<표 1-5> 기술지주회사 제도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업무 범위	•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 • 자회사의 기업공개 지원 •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 자회사의 재원조달, 지주회사 보유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자회사 보유 기술이전·사업화, 자회사의 홍보·교육·훈련·마케팅 •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등	•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이를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단, 대학은 자회사 설립 불가) • 창업보육센터설립운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 이전	• 공공연구기관이나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나 출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또는 출자회사의 인수, 출자회사에 대한 기술보육 및 창업보육, 출자회사에 대한 설립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성 또는 운용
규제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수익금은 산학협력법 상의 산학협력단의 업무나 대학의 연구활동,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운영/유지/보수업무, 연구개발 업무,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에 사용할 의무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무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 등을 공공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또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 등에 사용할 의무
겸직 규정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을 허용	교원 및 연구원이 전문회사의 임·직원의 겸임을 허용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허용
인가 및 등록 취소 사유	설립인가요건 미충족(기술 현물출자 비율 요건 제외), 산학협력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 영위, 이익배당 사용제한 위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승인, 교육부 시정명령 미이행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유사수신을 통한 출자자 및 투자자 모집, 자회사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록요건 미충족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건 미충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요건 미충족, 기술이전법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 설립주체의 지주회사 지분보유율 50% 이하
조세 지원제도	요건충족시,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출자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증여세법)	산학협력단의 전문회사 출자 재산(100분의 30이상 지분 보유)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증여세법)	별도규정 없음
기타 지원 제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 중소기업 진흥기금 우선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됨
 - » 동법은 2007년 8월 개정에서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술을 현물 출자하여 운영하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⁵⁾와 동 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하여 운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신기술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됨
 - » 동법은 2007년 1월 개정⁶⁾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동법 제11조의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됨
 - » 동법은 2010년 4월 개정에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직접 출자하여 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21조의3), 아울러 동 지주회사는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해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동법 제21조의4)
- 현행 관련 법령상에서 투자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유형과 사업화 직접 수행 기능을 가진 기업(자회사, 출자회사) 유형으로 구분됨

<표 1-6> 현행 법령 상의 기술지주회사 제도 유형

주무 부처	법령	회사 유형		조직 창업	구성원 창업	구성원 휴·겸직
		투자회사	직접 사업화 회사			
중소 벤처 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유형)	자회사	가능	가능	가능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직접 사업화 유형)	가능	가능	가능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가능	가능	가능
산업통상 자원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연구기관첨단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가능	가능	가능

4) 2007.8.3. 개정(시행 2008.2.24), 법률 제8576호.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2011.7.25.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이 변경

6) 2007.1.26. 개정(시행 2007.4.27), 법률 제8284호.

● 해외 기술지주회사 제도 배경 및 사례

- (배경) 대학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와 같은 형태의 기업 설립·운영 사례 증가
 -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제3의 임무(The Third Mission)’ 등의 용어들은 조금씩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대학이 연구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
 - 연구개발 성과물의 적극적인 사업화와 기술기반 창업 기업 설립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 구조의 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음
 - 대학의 역할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
- (제도) 주요 국가별로 대학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표 1-7〉 기술지주회사의 개념에 따른 국내외 대학의 사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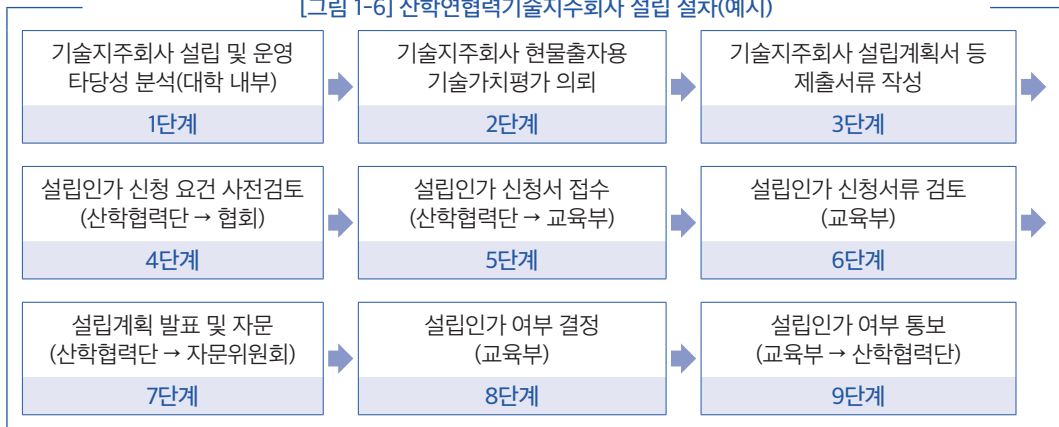
구분		사례	특징
기술지주회사		국내 대학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는 지주회사의 개념을 적용 •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최소 지분율 규정 적용
광의의 기술 지주회사	통합형	영국의 대학 기술사업화 지원회사	• 대학 TLO가 독립된 기술이전 회사를 거쳐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 설립 및 투자를 함께하는 회사로 확대, 발전 • 기술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기능 부서(기술이전, 자금 투자, 컨설팅, 지식재산권 관리, 포트폴리오 기업 관리 등)를 기술사업화 지원 회사의 내부 부서나 팀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수직 계열형	스웨덴 대학의 지주회사	• 정부가 대학 지주회사를 소유하지만, 운영은 대학이 함 • 지주회사가 기술이전, 투자, 컨설팅, 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개별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많음 •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dotterbolag)와 포트폴리오 기업(portfolio companies)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함에 있어 최소 지분율과 같은 제한이 없음 •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1994년, 1995년에 설립
	투자형	일본 대학의 기술이전 관련 사업회사 또는 특정연구성과 활용사업 지원회사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특정연구성과 활용 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출자 등을 허용함으로써 벤처캐피탈 형태의 특정연구성과 활용사업 지원회사가 형성 • 특정연구성과 활용사업 지원회사인 UTokyo IPC와 기술이전 관련 사업회사인 UTEC, 기술이전 회사인 Todai TLO(주)를 운영하는 도쿄대학과 같이 TLO와 함께 기술이전 관련 사업회사 또는 특정 연구성과 활용사업 지원회사라 불리는 투자회사가 협력하는 체제가 마련됨
	관리형	중국 대학의 지주회사	• 2001년부터 시작된 ‘대학과학기술기업 시스템 및 관리 규범화 시범개혁 사업’ 등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 형성 • 다수의 교판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

다. 기술지주회사 제도별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제도배경) 「산학협력법」 개정('07.8)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술을 현물 출자하여 운영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동 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하여 운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36조의3, 시행령 제42조)
- (정의)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술현물과 현금의 출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율 포함)을 소유하여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 (회사설립)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현물출자(사업화 대상기술)용 기술가치평가를 완료하여 교육부에 설립인가신청서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등을 제출 후 인가를 받아 설립
 - 설립가능기관 : 「산학협력법」 법률 제36조의2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 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
 - » ①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②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연구기관
- (설립절차)

[그림 1-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절차(예시)



- (특례제도)
 - 교직원은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겸직 특례 허용(「산학협력법」 제36조의7)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가치평가 특례
 - » 법인의 변태설립 관련 법원의 인가 시,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법원에 보고한 경우,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3항)
 -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자 받은 기술현물을 기술지주회사가 6개월 이내에 자회사로 재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인정(「산학협력법」 제36조의4제3항)
 -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제도배경) 「벤처특별법」 개정('07.4)을 통해 교수·연구원 창업 여건 개선과 함께 대학·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출자하여 직접 영리활동이 가능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시행령 제4조의2)
- (정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등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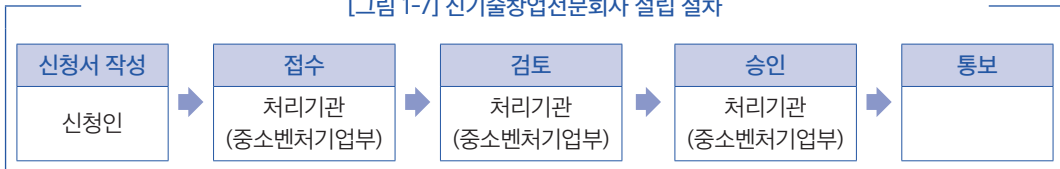
- 제2조(정의)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요]

설립 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10% 이상 지분 소유 (단, 자회사를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0% 초과 소유)
설립 방식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 경영/기술 분야 1명 이상 상근 전문인력 • 업무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
주요 사업	•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자회사 설립(대학 제외 ⁷⁾)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 알선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하는 사업(각종 실험실창업 지원 등)		
자회사	•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		
수익의 활용	• 대학·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 (회사설립)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해 설립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설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 설립가능기관 : ①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② 국공립연구기관,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비영리법인(과학 또는 산업분야)
- (설립절차)

[그림 1-7]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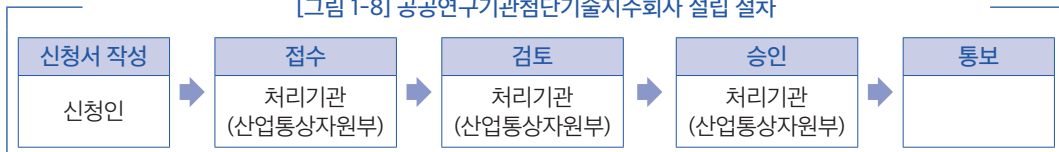


- (특례제도)
 - 교원, 연구원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휴·겸직 및 겸임 특례 허용(「벤처기업법」 제11조의5, 제16조, 제16조의2)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벤처기업법」 제11조의5제4항)

7) 「벤처기업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평가 특례
 - » 법인의 변태설립 관련 법원의 인가 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벤처기업법」 제4조 및 중기부에서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벤처기업법」 제6조제2항)
-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제도배경) 「기술이전법」 개정(‘10.4.)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하여 운영하는 ‘출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7, 시행령 제25조의3~6)
 - (정의)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회사를 설립(편입)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설립주체가 자본금의 50%를 초과 출자하여 설립하는 기관
 - (회사설립)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설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 설립가능기관 : ① 국공립연구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대학(산학협력단 제외), ④ 특정연구기관, ⑤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로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설립절차)

[그림 1-8]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절차



- (특례제도)
 - 연구원 또는 직원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휴·겸직 및 겸임 특례 허용(「기술이전법」 제21조의7)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출자 및 이전 가능(「기술이전법」 제21조의3)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평가 특례(「기술이전법」 제23조)
 - » 법인의 변태설립 관련 인가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기술이전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같음(「기술이전법」 제23조)
 - »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기술 등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출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가치평가 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 가능(「기술이전법」 제21조의4제3항)
 -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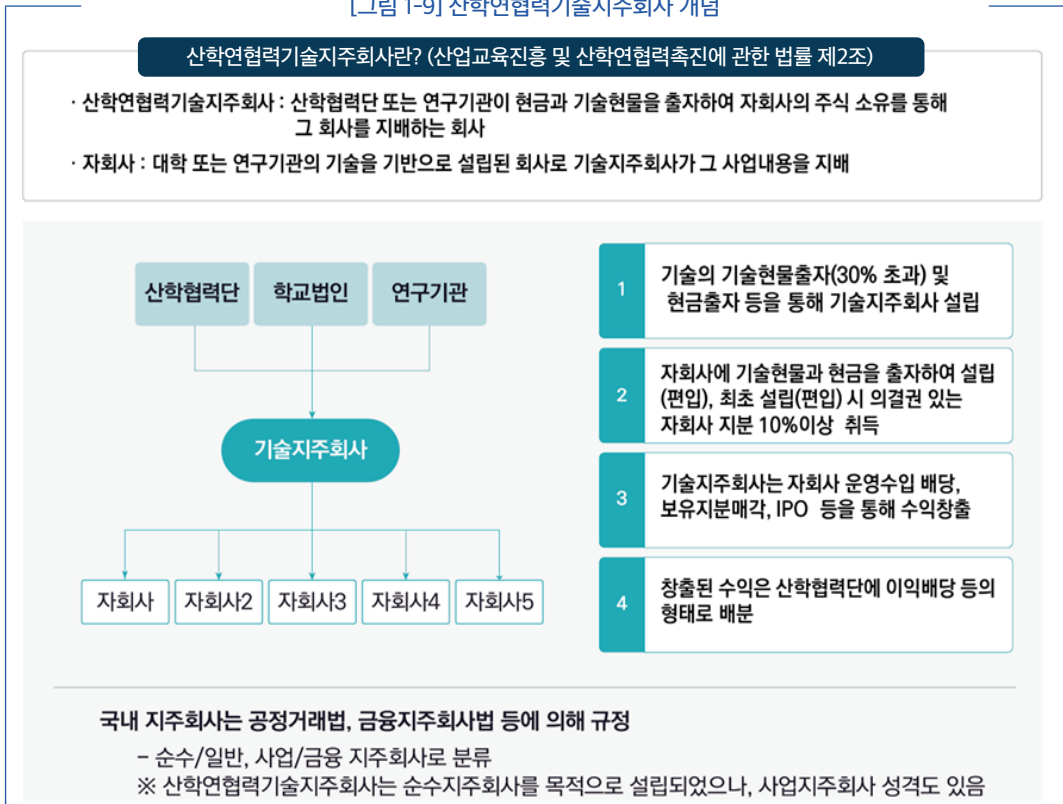
0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요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주요내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개요

- (개념) 대학의 보유기술(특허 등)을 출자, 자회사의 설립 및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

[그림 1-9]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개념



출처 : 집필진 작성

- (법률적 정의)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 (의의) 대학의 기존 산학협력사업(산학연구, 기술이전, 창업보육센터, 실험실창업)의 제약 요소를 넘어,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선도적 모델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역할 및 주요업무
 - (기본업무) 자회사 설립 및 경영지원
 - (기타업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및 기타 기술사업화 업무

[그림 1-1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역할 및 주요업무



출처 : 집필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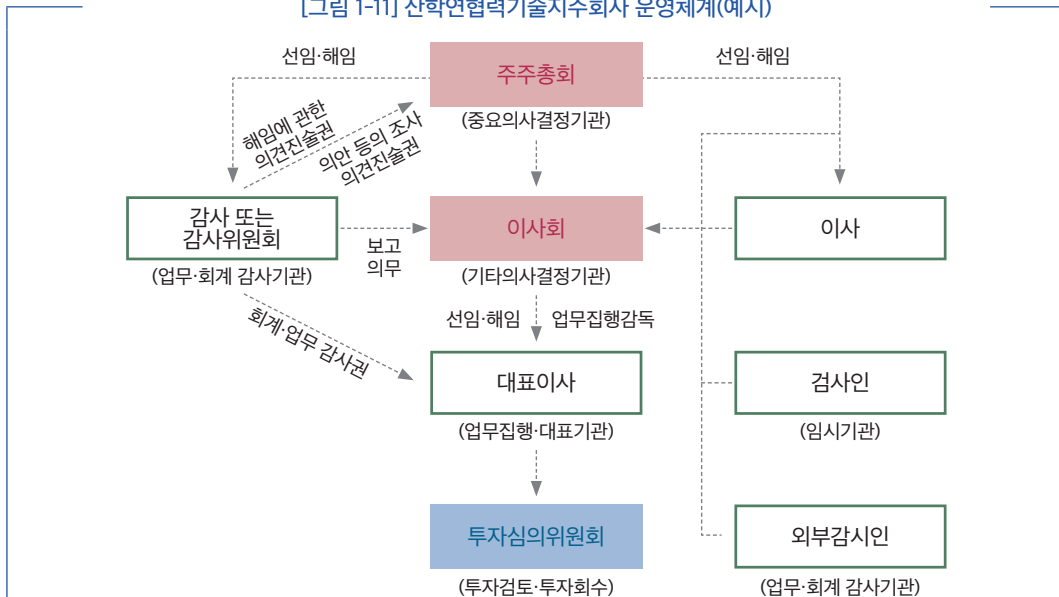
Tip. 기술지주회사의 사업영역(수익사업 등) 확대

개정된 「산학협력법」(제36조의2)에 근거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산학협력단 조직(TLO, 창업보육센터, 기업가 센터 등)과 협력으로 기술이전, 인큐베이팅, 교육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됨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체계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중심으로 대표이사 선임·관리, 투자심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

[그림 1-1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체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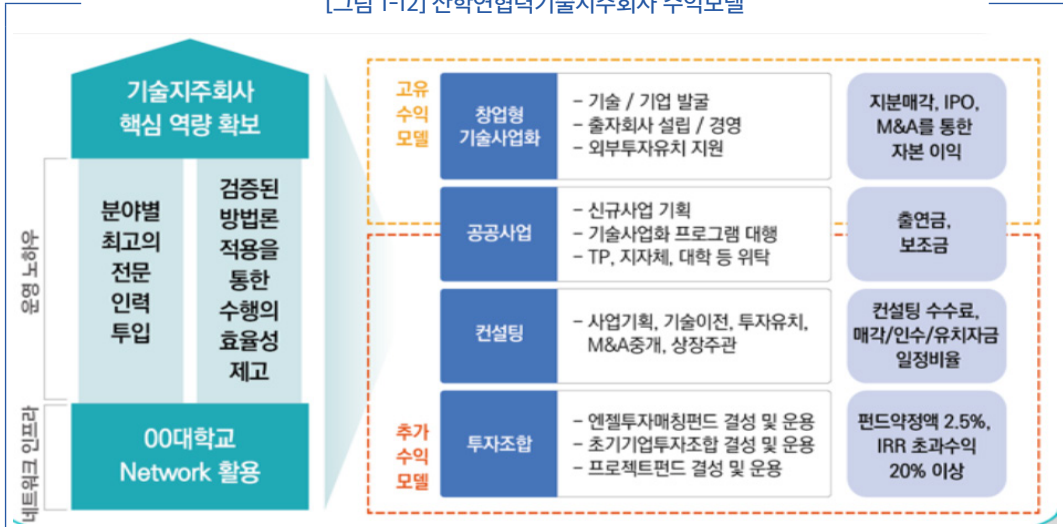


출처 : 집필진 작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수익모델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성장/투자회수를 통한 고유수익모델 외에 공공사업, 컨설팅, 투자조합 설립·운영 등을 통해 수익 확보 가능

[그림 1-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수익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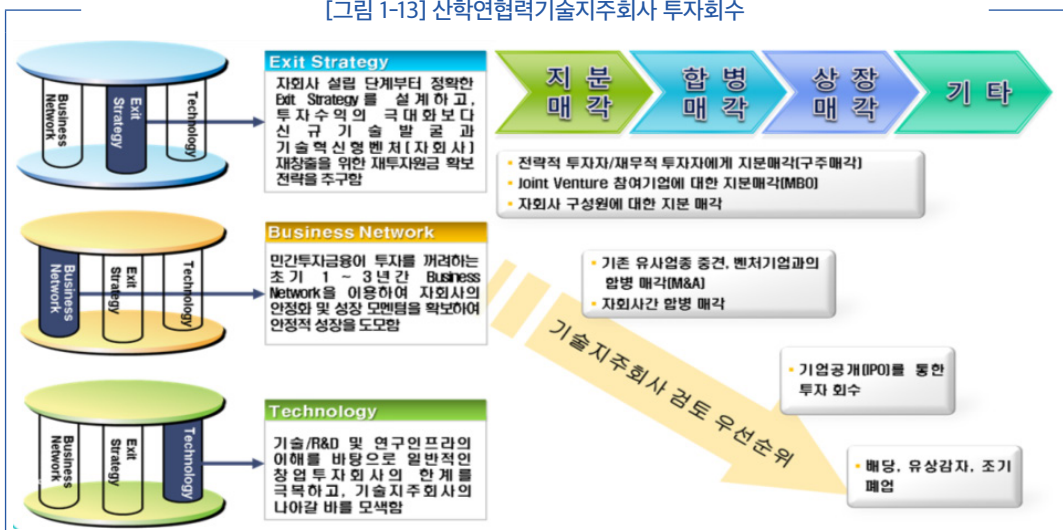


출처 : 집필진 작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투자회수

- 자회사 설립(편입)시부터 투자회수 전략 수립 필요 : 지분·합병·상장 매각, 기타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 단계부터 전략적 EXIT Strategy 수립과 Structure 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통한 자회사 성장지원, 신규 기술발굴과 기술혁신형벤처 재창출을 위한 재투자지원 확보전략을 추구

[그림 1-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투자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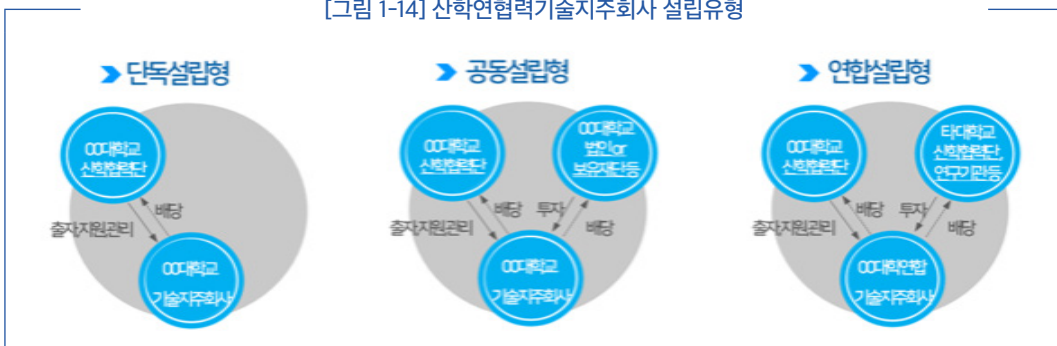
출처 : 집필진 작성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유형 및 방식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유형

- (단독설립형)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설립
 - 한양대학교(제1호), 서울대학교(제2호) 등 국내 대다수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단독설립형임
- (공동설립형) 대학 산학협력단 이외의 대학조직, 외부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형태
 - 고려대, 연세대는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설립
- (연합설립형)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복수의 대학, 연구소 및 유관기관(테크노파크 등)이 하나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 지역별 TP가 강원·전북·대경·부산·광주·전남 등에 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그림 1-1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유형



출처 : 집필진 작성

<표 1-8> 기술지주회사 설립 유형에 따른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단독 설립	•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자율성 • 기술발굴부터 자회사 설립까지 TLO 등과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배제 등	•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 대학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대표이사의 산학협력단장 겸임 시 책임경영 한계
공동 설립	• 기업 또는 전문기관 참여 시 투자재원 확보 및 마케팅 역량 확보 등에 유리	• 참여기관(기업, 전문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상존
연합 설립	• 다수의 참여기관 및 지역기관의 기술, 사업화 인프라 및 역량의 결집 및 공동 활용 • 자금조달 용이 •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한 책임경영 가능 • 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 다수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상존 • 대학별 기술지주회사 지분율이 상이할 수 있으나, 역으로 대학 간 선의의 경쟁 유도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방식

- 통상적 설립방식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출자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산학협력단(없는 경우 학교법인)이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 예외적 설립방식

- 학교기업, 연구소기업, 실험실창업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기반 기업들을 하나의 관리(지배)시스템(기술지주회사)으로 묶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Tip. 상법 상 지주회사의 설립

상법 상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의 경우, 경영의 효율성 및 지배구조의 원활함을 위해 자회사로부터 bottom-up방식(상향식)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

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 개정내용

● 「산학협력법」 주요 연혁

- ('05.12.28.) 산학협력단 혁신방안 발표(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 ('07.08.0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08.2.4.시행)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시행(2008.2.4.) 등
- ('11.0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2.1.26.시행)
 - 법률명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명칭 변경, 현물출자비율 완화
- ('20.12.2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06.23.시행)
 - 자회사 주식비율 완화(20%→10%)
- ('20.12.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12.29.시행)
 - 자회사 주식보유 예외기간 연장(5년→10년), 설립인가 요건 중 인력요건 구체화
- ('24.12.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2025.06.21.시행)
 -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비율을 설립·운영시 30%에서 설립시 30%로 완화(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취소사유에서 제외)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을 설립·운영시 10%에서 설립시 10%로 완화
 -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
 -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 절차 추가 등

● 「산학협력법」 주요 개정 내용

- ('11.07.25.) 「산학협력법」 개정사항 (2012.01.26.시행)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로 대학 자원 다변화에 기여
 -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
 -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기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자회사화 가능

Tip. 2011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 제도 미비점 보완

2008년 첫 시행된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기 위해 2011년에 「산학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자생적 구조를 마련하고, 자회사 설립 모델의 다양화와 사업화의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준비 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Tip. 대학과 연구기관 공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산학협력법」(제36조의2)과 「기술이전법」(제21조의3)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를 공동으로 설립이 가능함. 이러한 측면에서 2011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공식명칭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로 변경됨.

<표 1-9> (‘11.07.25.) 「산학협력법」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①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현물출자 의무비율 최저한도 완화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2항]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현물 출자 가능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해야 함	기존 50%로 되어 있는 기술 현물출자의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없는 기술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현금이나 기술을 제외한 현물을 적게 출자해야 하는 문제 발생
②기술지주회사 자체의 영리행위 일부 인정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4항]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 경영관리 및 이에 달린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 경영관리 및 이에 달린 업무와 기술지주 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음	- 기존 기술지주회사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일반적으로 5~10년 소요예상)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 이에 따라 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민간투자 위축이 우려 - 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개선 -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지주회사의 창투조합 출자 허용, 연구소기업 등을 자회사로 편입, 기술사업화 관련 위탁 업무 등
③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명시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5항 신설]	《없 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출자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비용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부담으로 작용(건당 2~3천만원 소요) -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
④자회사의 설립 방식 확대 [산학협력법 제36조의3제2항 신설]	《없 음》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자본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음	기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대학, 연구기관이 설립한 각종 회사를 기술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로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보유기술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표 1-9> (‘11.07.25.) 「산학협력법」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⑤자회사 설립 시 주주총회 의결 의무 폐지 [산학협력법 제36조의6제2항]	기술지주회사는 주주총회의결을 거쳐 자회사 설립 가능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 설립 가능	• 자회사 설립 시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상법에 따른 일반 회사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기술가치평가 일부 면제 [산학협력법 제36조의4 신설]	«없음»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 으로 할 수 있음	• 출자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비용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부담으로 작용(건당 2~3천만원 소요) • 지주회사 출자시 1회, 자회사로 재출자시 1회 등 도합 2회의 기술가치평가비용은 산학협력단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자회사로 출자시 평가를 면제 하되, 과학기술개발주기의 단축을 고려하여 6개월 내의 재출자의 경우 평가면제

- (‘20.12.) 산학협력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법률 2021.06.23.시행, 시행령 2020.12.29. 시행)

-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력요건 세분화 및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및 예외기간 완화
 - » (법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10%)
 - » (시행령) 자회사 주식보유 예외기간 연장(5년→10년) 및 설립요건 중 인력요건 구체화

<표 1-10> (‘20.12.) 「산학협력법」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①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비율 최저한도 완화 [산학협력법 제36조의4]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술지주회사의 지분양도, 자회사 증자 등으로 인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의무비율 20%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출자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②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예외기간 연장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5조]	•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자회사 간 합병 등으로 인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양도, 자회사 간 합병 등으로 인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자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기간 연장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유연한 운영 여건 조성
③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변경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 상근 전문인력이 • 1명 이상일 것	•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중 전문인력 요건 구체화

- ('24.12.20.)「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 (2025.06.21.시행)

<표 1-11> ('24.12.20.)「산학협력법」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①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시 기술현물출자 의무비율 요건 완화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2항, 제6조의8 제1항]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해야 함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기술현물 출자비율 요건(30%)을 갖추지 않아도 기술지주회사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기존 30%로 되어 있는 기 술 현 물 출 자 의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없는 기술을 출자해야 하는 문제 발생
②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비율 요건 완화 [산학협력법 제36조의4 제4항]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10%)을 유 지 하 지 않 아 도 자 회사로 서의 지 위를 유지할 수 있어 자회사의 원 활 한 투 자 유 치 가 가능함
③ 다수의 대학/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시, 기술지주회사 상호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 회사임을 표시 [산학협력법 제36조의5 제2항]	기술지주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모든 설립기관명을 기술지주회사 상호에 기재하여야 함	공동으로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상호명예 설립기관을 모두 기재하지 않아도 됨. (단, 상호명예 '연합' 또는 '공동' 기재)	• 다수의 대학/기관이 공동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상호명 지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
④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를 위한 신청 및 절차 추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6항,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기술지주회사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출자내역 및 비율, 설립기관의 추가/변경 등과 같은 설립인가 사항 변경 방법 없음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변경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 확보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사항 또는 설립기관의 변경 등과 같은 상황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제시함
⑤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사항 신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6항에서 정의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 미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에 대해 '출자내역, 출자비율, 설립 주체'로 구체적 명시	• 기존 법령에서 정의한 인 가 사 항 에 대 하 여 정확한 항목을 규정함

<표 1-11> ('24.12.20.) 「산학협력법」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⑥기술지주회사 업무범위 확대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의2 및 제10호]	기술지주회사의 시설임대 대상이 자회사로 한정되었고, 기술지주회사 설립 대학/ 연구기관의 보유기술만 이전·중개가 가능	자회사 외 대학 창업기업 전체에 대해 시설임대가 가능하고, 타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중개업무 수행도 가능	자회사 외 타 기업 대상 시설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수익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타기관 기술 이전·중개를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지원
⑦ 기술지주회사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고시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7조의2]	기술지주회사 회계처리 및 관리를 위한 규정 미존재	전체 기술지주회사의 회계업무를 위한 회계처리지침 도입의 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를 위한 회계업무처리지침 도입을 통해 공통된 회계업무 추진 필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

II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0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검토 단계

가.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거버넌스 개선 및 발전전략 검토

-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발전모형 검토 및 발전전략 수립
 - 대학 산학협력단의 핵심역량별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재정적 자립화의 관점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맞춤형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 설계 필요
 -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생애주기(Life Cycle) 구축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경쟁력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수익모델 다양화 및 비용구조의 내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와 능동적인 자립화를 유도하기 위한 발전모형에 기반한 발전전략 수립
 -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은 대학 연구비, 인력 및 기술이전 수입 및 재투자 규모, 연구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5단계(신생형부터 기여형까지) 구분하여 현재 대학에 해당하는 유형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거버넌스 개선 및 발전전략 수립

<표 2-1>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발전모형(예시)

구분	신생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성장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안정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자립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기여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대학 규모	전문대학 (연구비: 300억원미만)	전문대학, 일반대학(소형) (연구비: 500억원 미만)	일반대학(중형) (연구비: 1,000억원미만)	일반대학(대형) (연구비 규모 : 1,000억원 이상)	
산학협력단 유형	현장중심형 (협력기반 구축형) 산학협력단	지역특화형(수요맞춤 성장형) 산학협력단		기술혁신 선도형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유형	업무 구성	TLO 구성	TLO + 기술지주 통합형/분리형	TLO + 기술지주 통합형/분리형	TLO + 기술지주 통합형/분리형
목표	인식 및 기반조성	가치제고 및 마케팅역량 강화/ 프로세스 정립	전략적 자원관리/ 안정적 수입기반 마련	연구재투자 기반 조성/ 기술사업화 확장	기술사업화 성숙/ 네트워크 확장
업 무	특징	지식재산 관리 기반 구축	기술이전 추진 기반 구축	기술창업 추진 기반 구축	
	규모 (업무 범위)	지식재산 관리 기반 구축	지식재산 관리 + 기술이전 활성화	지식재산 관리 + 기술이전 활성화 + 기술창업 활성화 + 창업보육 활성화 + 투자조합 결성·운영	외부 자원조달 확장, 재투자 기반 구축

<표 2-1>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발전모형(예시)

구분	신생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성장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안정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자립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기여형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담인력 특징	지식재산 관리 중심형	지식재산 가치제고 전문형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추진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확산형	글로벌IP 비즈니스형/ R&D-IP 연계형
운영재원 특징	정부사업 의존성 높음	기술료 비중 상승/ 특허관리 예산증가	기술료 적립/ 자체사업 예산 편성	정부사업의존도 낮아짐/ 자체사업 예산 증가	다양한 수익채널 확보/자립화를 위한 손익분기점 달성
운영성과 특징	지식재산의 중요성 인식 / 관리체계 구축	기술이전 중요성 인식 / 지식재산 가치제고 /사업화 투자	연구자 협업 /기술거래 모델 다양화/ 경상기술료 비중 증가	고도의 협업체계 구축 / 기술관리 역량 제고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자체사업 및 재투자 확대 / 글로벌화 / 상장기업 창출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사업타당성 절차 기반 마련

- 기술사업화 유망기술 확보 및 검증 절차 수립(예시)
 - 기술수요의 외부원천인 파트너기업의 기술수요(시장니즈(Needs))에 의한 필요기술을 Lab Survey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출자기술 발굴 절차 수립(기반 마련)
 - 내부원천인 연구자(대학 우수Lab 보유기술, R&D 결과물 등)의 시즈(Seeds) 관점에서 사업화 희망기술을 단계별 평가·검증을 통하여 출자기술 발굴 절차 수립(기반 마련)

<표 2-2>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접근방법(예시)

구분	시장 니즈(Needs)에서 출발	연구자 시즈(Seeds)에서 출발
1단계	국내외 파트너(대상)기업의 기술수요 파악	TLO를 통한 대학 연구자의 시즈(Seeds) 수집 및 1차 스크리닝
2단계	파트너기업, 기술지주회사 공동으로 유망분야 기술영역 압축	TLO, 기술지주회사 공동으로 유망기술 아이템 선별(2차 스크리닝)
3단계	파트너기업의 사업화 역량 검토	기술아이템의 구체화(Concept 설정)
4단계	TLO, 기술지주회사 공동 수요기술확보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성/사업성/시장성검토
5단계	사업화 패키징 필요 요소기술 확보	사업화 패키징 요소기술 도출
6단계	추가상용화 기술개발(대내외 지원사업 활용)	추가상용화 기술개발(대내외 지원사업 활용)
7단계	선정기술의 사업화 기획	선정기술의 사업화 기획

- 전문평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검토하고 보완 필요기술의 상업화 추가개발 및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사업화 가능성 검증개발에 대한 절차 수립(기반 마련)

<표 2-3> 사업화 유망기술 및 사업화아이템 검증 절차(예시)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 기술지주회사 임직원과 민간기술거래기관 전문가, 관련분야 기업, 연구소 기술기획 전문가 등을 통한 사업성 레퍼런스 Check - 미래산업전망, 신성장 유망산업 등 거시적 개념에서 1차 사업성 검토	외부전문가 역량 활용
2단계	- 다양한 제휴처를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신규사업기획팀과 공동으로 시장요구 기능·니즈의 도출과 유망후보군 도출 - 세부산업내 경쟁현황, 시장진입전략 등 미시적 개념에서의 2차사업화 가능성검토 - 파트너기업의 요청에 따른 사업화 대상기술의 사업화검증(보완기술개발) 진행	파트너기업 역량 활용
3단계	- 파트너기업의 사업전략을 반영한 평가기준(시장규모,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유망사업모델후보를 최종 선정 - 자회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투자심의 위원회 활용

- 1단계 협력기관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기술·사업 Reference 체크(협력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면담, TF 구성 등을 통한 1차 검토) 절차 마련

<표 2-4> 기술사업화 분야별 협력기관 구축(예시)

협력분야	협력기관
기술발굴분야	대학 특성화 분야 Lab, 지역전략산업 분야 연구소, 가족회사, 산학협력 기업체 등
기술평가분야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기관, 기술거래용 기술가치평가기관 등
기술거래분야	공공거래기관, 민간거래기관, 특허법률사무소 등
기업컨설팅분야	회계세무법인, 법무법인, 창업컨설팅기관, 경영컨설팅기관 등
투자분야	전문엔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해외협력분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정책지원분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진흥원 등

- 2단계 파트너기업과의 사업화검증개발(보완기술개발) 및 사업성 검토 절차 수립
 - » 신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아이디어, 특허, 기술에 대한 사업화 타당성 검토 절차 마련
 - » 파트너기업(창업그룹)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상품화검증과 대학 사업화대상기술의 보완기술개발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 마련

<표 2-5> 사업화 타당성 검토(예시)

항목	구 분	
	사업화 검증	사업성 검증
목적	자회사 설립 사업화기술의 상품성 검토	기술지주회사 출자대상기술의 사업성 검토
대상	자회사 설립을 위한 MOU가 체결된 사업화 대상기술로써, 파트너기업(창업그룹)이 상업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시제품, 상품화 개발과제	향후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 예정인 특허(기술)로써, 사업화 가능성 검증이 필요한 보완기술 개발과제

<표 2-5> 사업화 타당성 검토(예시)

항목	구 분	
	사업화 검증	사업성 검증
주요 사업 내용	• 제품(산업)디자인 • 기구설계(CAD, 3D모델링), 제품설계 • 금형, 디자인Mock-up, 워킹 Mock-up • 시작품(시제품) 제작, 외주시험생산 • Pilot, 테스트용 장비 제작 • 시제품의 시험분석, 성능검증 • 기타 성능검증용 실험재료비	• 제품(산업)디자인 • 기구설계(CAD, 3D모델링), 제품설계 • 금형, 디자인Mock-up, 워킹 Mock-up • 시작품(시제품) 제작, 외주시험생산 • Pilot, 테스트용 장비 제작 • 시제품의 시험분석, 성능검증 • 기타 성능검증용 실험재료비
활용	신규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가능성 검증	출자기술 및 자회사 가능성 검증

- 3단계 최종 사업모델 구체화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절차 마련

<표 2-6> 자회사 설립을 위한 세부사업기획 절차(예시)

[illegible]

- 기술사업화 타당성 진단 컨설팅 절차 마련

- 사업화 유망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의 외부원천인 파트너기업의 기술수요(시장니즈(Needs))의 예측과 내부원천인 연구자(대학 우수Lab 보유기술, R&D 결과물 등)의 시즈(Seeds) 관점에서 출발, 단계별 평가·검증을 통하여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절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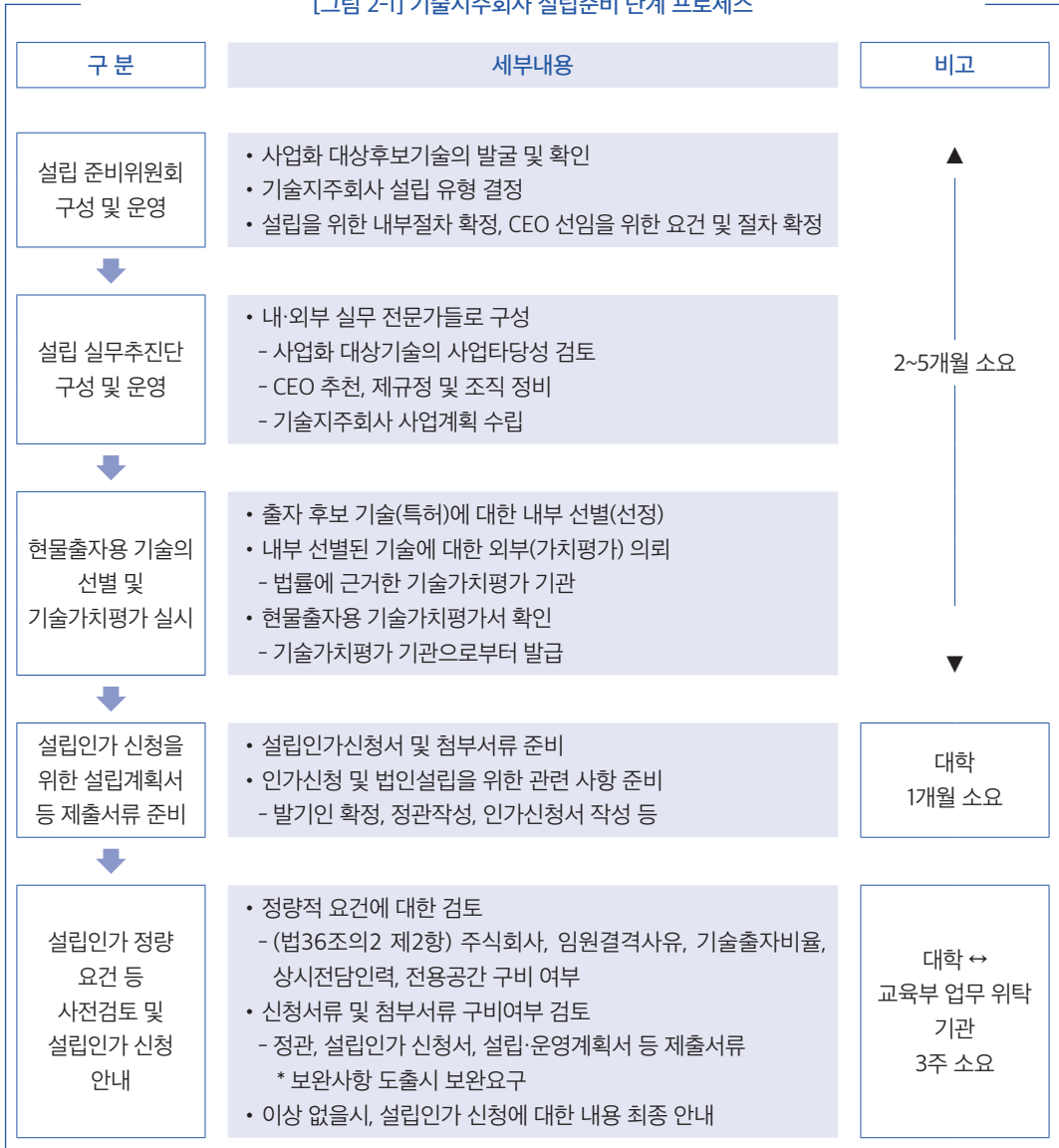
<표 2-7>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접근방법(예시)

구분	Market Pull 방식	Technology Push
1단계	국내외 파트너(대상)기업의 기술수요 파악 ※ 컨설팅기관, 기술거래기관과 협력	TLO를 통한 대학 연구자의 시즈(Seeds) 수집 및 1차 스크리닝 ※ 월별 리스트 수집 후 지주회사 내부 논의를 통한 유망기술 후보군 도출
2단계	파트너기업, 기술지주회사 공동으로 유망분야 기술영역 압축 ※ 대학보유 기술과의 매칭	TLO, 기술지주회사 공동으로 유망기술 아이템 선별(2차 스크리닝) ※ 월별 유망기술 후보군에 대한 사업화 아이템 선별평가 회의 개최(연구자, TLO 담당자, 해당기술 담당 변리사, 기술지주회사 담당자)
3단계	파트너기업의 사업화 역량 검토	기술아이템의 구체화(Concept 설정)
4단계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검토	
5단계	사업화 패키징 필요 요소기술 확보	
6단계	추가상용화 기술개발(대내외 지원사업 활용)	
7단계	선정기술의 사업화 기획	

0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단계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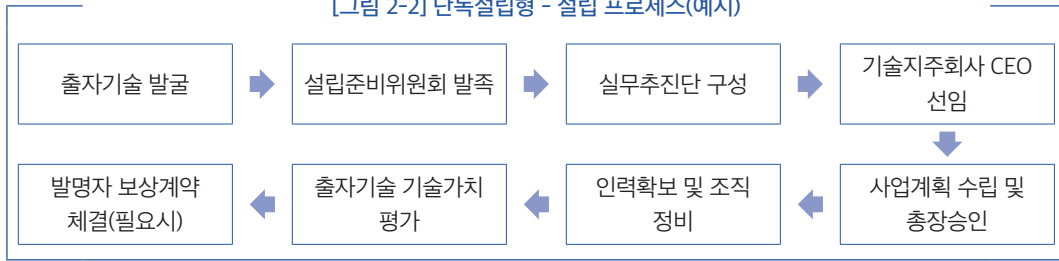
[그림 2-1] 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단계 프로세스



가.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유형은 크게 단독형과 공동형/연합형으로 구분되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유형에 따라 대학 내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약간 차이가 남
- 기술지주회사 설립 프로세스 - 단독설립형

[그림 2-2] 단독설립형 - 설립 프로세스(예시)



- 출자기술 발굴

- 특정기술에 대한 개별 사업화 검증과 공모(모집) 방식에 의한 자회사를 통해 사업화할 후보기술 발굴
- 출자기술의 발굴에 앞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행정적 프로세스가 먼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출자기술 발굴 병행 가능

-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및 최적의 설립모델/실행방안 마련

-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방향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 유형을 단독형과 공동형/연합형 중에 선택 및 확정
-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CEO선임을 위한 기준 마련 후 내부 진행절차 확정

- 대학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구성 및 공식적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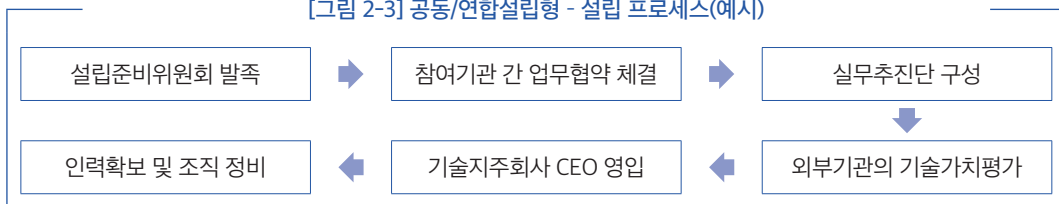
- 사업화 대상기술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CEO 추천, 제규정 및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여 총장으로부터 승인받음

- 실무추진단을 통해 추천받은 기술지주회사 CEO후보 검토를 통해 CEO선임

- 설립 초기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학별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원칙과 사업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이며, 대외 활동과 함께 짧은 시간 내에 대학과의 긴밀한 교감을 이끌어내고, 조직의 안정화를 이뤄내는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
- 기술지주회사 CEO의 경우, 외부 전문가 영입 방식 및 내부 인력의 겸직 방식 가능

● 기술지주회사 설립 프로세스 - 공동/연합설립형

[그림 2-3] 공동/연합설립형 - 설립 프로세스(예시)



-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및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공동/연합형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내용을 정리하고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실무추진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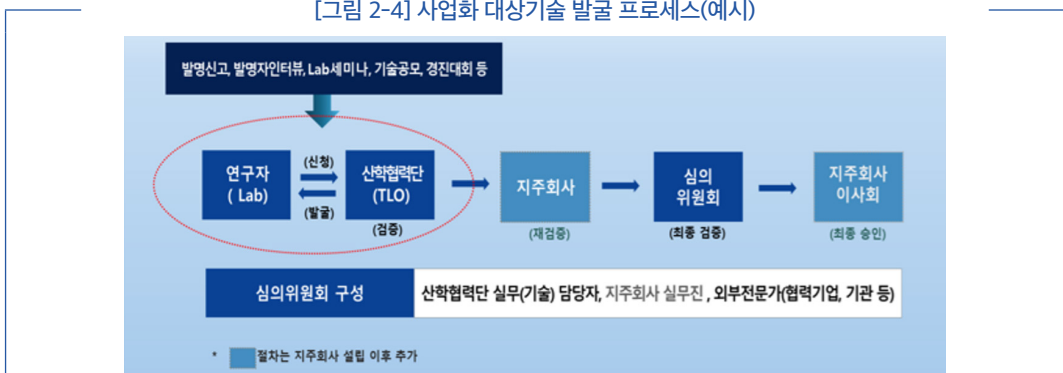
- 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기관 내부 구성원 이외에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내외부 진행 절차 확인 후, 설립 추진계획 마련 및 확정
- 사전에 출자비용 및 EXIT(투자회수, 이익배당 등) 전략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정리한 후 사업계획 마련
 - * 각 대학 및 출자기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에 유의하여 실무 추진
- 외부기관의 기술가치평가
 - 각 대학에서 출자하는 기술의 가치평가 차이로 인해 배당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모두가 인정할만한 공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실시 및 참여기관 간 확인
- 기술지주회사 CEO 영입
 - CEO를 참여기관의 임직원 중 피추천자를 선임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후 확정
 - 필요시 CEO 채용공고를 통해 CEO 선임
- 인력확보 및 조직정비
 - 회사 운영조직 및 전문인력 채용 계획 마련
 - * 교육부로부터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를 승인받은 이후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므로, 인력 채용 전, 인력확보 및 채용계획로도 설립인가 신청 가능

나. 사업화 대상기술(현물출자유 기술)의 선별 및 기술가치평가 실시

- 사업화 대상기술(현물출자유 기술)의 선별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기술사업화의 핵심
 - 보유기술을 사업성 중심의 검증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 및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술지주회사의 주요 역할
 -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발명자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과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업무 수행이 필요
 - 자회사 후보기술 발굴은 복수의 다양한 정보와 평가의 객관적 요소(factor)를 충분히 확보한 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고려
 - 기술의 상용화, 사업화 타당성과 내외부의 인적, 물적 투하 가능 자원을 고려하는 기술발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

[그림 2-4] 사업화 대상기술 발굴 프로세스(예시)



Tip. 사업화 대상기술 발굴 시 고려사항

자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화 유망기술의 발굴은 일차적으로 TLO 및 기술지주회사의 담당 실무자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객관적 검증 및 판단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의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발굴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또한 기술사업화 담당자의 경험과 이에 따른 직관적 판단력은 사업화 검토 대상 기술의 다양한 변수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임

- 사업화 대상기술(현물출자용 기술) 기술가치평가 실시

-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이며, 일반적으로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3가지의 개별평가(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 시장성평가)를 조합하여 사용
- 기술가치평가 실행
 -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외부프로세스는 공인평가기관에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
 - 평가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사업화 검증은 진행되며, 적절한 기술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해당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성이 가장 중요
 -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평가기관에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

Tip. 기술가치평가 시 고려사항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할 시에 해당기관의 설립 실무추진단에서는 자회사 후보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주요 구성원(자회사 예비CEO, 발명자, TLO사업화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기술가치평가 대응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또한 기술가치평가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해 제3의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경우, 그 결과물(보고서 등)을 기술가치평가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 기술가치평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여부를 확인·활용하는 것을 추천함

<표 2-8> 기술가치평가 체크리스트(분석요소) (예시)

대항목	중항목	중항목 설명
I. 기술요인(기술성)	기술의 혁신성	기술 자체의 속성
	기술의 환경성	다른 기술/인프라와의 관계
	기술의 사회성	기술 관련 법·사회·문화적 문제
II. 시장요인(시장성)	시장환경요인	정치·경제·사회 등 시장외적 문제
	상품/산업 특성	상품 산업 등 공급자 특성
	시장특성	수요측 요인
	경쟁특성	산업과 시장에서의 경쟁특성
III. 기업요인(사업성)	전략요인	다른 기술, 상품, 산업 보완 여부
	기술개발력	기술인력, 조직과 능력
	생산력	공정기술, 투입요소, 시설 등
	재무구조	자본구조, 일반재무구조
	유통 및 마케팅능력	유통 물류, 마케팅 역량과 노력
	기타	기타 기업 내 요인

<표 2-8> 기술가치평가 체크리스트(분석요소) (예시)

대항목	중항목	중항목 설명
IV. 수익성	수익 및 비용 구조	수익구조, 비용구조
	수익의 속성	수익의 성장성, 안정성
V. 경영(역량)요인	경영자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능력 등
	핵심전문인력	기술 영업 관리 등의 핵심인력

출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www.valuation.or.kr)

[그림 2-5] 기술가치평가 절차(소득접근법 기준)



출처 :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홈페이지(www.valuation.or.kr)

<표 2-9>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 기술평가기관(2025년 6월 기준)

연번	기술평가기관명	홈페이지 URL	전화번호
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https://innobiz.or.kr	031-628-9600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http://www.krit.re.kr	055-751-5881
3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www.kaia.re.kr	031-389-6313
4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or.kr	1544-1120
5	신용보증기금	http://www.kodit.co.kr	053-430-4371
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ttp://www.innopolis.or.kr	042-865-8800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	055-751-9000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ttps://www.kist.re.kr	02-958-5114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kisti.re.kr	042-869-1004
10	한국기계연구원	https://www.kimm.re.kr	042-868-7114
1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http://www.kota.or.kr	063-919-1000
12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02-3459-2800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	043-713-8000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www.kiat.or.kr	02-6609-3000
15	한국산업은행	http://www.kdb.co.kr	1588-1500

<표 2-9>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 기술평가기관(2025년 6월 기준)

연번	기술평가기관명	홈페이지 URL	전화번호
1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www.kribb.re.kr	042-860-4114
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http://www.kitech.re.kr	041-589-8114
1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ttp://www.ketep.re.kr	02-3469-8300
19	한국전자기술연구원	http://www.keti.re.kr	031-789-7000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s://www.etri.re.kr	042-860-6114
2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imst.re.kr	02-3460-4000
22	(주)케이티지	http://www.iktg.com	042-335-1946
23	(주)티밸류	http://www.Tvalue.biz	02-523-0810
24	유미특허법인	http://kr.youme.com	02-3458-0100
25	(주)다래전략사업화센터	https://daraebiz.com	02-3475-7880
26	(주)에스와이피	http://www.sypip.com	02-563-9607
27	(주)웍스	http://www.wipscorp.com	02-726-1100
28	(주)이크레더블	http://www.ecredible.co.kr/	02-2101-9208
29	특허법인 다나	http://danapat.com/	02-556-5548
30	특허법인 다래	http://www.daraelaw.co.kr/	02-3475-7700~7701
31	특허법인 도담	https://www.dodamip.com	031-698-4120
32	한국평가데이터(주)	http://www.kodata.co.kr	02-3215-2673
33	NICE디앤비	http://www.nicednb.com	02-2122-2500
34	NICE평가정보(주)	https://biz.nicetcb.co.kr	02-3771-1090

출처 : 국가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다.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설립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 법인 설립 발기인 확정

- 자격 :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
- 역할 :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 인수 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
 - 법(「산학협력법」 제36조의2) 규정상 산학협력단 단독(또는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발기인이 됨.
 - * 산학협력단장 개인, 대학총장, 재단이사장, 발명교수 등은 발기인이 될 수 없음

Tip. 발기인

- 발기인이란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고 또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상법」 제289조제1항)를 말하며, 발기인은 반드시 발행주식의 1주 이상을 인수(「상법」 제293조)해야 함.
- 발기인의 자격 : 발기인의 자격에는 「상법」상 특별한 제한 없음. 따라서 행위무능력자나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발기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음.
- 발기인의 수 : 발기인 수에는 제한이 없음. 따라서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충분하므로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발기인이 되는 것은 물론, 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발기인 되는 것도 가능함

● 정관 작성 및 인증

- 정관이란 조직·활동의 근본이 되는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상법」 제288조, 제289조 제1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상법」 제292조)
- 정관의 인증: 원시정관(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발생.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효력 발생(공증 면제)
- 정관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선택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

<표 2-10> 정관 기재사항

구분	내용	비고
필수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① 목적: 구체적인 사업내용 기재 ② 상호: 유사상호 사전검토 필요 ③ 발행주식총수: 발행을 예정하는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최저한도 100원 이상, 균일하게, 무액면주식 발행가능(‘12년 개정「상법」) ⑤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발행주식 총수의 1/4규정 삭제(‘12년 개정「상법」) ⑦ 공고의 방법: 일간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
선택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 변태설립사항, 여러 종류의 주식발행,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 이사·감사의 수, 총회소집시기, 영업연도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작성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첨부서류 :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정관, 임원의 이력서·재직증명서·결격사유조회회보서·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 상시전담전담인력 채용 (예정) 증빙, 전용공간 확보 증빙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작성

- 설립계획서 작성사항
 - 설립목적
 - 출자내역 및 비율
 -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그림 2-6]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설립 계획서 양식

신간교육지원청 교육감 인사청문회 청문 일정 (청문회 개최 예정일) (내정 2025. 4. 20.)			
기출지주서 설립일자 및 신청서		제출기간	
보: 내정후 보충 신청 신청일자: 청문회일: 청문결과:		30일	
신설인가	신설계획서(또는 신설교육계획서) 종합	사업계획특별보고	
	대표자	경영계획특별보고	
	대표자	전사총괄	
	소재지(주소)	전체/개소	
	소재지(주소)	전체/개소	
출가자 및 기출지주서서 개요			
출가자	성명(기출명)	출가일(출발)	출가지(도/군/구)
	출가일(출발)		
	합계	130회	
기출지주서 환자	기출명		
	소재지	환자	
	환자		
*신설교육계획서 보: 신간교육계획서에 관한 설명, 제출요지(학력 및 운영 계획 사항)란 기재요지에 대하여 미리 해당 기출지주서서의 설립인원을 신청함(가)			
신청인			년 월 일
교육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기출지주서 설립일자, 설립, 운영 계획서		
	2. 소재지		
	3. 정관(정관명), 제 목적, 설립의 이유 등을 밝히는 것(또는 법14조		
	4. 그 밖에 설립인자 및 운영자의 교육자격을 증명하여야 할 것(또는 사법		
	5. 기타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주소	전화번호	주소
신청서 작성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제출문

교육부장관 귀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자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립기관 : (관인)
(설립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술지주회사 : ○○○○○【회사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 ○○○○○ (기술지주회사명)

년 월 일

○○○○○(설립기관명)

* 설립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요 약 문

1. 설립목적

(경관상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2. 설립기관 개요(설립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을 만들어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장 주소 그 외의사무소)	(전화 : 팩스 :

3. 기술지주회사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과 분 급	상시근로자수
본 사	(전화 : 팩스 :
지 사	
설립기관	

4. 출자금액 가.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료의 원계	주식수	금액(지분)
합 계				

나. 세부 출자금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출자기원	종지일형 (가/달/년/월/일)	출자금액(지분)
내부출자			
외부출자			
합계			

5. 인력 및 시설 등 설립·운영계획

.....

라. 설립인가 정량 요건 등 사전검토 및 설립인가 신청 안내

- 설립인가 정량 요건 검토

- 교육부로부터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에서 신청기관의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한 정량적 요건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사전 검토 실시
 - 검토사항 1 : 설립인가 요건 충족 여부(설립기관, 주주구성 및 주주의 출자비율, 자본금 구성 및 기술현물출자비율, 임원 적격여부, 전담인력 채용, 전용공간 확보 등)
 - 검토사항 2 :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표 2-11>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법적 설립요건

구분		관련법령	내용
정 성	설립 목적	산학협력법 제2조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여야 함 - 자회사는 대학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여야 함
	업무 범위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4항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 등
정 량	설립 기관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1항	- 산학협력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 *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설립유형 :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립 가능
	설립 주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발기인은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단독,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함
	설립 요건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2항	- 주식회사일 것 -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 시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 산학협력단 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3항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기술을 현물출자 할 경우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음
		산학협력법시행령 제42조제2항	- 상시 전담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전용공간을 갖출 것
		산학협력법 제36조의5	(단독형)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 주식회사임을 표시 (공동형)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 주식회사임을 표시
	신청 절차 · 서류	산학협력법시행규칙 제3조 및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설립목적, 출자내역 및 비율, 사업계획서, 임원의 이력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증빙 서류

- 사전 검토에서 미비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보완 요청 및 접수된 보완 서류 재검토

● 설립인가 신청 안내

- 교육부로부터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은 교육부에 설립신청 기관 및 준비현황 보고, 신청기관에 전자공문을 통한 설립인가 신청 기간 등 최종 안내

0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법인설립 단계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그림 2-7]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단계 프로세스

구 분	세부내용	비고
설립인가 신청 및 접수	- 전자공문을 통한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출 - 첨부서류(설립·운영계획서, 임원의 이력서, 정관 등)	대학→교육부
↓		
설립인가 심의	- 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심의 ① 설립·운영계획 설명 : 신청대학 ② 질의, 토론 : 자문위원 ↔ 신청대학 ③ (필요시) 현장 확인 : 전용공간, (예비) 자회사 등 ④ 최종심의 및 결론: 보완사항 도출 or 인가결정	교육부 (설립인가 자문위원회)
↓		
설립인가서 교부	- 심사결과 적합 시 설립인가서 교부 * 설립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유발생시 최대 20일 연장 가능)	교육부 → 대학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 및 접수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설립·운영계획서,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서 등 설립인가 신청 준비가 완료된 대학(산학협력단)은 교육부로 전자공문을 통해 설립인가 신청을 실시
 - 교육부는 업무위탁기관을 통해 설립인가 신청수요를 조사, 설립인가 신청대학의 서류 준비상태 및 설립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설립인가 신청대학의 교육부 신청 시기를 조율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심의(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대학의 설립요건, 설립·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 설립·운영계획에 대해 심의 및 자문
 - 검토사항 : 사업화하고자 하는 출자기술의 우수성 및 사업성,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 및 자회사 설립·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교부
 - 교육부는 설립인가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 시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사유발생시 20일 연장 가능)에 설립요건 및 설립·운영계획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립인가서 교부
 -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교육부는 신청기관에 보완사항을 안내 및 신청기관에서 보완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 설립인가자문위원회의 보완된 설립·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및 재심사를 통해 제출 보완이 잘 이루어졌을 시 설립인가서 교부

[그림 2-8]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양식(산학협력법 시행규칙 - 별지 제4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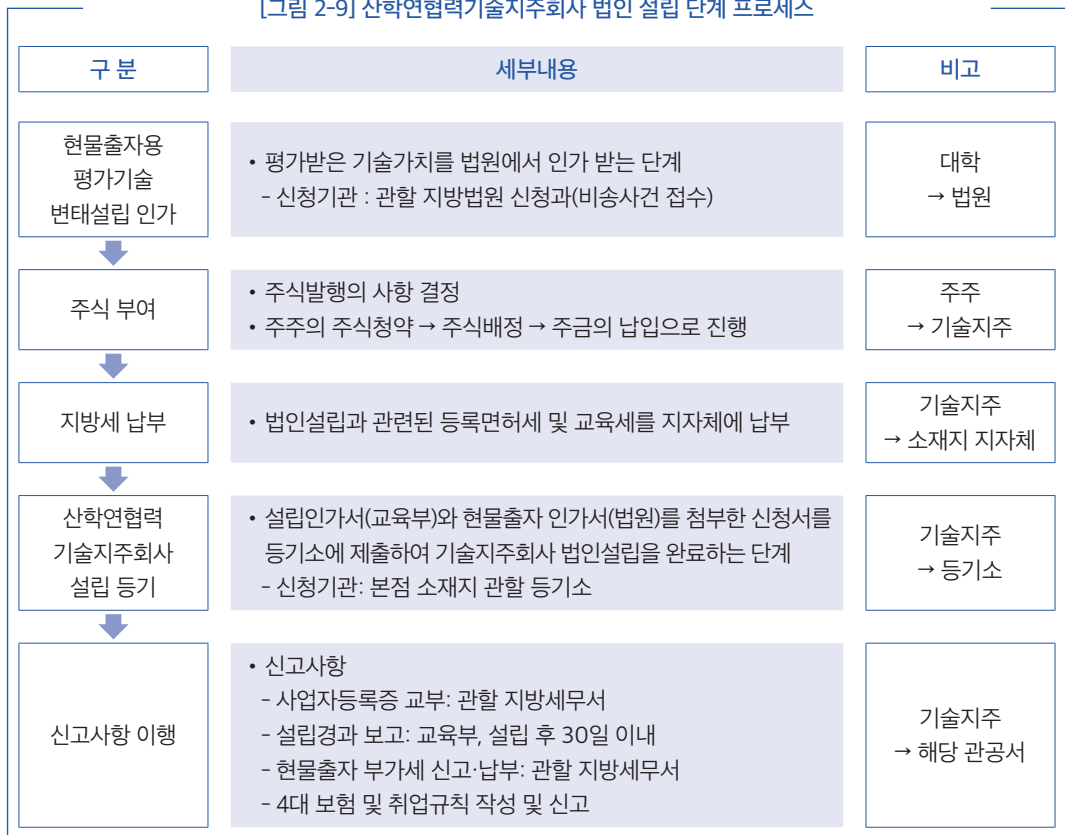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사		
	지사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법인설립

[그림 2-9]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법인 설립 단계 프로세스



- 현물출자용 평가기술 변태설립 인가
 -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술의 현물출자(변태설립사항)를 위해 관할지방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
 - 인가신청서류
 - 발기설립 조사보고 및 인가신청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및 확인서(감정서), 현물출자자산인도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정관사본, 기타
- 주식 부여
 - 주식발행사항 결정: 회사 설립시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주식의 종류와 수
 - 액면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함
 - 주금납입: 주식의 청약 → 주식의 배정 → 주금의 납입
 - 발기설립의 경우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주식인수증) 지체 없이 발기인대표가 지정한 납입은행에 그 인수금액 전액 납입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서류(현물출자자산인도증)를 완비하여 제출
- 지방세 납부
 - 회사 설립등기를 위해 소재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

<표 2-12>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지방세 납부 세율

구분	납부금액	납부기관
등록면허세	출자금액의 4/1000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배 종과세)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00	관할 기초자치단체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등기
 - 산학협력단은 교육부 설립인가와 법원의 현물출자인가가 완료되면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수행하고, 서류(설립인가서 및 현물출자 인가서 포함)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 및 인가받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완료함
 - 현물출자인가가 완료되고 2주 내에 대표이사(또는 대리인)가 본점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 설립등기 신청서, 교육부 인가서,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현물출자인가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포함),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기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사업자등록증 교부
 -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됨.
 -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육부 설립인가서 사본, 정관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주주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기타
 -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까지의 (매출액)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전까지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 교육부 설립결과 보고
 -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관, 주주명부 등)를 제출
-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신고
 -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산학협력단은 현물출자 이후 기술지주회사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
- 4대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

<표 2-13> 4대보험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URL
포털 접속 및 운영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063-711-7800	www.4insure.or.kr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산재·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total.comwel.or.kr

<표 2-14> 신고사항 이행에 따른 필수 주의사항

구분	의무가입 대상
발기인(조합)의 구성	기술지주회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식회사로 발기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독설립의 경우 기관(산학협력단)이 단독 발기인이 되고, 공동(또는 연합)설립의 경우 출자하는 각 기관이 공동발기인이 됨
변태설립을 위한 정관의 작성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법인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회사의 설립시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 없음. 즉, 무효가 됨
법인설립 등기 신청기한	교육부의 설립인가와 법원의 현물출자 변태설립인가가 완료되면, 2주 이내에 대표이사(또는 대리인)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관련 세금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전까지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
4대 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 의무가 있음

Tip. 현물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물출자를 통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설립에서 부가가치세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의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로 이어지는 출자(특허기술의 명의이전) 및 세금계산서의 흐름과 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단, 자회사 → 기술지주회사로 이어지는 세액의 흐름 및 부가세 환급제도의 이해를 필요로 함. 특히, 규모 있는 평가기술의 출자가 이루어질 때 부가세액이 상당하므로 분기별 신고와 환급이 이루어지는 세무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단기 자금유동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초기 현금흐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0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그림 2-10]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단계 프로세스

구분	세부내용	비고
변경인가 신청 및 접수	- 전자공문을 통한 변경인가신청서 등 제출 - 첨부서류(변경·운영계획서, 임원의 이력서, 정관 등)	기술지주회사 → 교육부
변경인가 심의	- 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심의 ① 변경·운영계획 설명: 신청 기술지주회사 ② 질의, 토론: 자문위원 ↔ 신청 기술지주회사 ③ (필요시) 현장 확인: 전용공간, 자회사 등 ④ 최종심의 및 결론: 보완사항 도출 or 인가결정	교육부 (설립인가 자문위원회)
변경인가서 교부	- 심사결과 적합 시 변경인가서 교부 * 변경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유발생시 최대 20일 연장 가능)	교육부 → 대학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 가능 요건
 - 기 설립인가를 받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예정인 경우, 교육부에 변경인가 신청 가능
 - 변경인가 신청 시, 변경목적과 변경내용(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주체의 변경), 기술지주회사 보유 인력·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변경내용 증명서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 및 접수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및 변경·운영계획서 등 변경인가 신청 준비가 완료된 기술지주회사는 교육부로 전자공문을 통해 변경인가 신청을 실시
 - 교육부는 업무위탁기관을 통해 변경인가 신청수요를 조사, 변경인가 신청 기술지주회사의 서류 준비상태 및 기술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인가 신청 기술지주회사의 교육부 신청 시기를 조율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심의(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 기술지주회사의 변경현황 및 주주현황, 출자 변경내역 및 세부출자내역, 변경·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설립인가자문위원회 개최, 변경·운영계획에 대해 심의 및 자문
 - 검토사항 : 기술지주회사 변경사항 및 주주현황, 출자 변경내역 및 세부 출자내역, 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 자회사 설립·운영 계획 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 교부

- 교육부는 설립인가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 시에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사유발생 시 20일 연장 가능)에 변경사항 및 변경·운영계획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인가서 교부
- 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교육부는 신청 기술지주회사에 보완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기술지주회사에서 보완된 변경·운영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 설립인가자문위원회의 보완된 변경·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및 재심사를 통해 제출 보완이 잘 이루어졌을 시 변경인가서 교부

[그림 2-11]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 양식(산학협력법 시행규칙 - 별지 제4호의3 서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5. 6. 20.>

제 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

기술지주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본사		
	지사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적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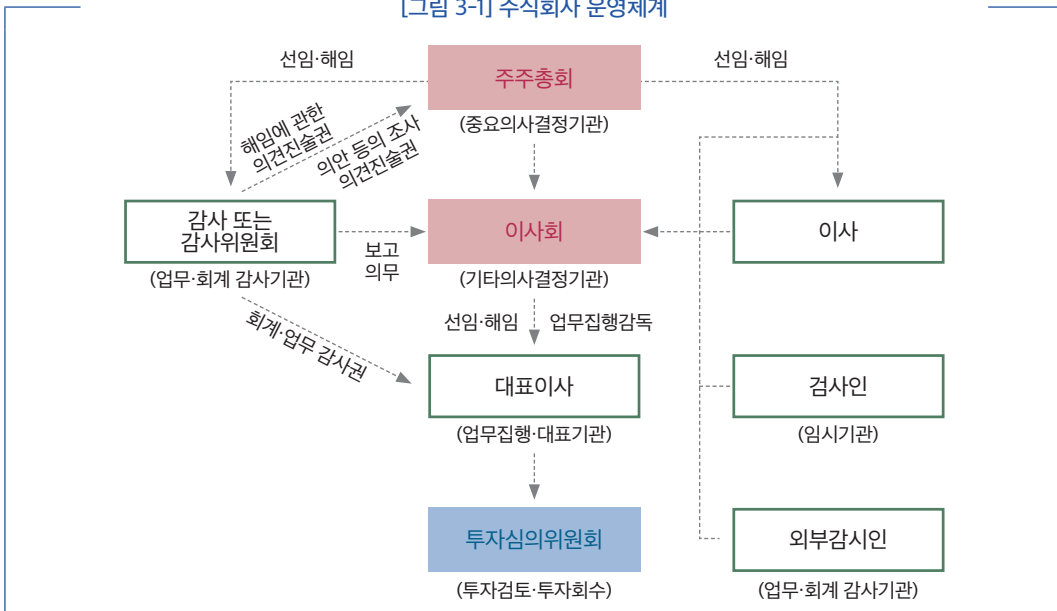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

01 경영일반

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업무

- 주식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 “주주총회”와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대표이사”
 -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 임시기관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및 주주총회에 따라선임되는“검사인”이 있음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 등* 주식회사는 회계감사기관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이 필수
-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되는 회사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그림 3-1] 주식회사 운영체계



- 주주총회
 -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 소집권자 :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소집
 - 소집시기 : 정기총회(매년 1회 일정시기, 통상적으로 회계결산 이후), 임시총회(필요한 시기, 특별한 의결사항이 필요한 때)
 - 소집절차 : 회일의 2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중요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발송

<표 3-1> 주주총회 결의사항(권한) 및 의사결정방법

구분	내용	의사결정방법
특별 결의사항	① 정관의 변경 ② 영업전부·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③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④ 자본의 감소, 사후 성립 ⑤ 임의청산, 회사의 계속 ⑥ 주식의 할인발행 ⑦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⑧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합병계약서의 승인, 회사분할계획서·회사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⑨ 휴면회사의 계속 ⑩ 임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보통 결의사항	①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 ②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주식배당 ③ 배당금 지급시기의 특정 ④ 청산회사 재무제표의 승인 ⑤ 감사인의 선임 ⑥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⑦ 청산인의 청산종료의 승인 ⑧ 청산인의 해임 ⑨ 외부감사인의 선임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 출석주주 의결권의 1/2 이상 찬성
특수 결의사항	①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②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기술지주회사는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불가	총 주주의 동의

● 이사회

-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소집권자: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
- 소집절차: 회일의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 발송

<표 3-2> 이사회 결의사항(권한) 및 의사결정방법

내용	의사결정방법
①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② 신주의 발행 ③ 사채의 발행 ④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⑤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⑥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⑦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⑧ 이사회소집권자의 특정 ⑨ 준비금의 자본전입 ⑩ 전환사채의 발행 ⑪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⑫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⑬ 재무제표의 사전승인 ⑭ 중간배당의 결정 ⑮ 영업보고서의 승인 ⑯ 이사의 업무감독권 ⑰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양도제한주식의 양도승인·상대방의 지정 ⑱ 간이합병의 승인 ⑳ 소규모합병의 승인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각 이사 1인당 1의결권 행사) • 정관으로 비율을 높게 변경하는 것 가능 • 서면결의,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인정 •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가능(모든 이사가 동시에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

나.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업무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주요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 창업 및 중소기업 관련 법률 등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 기술지주회사 업무의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11. 07.)
 - 개정된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영리행위 일부 허용: 컨설팅, 교육, 기술이전 등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는 각 대학의 특성과 산학협력 조직(TLO,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등)과의 협력을 고려하여 업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업무 확대의 의의: 중장기 사업화 전략의 실행을 위한 자립화 근거 확보
 - 기술지주회사가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5~10년 이상의 기간과 많은 성장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
 - * 최근에는 설립 초기 2년 6개월부터 수익이 나는 사례가 있기도 함
 - 기술지주회사의 초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일부의 부가적 영리행위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 경영컨설팅 업무 등)를 허용
 - 개정 「산학협력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다양하게 검토되는 대학보유기술을 외부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고려하게 되었음

[그림 3-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업무 추진 프로세스(예시)



- 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보고

-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함
 -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
 -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 위 변경사실에 대한 교육부 보고사항 중 일부 항목은 기술지주회사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분기조사를 통해 같음

[그림 3-3] 기술지주회사 분기/연간조사 안내문(예시)

[그림 3-3] 기술지출회사 분기/연간조사 안내(제시)

산학연협력기술지출회사 2024년도 3분기 운영현황 조사

본 조사는 「산학연협력진흥법」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2
[연구개발비용 총액 지원] 및 「산학연협력촉진 및 산학연협력연구개발
비용 지원법」 제50조2(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비용 지원)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는 정책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명

산학연협력기술지출회사
2024년도 3분기 운영현황조사

조사기간

2024.01.01 ~ 2024.09.30 (9월)

제출방법

운영현황 조사시스템(TCMS)을 통해 입력

▶▶▶ **시스템 바로가기**

붙임파일

1. 2024년도 분기조사 시스템(TCMS) 메뉴
2. 제1차 표준안발표서
3. 연구개발특구 연구소스 기업 등록 현황
4. 산학연협력기술지출회사 분문서형 보고 안내

조사대상

2024.09.30 기준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기술지출회사 및 자회사

조사기간

2024.10.02(화) ~ 10.14(월) 까지

조사내용

1. 기술지출회사 설립이후 요건 중 변동사항
2. 기술지출회사 대표자 변경
3. 설립이후 및 주주의 출자액 및 출자율 변경
4. 자회사의 설립 여부 보유유형 변경

[참조] 산학연협력 보고서형 (붙임4 참조)

1. 기술지출회사 장관(지세)사항 중 아래 변경사항
- 성장, 매출 증가액, 실적
2. 기술지출회사 대표자 변경 및 임원직 변경 내용
- * 현재비서에게 임명 교과부 또는 임명여부 승인여부
- * 연구개발비용 총액 지원이유에 대한 변경요청이요
- * 연구개발비용 총액지원에 동의여부 보고사항
(연구, 산업연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용 지원 가능 여부, 제3자)

한국기술지출회사협회(KATH)
T. 02-2063-4023 / E. research@kath.or.kr

산학연협력기술지출회사

2023년도 운영현황조사

본 조사는 「산학연협력진흥법」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2(산학연협력 비용 지원) 및 「산학연협력촉진 및 산학연협력연구개발 비용 지원법」 제50조2(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비용 지원)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조사결과는 정책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명

2023년도 산학연협력기술지출회사 운영현황조사

조사대상

전국 82개 산학연협력기술지출회사 및 자회사(23.12.31. 기준)

조사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조사기간

~2024년 7월 26일(금) 까지

조사방법

운영현황 조사시스템(TCMS)을 통해 입력

주요내용

1. 기술지출회사 연간조사
- 재무현황, 기술개발 현황, 자회사 자재현황, 투자현황 등
2. 자회사 연간조사
- 재무현황, 외부 투자자현황 등

문의처

한국기술지출회사협회 02-2063-4023 / research@kath.or.kr

입력하러 바로가기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KATH
Korea Association of
Technology-based
Hu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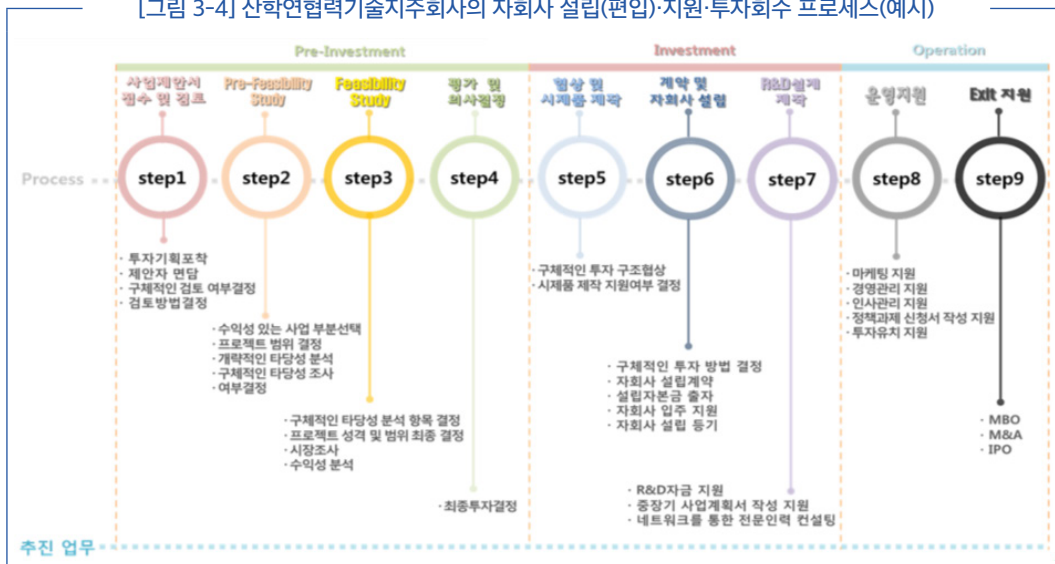
<표 3-3> 기술지주회사 변경사항 중 분기별 조사 보고 같은 항목

기술지주회사 분기별 조사 보고 같은 항목	(산학협력단) 교육부 직접 보고 항목
①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 : 자본금 내 기술현물 비율, 기술지주회사 대표자, 상시전담인력 채용, 전용공간 현황, 주식회사 여부 ②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③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보유비율	① 정관 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②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 : 기술지주회사 대표자 외 등기임원 변경

● 자회사 설립 단계별 관리 절차 수립

- 기술지주회사의 모델 및 운영전략에 따라 운영관리 및 경영지원업무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부분 자회사의 독립성을 보장
- 연합형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조인트벤처 방식의 설립을 주요한 자회사 확보 방안으로 하고 있어 자회사에 대한 경영참여 등이 제한적임
- 일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직원 혹은 대표가 자회사의 등기이사로 참여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그림 3-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편입)·지원·투자회수 프로세스(예시)



출처 : 집필진 작성

02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리

가. 자회사 설립방식

● 자회사 설립의 3가지 유형

- 단독설립 방식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 출자대상기술의 완성도가 높고,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중심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단독설립 방식을 채택
 - » 예시: 가톨릭대학교기술지주의 자회사인 (주)바이젬셀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선도적인 기초연구를 통해 임상적 효과를 확인한 면역세포치료 기술사업화를 위해 2013년 설립된 회사로 2021년에 코스닥 상장 및 지분매각을 통해 투자회수를 함

- 합작설립(조인트벤처, JV) 방식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외부기업(기관)과 합작으로 자회사 설립
- 대학이 기술을 출자하고, 기업이 자본 출자와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의 설립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학이 자본을 출자하면서 발명자가 대표이사를 겸임,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많이 설립되고 있음
 - » 예시: 연세대학교기술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씨엠(주)은 2012년 기술지주회사가 특허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현물(4.5억원)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외부기업이 현금(5천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임

- 지분편입 방식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분야의 유관기업에 기술을 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
- 일반적으로 초기 기업이면서 기술적 관련성이 높은 기업이 대상
 - » 예시: 연세대학교기술지주의 자회사였던 (주)라파스는 2011년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한 현물(3.5억원)과 현금(1억원)을 출자하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임

[그림 3-5]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방식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방식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3-4> 자회사 설립 유형에 따른 장단점

방식	장점	단점
단독설립	• 설립 및 설립 이후 경영에 있어 의사 결정 구조의 단순 및 신속성 •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모 있는 수익 창출 가능	• 독자적인 사업화 검증 시스템과 현금출자에 대한 부담 • 자회사 설립 단계부터 전문적인 경영 지원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 증가
합작설립	• 대학은 상용화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대학의 우수기술 확보를 통한 전략적 R&D자원 발굴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중장기 성장전략의 계획이 가능	• 협력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발굴과 상호 협력의 범위 및 역할, 지분구조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합의하는 것이 관건
지분편입	• 자회사 프로세스의 신속한 진행과 긴밀한 협력이 가능 • 사업화 타당성 및 상용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검증 확인이 가능	• 현금출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기본 경영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기술지주회사의 추가적인 경영지원의 필요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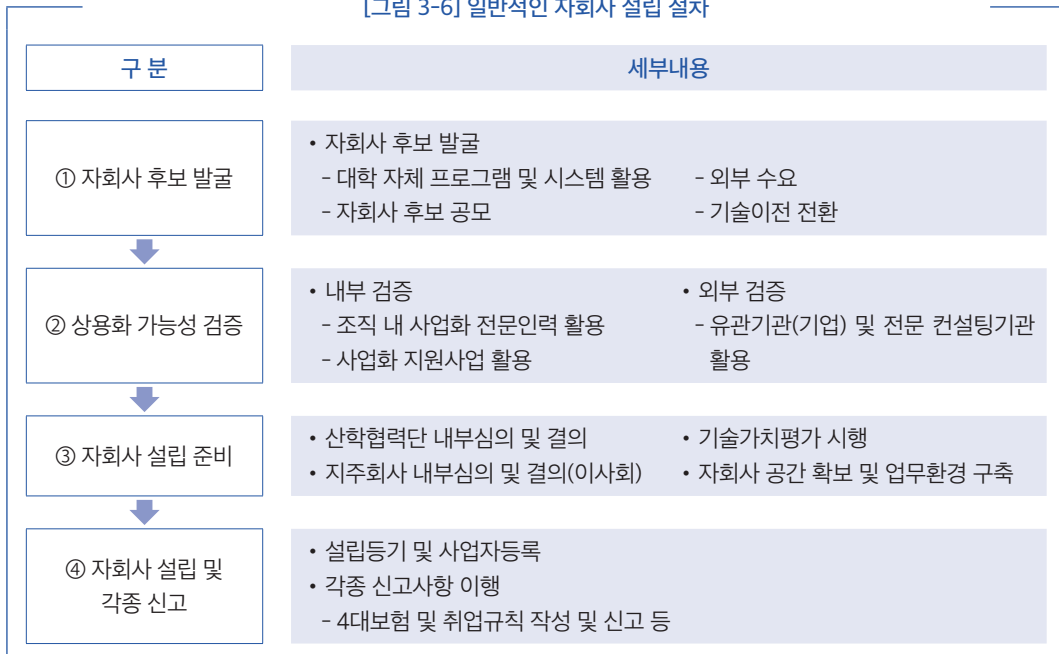
출처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2012.11)

나. 자회사 투자실무

● 자회사 설립 절차

- 일반적인 자회사 설립 절차

[그림 3-6] 일반적인 자회사 설립 절차



출처 : 집필진 작성

- 자회사 후보 발굴

- 대학 자체 프로그램 및 시스템 활용
 - » 대학 산학협력단의 발명신고 프로세스 및 특허 DB, 연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1차적으로 타진한 후, 선별된 기술들을 대상으로 추가 절차 및 검증 시스템 등을 통해 자회사 후보기술로 발굴
- 자회사 후보 공모
 - » 발명자(교수, 연구원, 학생 등)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특정 양식으로 보유 기술의 사업화 후보를 모집하여 선별하는 방식
 - » 기술지주회사의 최초 설립 시점 및 지속적인 자회사 후보기술의 발굴에 모두 활용되는 일반적인 방식. 대학 내 다양한 발명자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나 충분한 사업 예산과 인력의 보유가 필요
- 외부 수요
 - » 외부 수요는 기술 수요기업과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 기술 수요기업의 경우 차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기업의 선제적인 협력 제안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초기 현금 투자 및 운영에 있어 상당 부분을 수요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모델
 - » 기술지주회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타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자회사 설립 수요를 발굴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
- 기술이전 전환
 - » 기술이전 전환은 기존 기술이전 계약이 이루어진 기술에 대하여 해당기업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 » 기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비교 검토하고, 실시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적극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면, 기술의 현물출자를 통한 실시기업의 자회사 편입 또는 합작 설립을 통한 자회사 설립이 가능. 다만, 이 방식은 기존 기술이전 계약의 유지 대비 특별한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임
 - » 기존 기술이전의 사업화 과정에서 추가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술이전이 아닌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서 강한 사업화 연계(대학의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 동기 부여)가 가능

- 상용화 가능성 검증

- 내부 검증
 - » 대학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전문인력을 통한 1차 검증: 발명자 인터뷰 및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공동 또는 기술지주회사 단독으로 내부 검증
 - » 자회사 후보 기술 분야의 사업전문가를 자회사 설립 전 예비 CEO로 영입하여 해당기술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전략을 수립하기도 함
 - » 대학 및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의 전략적 선택으로 검토하기도 함
- 외부 검증
 - » 자회사 후보 기술 분야의 상용화 경험 및 역량이 있는 사업화 파트너 대상 기업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식

- » 기술평가기관의 가치평가 보고서 및 전문 컨설팅 기관의 기술 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여 자회사 후보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도 함

- 자회사 설립 준비

- 산학협력단 내부심의 및 결의
 - » 기술지주회사 경영진(산학협력단 경영진), 산학협력단 실무 담당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회사 설립을 위한 산학협력단 내부 심의 및 결의. 기술지주회사의 현금출자만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출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내부심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기술지주회사 내부심의 및 결의
 - » 기술지주회사 실무진의 사전 검증 이후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설립에 대한 심의를 진행. 투자심의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 인원으로 적절히 구성하여 의사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자회사 설립 안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로 최종 의사결정
- 기술가치평가 수행
 - » 특허 기술의 현물 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 자회사 공간 확보 및 업무 환경 구축
 - » 입주 공간 및 기타 업무 지원을 통해 자회사 초기 운영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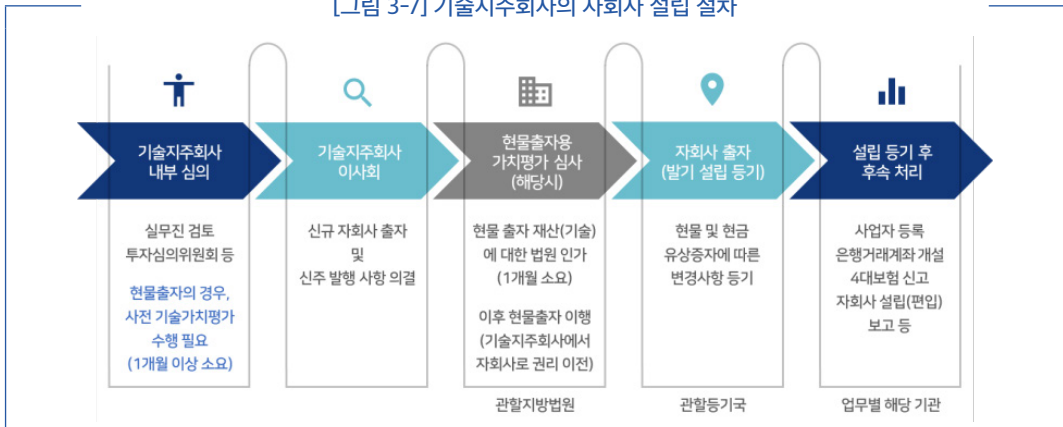
Tip. 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예외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는 공인기관의 평가를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출자한 후, 최초 확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자회사로의 출자가 이루어 질 경우 최초 가치평가를 준용(별도의 추가 평가 없음 / 근거 : 「산학협력법」 제36조의4제3항)

- 자회사 설립 및 각종 신고

-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 » 기술지주회사는 법원의 현물출자인가가 완료되면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수행하고, 서류(현물출자인가서 포함)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 및 인가받아 자회사의 설립을 완료
 - »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실제로 법인등기 완료 후에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법으로 규정된 기간은 없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4대 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

[그림 3-7]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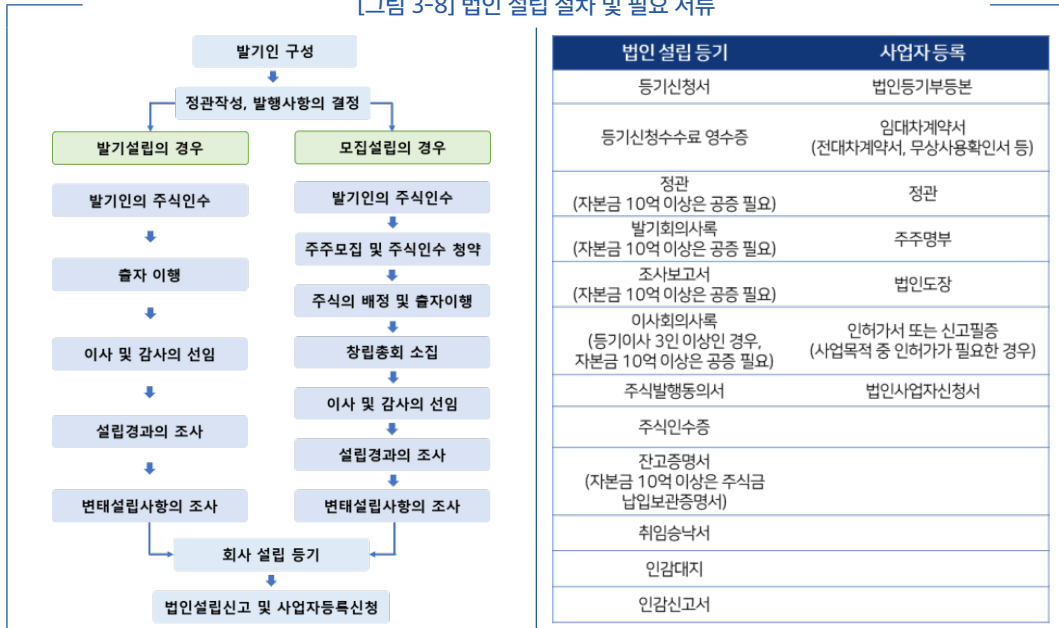
출처 : 집필진 작성

Tip. 현물출자

-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출자를 위해 특히 기술의 현물 출자는 필요
 - 회사 설립 시는 '변태설립사항'으로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야 하고, 신주 발행 시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한 형태로 이사회에서 결정(변태설립사항은 회사 설립과 관련된 사항들 가운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상법은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변태설립사항의 정관 기재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음)
 - ※ 변태설립: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설립되는 것을 가리킴
- 실무상 법원인가 신청서류와 자본금 증자 서류를 동시에 작성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변경연월일)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므로 현물출자증서, 재산인도증의 현물출자 납입기일 작성 주의. 변경연월일을 기준으로 자회사 설립일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등을 판단
 - ※ 자본금증자 주요서류: 정관, 공증 받은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잔고증명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 ※ 현물출자 법원인가 신청 주요서류: 정관, 공증 받은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현물출자 증서, 재산인도증, 기술가치평가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세기간: 6개월)
 -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무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특허권이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로 공급되므로, 세무계산서도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 순으로 발행
 - 현물출자 서류 작성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세무계산서 발행 시기를 고려하여 현물출자 인도일(주금납입기일) 등 기재 주의
 - 특허청의 이전 등록 여부와 별개로 기재된 현물출자 인도일(주금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세무계산서 등 발행 필요
- 재산인도일(또는 등기부 변경연월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안전
 - 법원 인가 기간(대략 1개월)을 고려하여 재산인도일(주식인수증, 재산인도증, 현물출자증서 상의 납입기일) 작성 필요

-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그림 3-8]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출처 : 집필진 작성

● 자회사 설립 방식에 따른 주안점

- 단독설립 방식

- 단독설립은 자회사로의 자본금 출자에 대한 모든 부담을 기술지주회사가 가지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임
- 지분구조 상 주주 간 계약이 필요치 않고, 의사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합
- 보통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업하는 경우 단독설립 방식으로 설립

- 합작설립 방식

- 합작설립(Joint Venture, JV) 방식은 외부기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짐
- 기술지주회사가 현물을 출자하고 기업이 현금을 출자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기업에 일임하는 형태로 설립할 때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참여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약정서 등의 주주간계약서 체결을 통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
- 발명자인 대표이사와 기술지주회사가 모두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JV형태의 자회사일 경우 주주간계약서 체결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짐
- 주주간계약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5> 주주간계약서 주요 항목

구분	내용
지분 구조	• 발행주식 총수와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사항
업무 분담	• 기술의 사업화 관련 경영상의 역할과 업무 분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 • 회사 수익에 대한 배분 관련 사항
수익 분배	• 투자금 및 기여도에 따른 수익/손실에 대한 분배 기준 및 방식
주식 처분	• 주식 처분 제한 기간 설정 •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동반매도권 등
브랜드 사용	• 대학 브랜드 사용 관련 사항 (별도의 지침으로 제공할 수도 있음)
기타	• 해제 및 해지 사유 •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출처 : 집필진 작성

- 주주간계약서는 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업 실패 혹은 기타 다른 이슈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도 필요
- 대학 브랜드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대학의 이미지 관리와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 특히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분편입 방식
 - 지분편입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합작설립과 유사한 주주간계약서 체결을 통해서 진행 필요
 - 창업팀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나 대학연구과제 수행 시 성과 도출 등을 위해 법인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기술지주회사로 편입되는 상황이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실제로는 JV형태이지만 지분편입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음
- 자회사 설립 대상의 확대
 - 2023년 3월 28일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짐

다. 자회사 성장지원

- 창업보육
 - 최근 자회사 설립 추세를 보면, 발명자인 교원이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 창업보육은 창업 전/후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음

<표 3-6> 창업 보육 활동

구분	창업 전	창업 후
기술	• IP 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축 • 사업화 검증 (BM, 시제품 제작 지원)	• 추가 기술 출자 또는 기술이전 지원 • 기술개발 지원(정부사업 연계)

<표 3-6> 창업 보육 활동

구분	창업 전	창업 후
인력	• CEO 및 창업 초기 필요 인력 영입 지원	• 법률/회계/인사/노무 서비스 지원
자금	• 설립 출자금 확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확보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창업 실험실 지원사업 등)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연계 융자(투자) 지원 • 기술지주회사 운용 펀드 투자 • 타 투자자 투자유치 지원 • TIPS 및 기타 정부사업 연계 기술 개발 지원
공간	-	• 초기 보육공간 지원 • 연구 시설 사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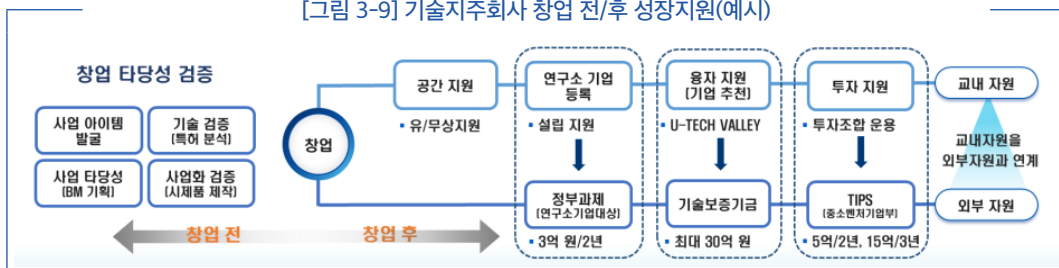
출처 : 집필진 작성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내부 가용자원을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회사의 사업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투자 지원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현재 대학 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기술창업이 성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나타나기 전에는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었음. 몇몇 대학에서 자회사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2017년 교육부 재원의 대학창업펀드가 만들어지면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투자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 2016년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면서 자회사에 대해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 지원을 할 수 있게 됨
- 기술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하면, 벤처투자조합 형태의 펀드도 결성하여 운용할 수 있음
- 펀드를 통해 자회사 혹은 학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교원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펀드 규약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요구됨. 대학창업펀드의 경우는, 기업가치평가 혹은 타투자기관의 공동투자를 통해 객관적인 투자가치를 인정받고, 조합원 총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투자가 가능
-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창업기업이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음. 과제에 선정되기 전 운영사인 투자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받는 것이 요구되는데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운용사가 되어 투자를 하거나 다른 운영사와의 연계를 통해 자회사에 대한 투자 지원을 할 수 있음
- 다음은 연세대학교의 창업 전/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도식화한 그림임

[그림 3-9] 기술지주회사 창업 전/후 성장지원(예시)



출처 : 집필진 작성

● 기술개발 지원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
 - 각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 및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한 사업 수주 전략이 필요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팀에게 창업을 독려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TIPS 운영사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해당 운영사의 추천을 통해서 선별된 기업에게 정부 R&D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13년부터 시작된 TIPS 프로그램은 선정된 기업에게 R&D 자금으로 2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데, 2023년에는 R&D 자금으로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특화형(딥테크, DeepTech) 트랙이 신설됨
 - R&D자금 외에 창업사업화 1억원, 해외마케팅 1억원의 자금을 신청 및 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라. 자회사 투자회수

● 투자회수(Exit)

-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현금 및 기타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
 - 투자회수 수익모델이란 "투자자가 사업 아이템에 자금을 투자한 이후 해당 사업 아이템으로 발생하는 Cash Flow에서 투자자가 회수하는 Cash Flow"
 - 방식: 투자회수는 크게 지분매각과 이익배당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분매각은 M&A, IPO를 비롯하여 기타 지분매각 사유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음
 - 투자회수 기본전략 수립 : 기술지주회사는 사업모델의 특성상 자회사가 일정 수준의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을 때, 어떤 방식을 통해 투자회수를 할 것인지 설립단계 부터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투자계약서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음
 -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성장과정을 점검하면서, 적절한 투자회수 시기를 판단하고, IR 및 투자협상을 통해 사전에 공유된 전략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의 투자회수 시점을 결정

<표 3-7> 투자회수 주요 방식

방법	내용
지분매각	•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분매각(구주매각) • Joint Venture 참여기업에 대한 지분매각(MBO) • 자회사 구성원에 대한 지분 매각
합병매각	• 기존 유사업종 중견, 벤처기업과의 합병 매각(M&A) • 자회사 간 합병 매각
상장매각	•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
기타	• 배당, 유상감자, 조기 폐업(기업 해산) 등

출처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2012.11)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회수 방식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10]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회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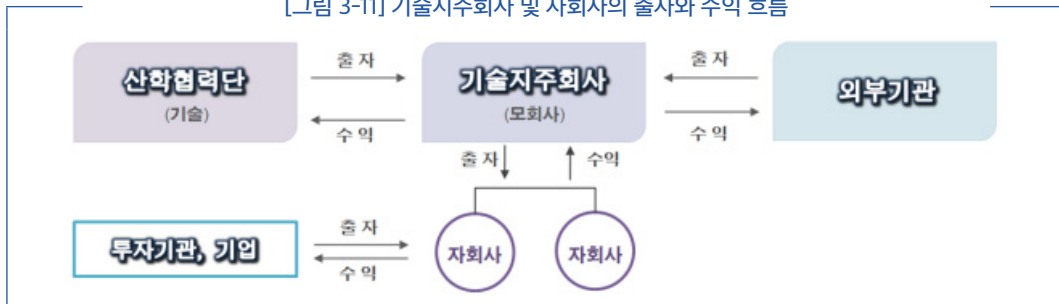
출처 : 집필진 작성

Tip. 투자회수 최근 동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상장 사례를 통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모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회사에 대한 구주매각의 가능성이 높아짐. 민간 VC의 대학창업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M&A, IPO가 아니더라도 일정 투자 라운드를 거치면서 성장해 온 자회사 주식에 대한 제3자 구주매각 방식의 투자회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출자 구조와 수익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 가능

[그림 3-1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출자와 수익 흐름



출처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2012.11)

● M&A(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

- 매각 시기 및 절차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매각 시기는 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기관)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진행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운영전략과 투자자(기관)들의 투자회수 전략을 상호 조율하여 매각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에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매각 혹은 지속운영 여부 판단이 중요
 - 매각 당시의 시장 상황, 인수기업의 성향을 고려하여 투자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도출 필요

- 자회사의 매각 절차는 '인수기업 발굴 → 매각 협상 → 매각'의 3단계를 거치며, 이 가운데 매각가격 협상과정이 가장 중요
 - » 인수기업 발굴은 자회사의 거래관계, 투자기관들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발굴될 수 있으며, 인수요청이 먼저 들어올 때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
 - » 매각협상은 우선 인수대상기업 선정평가와 매각 실사의 2단계로 구분되며, 이 단계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모든 내용이 결정
 - » 매각단계는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대로 자회사의 자산을 이전하는 단계
- 매각협상 시에는 우선 인수대상자 선정과 매각 실사의 2단계로 구분하여 협상을 실시
 - » 우선 인수대상자 선정과정은 먼저 자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자회사의 현황자료를 배포하고, 기업들의 인수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이 중 가장 인수가격이 높고, 기업 인수 후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기업을 우선 인수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
 - » 우선 인수대상자 선정 이후 3개월간은 매각실사과정을 통해 우선 인수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피인수 기업인 자회사에 대한 자산과 부채 전반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확정된 인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 매각 실사 과정에서 피인수기업과 인수 희망기업 간 기업가치 산정에서 논란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가치평가에 존재
 - »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해 양 기업 간 평가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통해 매각 가격 합의 도출 필요
- 매각 시 유의사항
 - 비용의 효율화(비경상적 비용의 관리)
 - 성장가능성 부각
 - 정보공개 수준
 -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계약

Tip. M&A Exit 유의점

투자유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M&A 시장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음. 이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M&A 수요가 기업이 최종으로 투자받은 가치보다 낮은 단가로 형성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함.

이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해당 기업의 최종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해 주기 어려운 조건임. 기술지주회사는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가치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M&A 단가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가치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런 후속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M&A를 통한 Exit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기술지주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현황과 투자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여 M&A를 통한 Exit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표이사 및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가치와 다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가치를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 IPO(기업공개, 주식공모_Initial Public Offering)

- 상장의 정의

-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주권이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당해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님. 기술지주회사는 보유지분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로, 자유로운 매매를 통한 투자회수가 가능해진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상장의 종류

<표 3-8> 상장의 종류

구분	내용
신규 상장	•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 • 신규상장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공모(모집·매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유통)상장으로 구분되며, 직상장의 경우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공모 없이 시장이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됨
재상장	•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이나,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장이 폐지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
추가 상장	• 상장법인이 증자, 합병,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한 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
변경 상장	• 주권의 기재내용이 변경(상호, 종류, 액면금액 등)되는 경우, 새로운 주권을 교체·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

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상장의 혜택 및 효과

• 기업에 대한 혜택

- »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당해 기업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할 수 있음
-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비상장법인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상장법인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음
- » 주식배당의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비상장법인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나, 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음
-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상법』 제542조의4):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주주에 대한 혜택

-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상장을 위해 모집하거나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의 경우 30%, 대주주의 그 외의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상속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하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
-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3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유가(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18%의 세율이 적용됨
- » 소수주주권 행사완화 등 (『상법』 제542조의6, 제542조의7):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1%) 등이 완화되어 적용됨

• 상장의 효과

- »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음
- » 기업인지도 제고: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음. 또한 기업인지도 제고에 따라 우수 인재의 입사 지원 증가 및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
-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

- 상장 요건 및 절차

-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음

[그림 3-12]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구분	일반기업(벤처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매출액 기준	시장평가·성장성 기준	혁신기술 트랙	사업모델 트랙
주식분산 (택일)	01 소액주주 500명 이상(상장신청일 기준) & (a) or (b) (a) 소액주주 25%미만 소유시(신청일 기준) : 공모 10%이상 & 소액주주 지분이 25% 이상 (b) 소액주주 25%이상 소유시(신청일 기준) : 공모 5%이상(10억원 이상) 02 소액주주 500명 이상(상장신청일 기준) & 공모 10%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03 소액주주 500명(상장신청일 기준) & 공모 25%이상 04 소액주주 500명(상장신청일 기준) & 국내외 동시공모 20%이상 & 국내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05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지분 25%(or 10%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0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원 02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03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04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01 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02 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원이상[벤처50억원] 03 시총 500억원 & PBR 200% 04 시총 1,000억원 05 자기자본 250억원 06 (코넥스 이전상장 이익미실현 요건) 시총 750억원 &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01 자기자본 10억원 02 시가총액 9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BBB등급 이상일 것 (외국기업의 경우 A등급&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질적 요건	기업의 성장성,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효과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			

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3-9>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

구분	주체	비고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지정감사인 지정)	발행사, 금감원,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대표주관계약 체결	발행사,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에 계약서 등 제출(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정관 정비 및 사전준비	발행사, 증권사	표준 정관으로 개정
기업실사 및 발행가액 분석자료 준비	발행사, 증권사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정	발행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주권가매 계약	발행사, 가매소	

<표 3-9> 코스닥시장 상장 절차

구분	주체	비고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발행사, 증권사	
예비심사청구서 검토	코스닥시장본부(상장심사팀)	
청구기업 심의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상장위원회 상정
예비심사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사, 감독원	
발행가액 결정	발행사, 증권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수리후 15일
청약	증권사	
배정	증권사	
신규상장 신청	발행사, 증권사	
증자 등기	발행사	
코스닥상장 승인	코스닥시장본부	
매매 개시	코스닥시장본부	

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구주매각

- 자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회수는 구주매각을 통한 Exit이라 할 수 있음. 모든 자회사가 M&A 혹은 IPO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주매각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자회사가 후속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해당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투자단가를 낮추기 위해 일정 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구주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와 투자라운드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이 후속투자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구주매각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성공적인 구주매각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 구주매각은 신주발행 단가에서 일정 부분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매 단가를 결정하는데, 해당 기업의 투자가치가 높은 경우와 구주를 매수하려는 투자자의 매수의지가 강할 경우, 그리고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작게 설정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아지게 됨
 - » 신주발행 단가 대비 구주매각의 할인율은 상황에 따라 0~40% 등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기업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기술지주회사의 상대적인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회사에 대한 구주매각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투자유치 이력이 없거나 받은 지 오래된, 또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이런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매각을 위한 전략을 잘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대주주(대표이사 등) 및 합작설립 참여기업에게 매도를 하거나, 성공적인 구주매매 시 끼워팔기 전략으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 »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 수립을 통해 매도자와의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Tip. 구주매각 끼워팔기(패키지 딜, Package deal)

기술지주회사가 정리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혹은 이해관계인(대주주, 대표이사 등)과의 주식 매도에 대한 계약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함

이해관계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평소 구주를 매수해 줄 수 있는 기관(투자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수한 자회사의 주식 매도와 함께 정리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주식 매수를 유도할 때, 성공적인 매매로 이어질 수 있음

- 기타 (이익배당, 현물회수 및 유상감자 등)

- 이익배당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업 및 사람 등)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행위를 말함.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정도로 사업이 잘 운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중에는 특정 발명자의 특허 기술이 아닌 해당 대학의 기술적 자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경우가 있는데, 이익배당을 통한 투자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빠르게 성장하는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매도 전략이 배당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수입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이익배당 전략이 통용된다 볼 수 있음
- 현물회수는 자회사가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 추진하는 회수 방법임
- 해당 기술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의 기회를 도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금으로 회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임
- 일반적으로는 기술의 상용화 가치가 낮아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물회수는 대부분 기술지주회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자회사로 출자된 현물은 보통 7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거쳐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술지주회사에서 다시 현물을 회수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그 회계적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경우가 대부분
- 유상감자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슈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감자를 원하는 주주에게 감자대가를 지불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함
- 유상감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총액과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므로 기존 주주들의 주당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총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이익율(ROE: Return On Equity)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반면 자산과 자본이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높아지게 됨
- 주주(기술지주회사)의 경우는 감자대가가 주주의 배당소득이 되어 과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회사 수입(혹은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 할 수 있음

- 폐업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폐업을 통한 투자회수를 할 수도 있음
- 자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면 회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있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지분 소각에 따른 손실로 처리하게 됨
- 자회사 폐업 시 대체로 투자현금 회수는 어렵지만, 투자현물(기술) 회수는 가능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폐업하기 전, 기술을 출자한 산학협력단 및 발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물회수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03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가.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방안

●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 개인투자조합 정의

-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 업무집행조합원(GP:General Partners):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LP:Limited Partners):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 9.>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관련 법령

<표 3-10> 개인투자조합 관련 법령

법령	조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 2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제 1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제10조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성 및 등록
 - 개인투자조합 요건

<표 3-11> 개인투자조합 요건

항목	요건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
출자 1좌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수	49인 이하(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존속기간	5년 이상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요건
 - » 출자지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
 - » 주체: 법인의 경우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개인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LP) 요건
 - » 주체: 개인, 법인(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는 조합에 한하여 대학·산학협력단·한국과학기술원 등, 모태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가 GP인 조합에 한하여 일반법인·단, 조합 결성액의 30% 이내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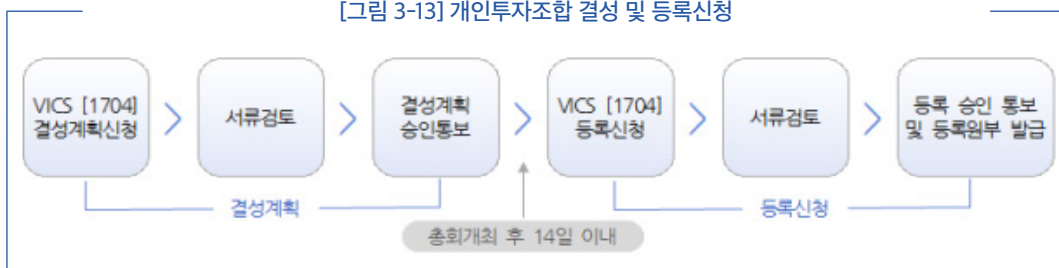
Tip.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수탁의무 발생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관련 근거 : 벤처투자법 제15조 제1항, 중기부 고시 제2023-115호 제11조)

-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신청
 -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설치 : <http://install.kvic.or.kr>
 - » 조합결성계획 신청 및 승인 통보, 조합등록 신청 및 조합 등록 승인통보는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진행되며, 조합결성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조합 등록신청 필요
 - » 관할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조합명 첫글자는 한글 필수
 - » 각 단계별 필요서류는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 개인투자조합안내 메뉴를 참고하여 준비

[그림 3-13]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신청



출처 :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 개인투자조합 운영

- 조합 운영 관련 주의사항

• 법령 상 의무투자 비율 준수

- »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경우 출자금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에 투자하여야 함
- » 의무투자 방법: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체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 의무 투자 비율을 제외한 출자금은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나,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규정(단, 법령상 예외 규정 존재)

- » GP, GP의 특수관계인, GP의 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GP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GP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이 포함)의 재산을 취득 혹은 매각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행위
- »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 창업보육센터 및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 일반·무도 유흥업, 주점업 등의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 금융회사, 사무집합투자기구 등에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 » 개인투자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 »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 개인투자조합 보고 의무

- » 관련 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7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중기부 고시 제2023-115호) 제12조

» 보고 의무 내용

보고	기간	내용
반기 보고	상반기: 7월1일~7월31일까지 하반기: 1월1일~1월31일까지	투자 또는 회수내역(투자기업, 투자금액 등)
결산 보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월1일~3월31일까지)	• (원칙)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감사의견서 첨부한 결산서 제출 • (예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없이 자금운용현황 양식파일로 결산서 제출 가능 - 사업연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 결성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으로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조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개인 회계사 불가)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 7호에 따른 감사반

» 보고 방법: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서 보고하며, 상세 매뉴얼은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개인투자조합보고' 메뉴 참고

● 개인투자조합 해산 및 청산

- 해산 사유(벤처투자법 제 18조,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 11조)

- 조합 존속기간의 만료
-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유한책임조합원의 전원탈퇴
- 업무집행조합원의 전원탈퇴, 등록취소 등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 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 해산 및 청산 절차

- 조합 해산계획을 수립 후 해산일을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로 하여 해산감사를 진행함
- 해산 회계감사 후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 재무제표 승인, 원금 및 수익금 배분, 조합 청산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GP)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나 개별 규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선정할 수도 있음
- 청산인은 청산총회 전까지 매각되지 않은 조합 잔여 자산을 처분하며, 처분 후 규약에 따라 성과보수 산정·최종배분액 산출·청산 회계감사 등을 진행 후 이를 청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여 처리함. 유의할 점은 청산회계감사 시 조합의 잔여자산이 없으므로 재무상태표 상 모든 계정값은 "0"이 되어야 함
- 청산총회가 마무리되면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서 하기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조합 등록 말소 신청을 진행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말소 승인 통보를 받으면 개인투자조합의 청산이 완료되며,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말소 신청까지 완료하면 됨

» 청산결과보고서

» 총회의사록(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조합원 수익분배 증빙(예: 통장사본)

» (해당 시)증권거래세 납부서류 등

»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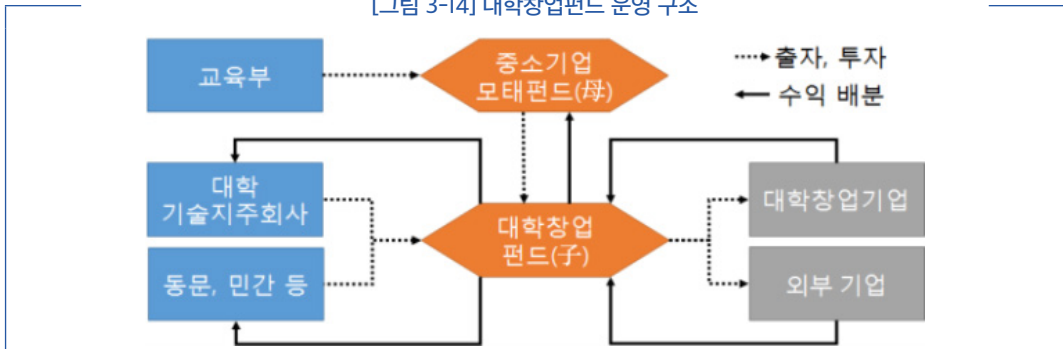
나. 대학창업펀드 결성 및 운영 방안

● 대학창업펀드 결성

- 대학창업펀드 정의

- 대학창업펀드는 학생·교원 등 초기대학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조성을 통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붐 확산을 도모하고자 대학 등과 한국모태펀드(교육계정)가 매칭하여 조성한 펀드를 통해 대학 내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7년 최초로 추진되었음
- 정부는 한국모태펀드를 통해 매칭 출자하고(75%), 업무집행조합원(GP)은 책무성 제고를 위해 펀드 결성액의 15%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펀드의 운영 관리는 한국벤처투자(주)에서 담당함

[그림 3-14] 대학창업펀드 운영 구조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2019.09)

- 대학창업펀드 결성 및 등록

- 대학창업펀드는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결성되며,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음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단, 과학기술원에서 만든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전문회사만 해당)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단, 창업기획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공동운용(Co-GP)인 경우만 가능

<표 3-12> 대학창업펀드 선정 대학 현황

연도(선정대학 수)	회사명
'17년(5개)	연세대·고려대·서울대·전남대·부산지역연합 기술지주
'18년(6개)	부산대·포항공대·한양대·서울대·미래과학·부산지역대학연합+대경지역대학공동 기술지주
'19년(4개)	충북대+서울과기대·송실대·전남대+광주연합·한양대 기술지주
'20년(6개)	연세대·충북대+서울과기대·포항공대·미래과학·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국민대 기술지주
'21년(6개)	연세대·고려대·전남대+광주연합·전북대·충남대·한밭대 기술지주
'22년(5개)	경북대·전북대+한국공과대·부산대·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한양대 기술지주
'23년(4개)	강원대·고려대·미래과학·부산대 기술지주
'24년(4개)	한림대·강원대·고려대·부산대 기술지주

출처 :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Tip. 출자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

- 대학창업펀드는 출자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1)~2)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해당 사업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대학창업펀드 출자사업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사전에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 2)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 대학창업펀드 선정 절차는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선정으로 진행됨
- 대학창업펀드 선정 시 한국벤처투자 출자 공고의 주요 출자 조건에 따라 결성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결성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 결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 » 한국벤처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하여 조합자금을 관리(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 » 한국벤처투자가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의 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
 - » 조합의 회계감사인인 한국벤처투자가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 »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된 투자의사결정기구를 구성
- 대학창업펀드도 개인투자조합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조합명 첫글자는 한글 필수
- 결성계획신청부터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활용하며, 결성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조합 등록신청 필요
- 각 단계별 필요서류는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 개인투자조합안내 메뉴를 참고하여 준비
- 대학창업펀드 운영
 - 대학창업펀드는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되, 대학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75% 이상을 투자하고 학생창업기업에 투자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단, 이는 대학창업펀드 출자 공고상 비율이며 운용사는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하여 출자사업에 제안할 수도 있음
 - 한국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대학창업펀드의 경우 조합 규약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이슈 사항 발생 시 한국모태펀드 자조합 담당자와 협의 후 업무 처리 필요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사용이 의무화되며, 투자 진행 별 보고 항목 및 시기별 보고 항목, 수시보고 항목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국벤처투자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조합을 운용하여야 함
 - 매월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하여 투자/회수 실적(투자조건, 회수유형 등)을 전자보고하여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반기마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운용현황 및 조합운용전략 등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에 보고 필요
 - 투자심사보고서에는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업체명, 투자금액, 조합명, 동반투자내역, 투자방식, 투자단가, 인수주식수, 주요조건, 투자금사용용도,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무투자 해당 여부를 정확히 기재

-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금 사용처,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대상거래(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의 처리방안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업무집행조합원은 규약에 근거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투자금 실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실사 결과를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에 보고함

Tip. 대학창업펀드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대학창업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술지주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단, 외부투자기관과 공동 투자 시에는 면제).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후행투자로 분류되어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후행투자 시 투자심의위원회 완료 후에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후행투자 누적 투자 한도는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되므로 운용사는 후행투자 한도 등을 유의하여 펀드를 운용하여야 함.
- 복수의 펀드 계정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 내부 투자자금 배분 관련 지침을 구비하여 각 계정별 투자재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근거와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출처: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 대학창업펀드 해산 및 청산

- 대학창업펀드 규약 상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참고하여 조합원간에 주요 일정 사전 협의 등 원활히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해산 및 청산 절차는 해산 예정일(펀드 존속기간 만료일)을 D-Day로 하여 진행함

<표 3-13> 모태펀드 자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날짜	내역	세부내용	비고
D-180 ~D+90	구주유통망 등록	• 잔여자산 구주유통망 의무 등록	• 만기일 이후 잔여 자산 구주유통망 90 일 이상 등록 필요
~ D-30	해산계획 수립 및 협의	• 잔여 유가증권 처리방법 • 청산기간 중 자산배분방법, 해산실사 일정 협의	
D-30 ~ D-Day	해산실사	• 특별조합원 주도로 실시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포트폴리오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1~3일 실시 • 청산기간 협의	• 조합비용 등 조합 규약 준수여부 • 투자 및 회수 적정성 평가
D-Day ~ D+30	회계감사	• 해산일을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로 하여 외부감사 진행	• 해산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 후 즉시	해산총회	• (의안예시) - 제1호 : 관리보수 지급 - 제2호 : 원금 및 수익금 배분(필요시) - 제3호 : 재무제표 승인 - 제4호 : 조합 청산계획 승인 • (청산기한 설정, 청산인 선임, 잔여자산 회수방안, 배분계획 등) - 제5호 : 해산 결의(D-Day가 해산일)	

<표 3-13> 모태펀드 자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

날짜	내역		세부내용	비고
해산일~ 청산총회 -60일	매각진행		• 잔여자산 GP 자율처분	
~ 청산총회	매각 되지 않은 잔여 자산의 경우	잔여 자산 가치 평가	• 청산총회 전 60일 이내 임시총회에서 평가법인 선정 후 평가 • 가치평가방법은 '투자자산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름 • 잔여자산 평가 시 GP는 평가대상 법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하여 평가기관에 주요정보 제공 체크리스트를 제출	• 조합회계감사인은 잔여자산 평가 법인 으로 선정될 수 없음
		업무 집행 조합 원의 잔여 자산 인수	• 가치평가 결과를 조합원총회에서 승인 • 총회를 통해 잔여자산평가 금액 이상으로 GP인수 (가치평가 승인 후 제3자가 잔여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평가액 이상으로 인수하여야 하나, 총회 승인 대상은 아님) • GP가 잔여자산 인수 시, 추가배분 안건 상정 권고 - 추가배분 안건 및 요건 참조	• 업무집행조합원 인수 시 총회 동의 필요 (규정 제6조 제5항 참고) • 평가액 승인 이후 즉시 GP 매입
	최종배분		• 규약상 우선손실충당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분액 계산 • 성과보수 계산은 조합규약 뒤에 첨부된 '성과보수 산정예시' 등에 따라 산정 • 총회를 거쳐 최종 배분 승인	• 현금배분이 원칙
	청산 회계감사		• 잔여자산이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상 모든 계정값 "0"	• 감사 기준일은 최종배분일
청산총회 직후	청산총회		• (의안예시) - 제1호 : 청산 재무제표 승인 - 제2호 : 청산 결의 - 제3호 : 청산 후 추가 배분	• 반드시 청산기한 내 실시하며, 불가능한 경우 기간연장 총회 필요
	조합청산 보고 및 고유번호증 말소		• 감독기관 및 관할 세무서	

출처 :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방안

●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 벤처투자조합 정의

-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주체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기술지주회사도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0.>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벤처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질·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관련 법령

<표 3-14> 벤처투자조합 관련 법령

법령	조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5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1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8조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성 및 등록

- 벤처투자조합 요건

<표 3-15> 벤처투자조합 결성 요건

항목	요건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출자금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액은 5억원 이상)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출자금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 최초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
출자 1좌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수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요건
 - » 창업기업·벤처기업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정관·사업계획서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
 - » 결성하고자 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할 것
 - » 결성하고자 하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창업기획자 본인의 자본금 등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일 것
 - »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서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일 것
-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신청
 - 벤처투자조합정보시스템(VICS) 설치 : <http://install.kvica.or.kr>
 - 관할 세무서에서 조합 고유번호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고유번호증 발급 3개월 이내 조합 등록 완료 필수(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고유번호증은 제출 불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
 - 벤처투자조합정보시스템(VICS)을 활용하여 결성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조합 등록신청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 필요서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 업무지원 - 조합 등록/변경 신청 메뉴를 참고하여 준비

Tip. 벤처투자조합 등록 이전의 결성계획 제출 절차 폐지

- 2023년 12월 21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제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결성계획 제출·승인 절차가 폐지되어 결성계획 절차 없이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음. 따라서 국세청을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시,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성계획 승인 공문을 제출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GP의 정부 허가·인가·등록증을 제출하여 발급신청을 진행함 (예시: 창업기획자의 경우 창업기획자 등록증 제출 필요)
- 등록제도 간소화 이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토를 희망하는 경우 결성총회 7일 전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신청하면 됨

● 벤처투자조합 운영

- 조합 운영 관련 주의사항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초기창업 투자 의무 준수
(※출처: 2023년 3월 2일 배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관련 주요 Q&A')
 - » 벤처투자조합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대비 초기창업기업 투자금액의 비율이 20% 이상
 - * '출자금액'은 투자 의무비율 판단 시점의 조합 출자금 총액
 -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총 출자금액 대비 4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사용
 - » 초기창업기업 투자로 인정되는 금액

내 용
1. 비상장*된 초기창업기업이 신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인수 금액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간주)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2.비상장된 초기창업기업이 담보 없이 신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인수금액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
3. 비상장된 초기창업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금액
4. 초기창업기업의 기술개발·문화콘텐츠 사업 등 지분인수(프로젝트 투자)
5. 비상장된 초기창업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그림 3-15] 창업기획자가 GP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 판단 사례

< 창업기획자가 GP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 판단 사례 ① >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자금액	업무집행조합원	전체 투자금액	초기창업기업 투자금액
벤처투자조합 A	1,500	창업기획자 甲	1,100	500

* 甲은 A 이외에 운용 중인 조합이 없음

☞ A의 투자의무비율은 33.3%이며,

☞ 甲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A)의 총 출자금액 대비 투자의무 비율도 33.3%이므로 A는 투자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창업기획자가 GP인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 이행 판단 사례 ② >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자금액	업무집행조합원	전체 투자금액	초기창업기업 투자금액
벤처투자조합 B	1,000	창업기획자 乙	850	300
개인투자조합 C	800		700	600
벤처투자조합 D	2,200		1,200	1,000

* 乙은 B·C·D 이외에 운용 중인 조합이 없음

☞ B, C, D의 투자의무비율은 각각 30.0%, 75.0%, 45.5%이며,

☞ 乙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B·D)의 총 출자금액 대비 투자의무 비율도 40.6%이므로 B와 D 모두 투자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 C도 마찬가지로 투자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 벤처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제한 규정
 - » 동일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합계의 20% 이하, 각 벤처투자조합의 20% 이하로만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규정(단, 법령 상 예외 규정 존재)
 - » GP, GP의 특수관계인, GP의 주요주주, GP의 계열회사,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게 조합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소유 주식 등을 매입하는 행위
 - » 벤처투자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 » 일반·무도 유흥업, 주점업 등의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 금융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벤처투자조합 보고 의무

» 보고 의무 내용

보고	기간	내용
정기공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운영현황
수시공시	매월 말일까지 공시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결산보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서에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보고 방법: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서 전자보고

● 벤처투자조합 해산 및 청산

- 해산 사유(「벤처투자법」 제 56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 조합 존속기간의 만료
-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합이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 해산 및 청산 절차

- 조합 해산계획을 수립 후 해산일을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로 하여 해산감사를 진행함
- 해산 회계감사 후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 재무제표 승인, 원금 및 수익금 배분, 조합 청산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GP)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나 개별 규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선정할 수도 있음

- 청산인은 청산총회 전까지 매각되지 않은 조합 잔여 자산을 처분하며, 처분 후 규약에 따라 성과보수 산정·최종배분액 산출·청산 회계감사 등을 진행 후 이를 청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여 처리함. 유의할 점은 청산회계감사 시 조합의 잔여자산이 없으므로 재무상태표 상 모든 계정값은 “0”이 되어야 함
- 청산총회가 마무리되면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서 하기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조합 등록 말소 신청을 진행함.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말소 승인 통보를 받으면 벤처투자조합의 청산이 완료되며,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벤처투자조합 고유번호증 말소 신청까지 완료하면 됨

<표 3-16> 벤처투자조합 해산 및 청산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해산	• 공문 • 해산계획서 • 해산총회의사록 •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해산배분 내역 증빙서류(해산계획 신청일자 전까지 배분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조합원명부
청산	• 공문 • 청산결과보고서 • 청산총회의사록 • 의결서(또는 서면결의서) • 청산감사보고서(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 청산배분 내역 증빙서류 * 해산과 청산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 청산관련 신청서류와 해산계획서 함께 제출

출처 : 2024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벤처투자조합 통합 매뉴얼’

04 수익사업 모델

가. 기술지주회사의 수익모델

● 기술지주회사의 수익모델 개요

-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그 업무 범위가 제한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수익모델을 설정하게 됨
- 해당 법령상의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따른 수익모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7> 기술지주회사 업무 범위 및 수익모델

업무 범위	수익모델
기술사업화(자회사 설립/경영 관리)	배당, 지분매각 등 자회사 투자회수 수익
창업보육센터, 실험실 공장, 기업 및 연구소 등과의 상호 협력	수수료 및 다른 업무와 연계된 수익
기술이전 (기술지주회사 또는 해당 연구기관 보유 기술)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펀드(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자조합도 가능)	펀드 관리보수, 투자회수금 배분 및 성과보수 등

출처 : 집필진 작성

-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수익모델을 실제 업무 수행과 연계할 때는 고유 수익모델인 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따른 투자회수 모델과 공공사업, 컨설팅, 기타 수익사업(투자조합 결성/운용 등)의 추가 수익모델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음

나. 공공사업

● 공공사업 개요

- 기술지주회사가 수행하는 공공사업은, 해당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기술지주회사의 다른 업무의 지원을 통한 수익창출에 활용되는 간접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기술사업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기획, 개발, 운영하거나, 기술사업화 관련 공공사업, 대학 및 공공기관의 사업을 위탁 운영하거나 창업보육 등이 이에 해당
-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3-18> 기술지주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사업 예시

지원부처(기관)	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TIPS) 프로그램

출처 : 집필진 작성

● 기타 사업화 지원사업

- 여러 정부 부처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공사업을 찾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사업화 성과뿐만 아니라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다. 컨설팅사업

● 컨설팅사업 개요

- 기술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자회사 또는 산업교육기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음
 - »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자문, 기업 공개, 자원 조달 지원 등의 업무
 - » 자회사의 홍보, 교육/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 »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산업기술단지 및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 »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중개 업무
 - »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회사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

● 컨설팅사업 환경 및 실제

- 기술지주회사가 컨설팅 수수료를 통한 수익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대학기술지주회사의 보유 자본의 규모와 현재 업무 수행 환경을 보면 초기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기보다는 자회사 혹은 투자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컨설팅 사업을 통한 수입 창출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음
- 소속 대학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이 가장 현실적인 컨설팅 사업 수익모델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선결 과제가 있음
 -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간 기술이전 관련 역할 분담 및 프로세스 정리
 -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간 적절한 수수료 설정 및 계약 체결
- 대학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는 동일한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이라는 각기 다른 사업화를 추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게 기술이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정도로 한정적임
- 다음과 같이 컨설팅 사업은 기술지주회사의 주 수익모델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음

<표 3-19> 기술지주회사 컨설팅사업의 한계

구분	내용
자회사 대상 업무	• 자회사 창업 초기에 해당 수요가 많은데, 이때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가 적은 상황이 대부분이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기술지주회사 또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수입을 거두기보다는 자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자회사 성장에 사용하는 것이 수입 증대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쉬움 •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창업보육센터 등 상호 협력 업무	• 각 주체와의 구체적인 업무 협력점을 찾아내기 힘들어 실질적인 수입 창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기술이전 중개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 업무를 받아오기가 쉽지 않음 •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계약 상황에 따라 수입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업무 수행에 비해 그 대가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회사 대상 업무	• 자회사 대상 업무가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 • 다른 산업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술지주회사와 우선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이기에 업무 수행의 기회가 적음

출처 : 집필진 작성

라. 기타 수익사업

● 투자조합(펀드) 운용

- 기술지주회사는 2016년 「산학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펀드를 결성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됨. 기본적으로 기술지주회사는 개인투자조합 형태의 펀드만 결성할 수 있으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하게 되면 벤처투자조합 형태의 펀드도 결성 가능함. 기술지주회사는 펀드 운용을 통해 자회사 및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화 성과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입을 거둘 수 있음

<표 3-20> 펀드 운용에 따른 수입

구분	내용
관리 보수	• 펀드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펀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운용자산이 클수록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음 • 펀드 결성 총액에 따라서 기본 산정 요율이 달라짐(결성총액 300억원 이하는 2.5%, 300억원 초과하는 2% 등) • 펀드 운용 기간 및 성과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조합의 성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출자약정액의 연 2.5%, 이후부터 조합 해산하는 날까지는 투자잔액의 연 2.5%)
배분 수입	• 펀드 투자회수 금액을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으로 회수 성과가 발생할 때마다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
성과 보수	• 펀드 투자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보수로 펀드 성과에 큰 영향을 받음. 보통 결성 당시 설정한 기준수익율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2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기타	• 한국모태펀드 등의 자펀드를 결성할 때, 특정 기준을 달성할 경우, 추가 관리보수를 수령할 수도 있음

출처 :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 기술지주회사의 고유 수익모델인 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수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임. 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면서 받는 관리 보수는 투자회수에 따른 수입과 더불어 기술지주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펀드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수익모델은 아님. 해당 수익모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 수행 및 인력 확보와 관련된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 기술지주회사가 본계정(자본금) 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소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펀드를 운용할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사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빠른 투자 자본 소진과 그에 따른 조직 운영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는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보다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어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관리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펀드를 결성하고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 투자회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초기에는 작은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면서 성과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펀드 결성 규모 및 수를 확대해 가는 것이 좋음
- 일정 수준의 투자 실적을 갖춘 이후에는 운용사의 출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책펀드(한국모태펀드, 성장금융 등)를 수주하고 다수의 기관 출자자들을 모집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 펀드 운용 주체에 따라 결성 가능한 투자조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현행법상 기술지주회사는 창업기획자 등록을 통해 결성 가능한 펀드를 확대할 수 있음

[그림 3-16] 운용사별 결성가능한 투자조합 형태

운용사 조합명칭	창업투자회사 (VC)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창업벤처전문 PEF 운용사	LLC형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일반 법인
벤처(창업)투자조합	○	○		○	○	
개인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	◎
창업벤처전문PEF		○	○	○	○	○
농식품투자조합	○	○		○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Co-GP인 경우 가능

출처 : 집필진 작성

●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 기술지주회사가 결성하고 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펀드는 교육부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대학창업펀드로 불리는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임
- 대학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교육계정 출자사업은 초기에는 기술지주회사만 지원할 수 있는 펀드로 기획되어 펀드 운용 이력이 없었던 기술지주회사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펀드를 수주하여 운용할 수 있었음
- 현재는 출자 대상이 다소 확대되었지만, 모태펀드 출자 비율이 75%로 일반적인 펀드가 60%인 것에 비해 출자자 모집에 대한 부담이 적고, 존속기간도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기준수익률도 0%이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펀드임

- 개인투자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창업기획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21>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출자 규모	120억원 (결성총액 160억원) - 운용사별로 출자금액은 최소 7.5억원 최대 37.5억원임
출자 대상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과학기술원에서 만든 기술지주회사 성격의 전문회사만 해당), 창업기획자
모태펀드 출자 비율	75% 이내
업무집행 조합원 출자 비율	약정총액의 15% 이상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 운용사 관련 기관 출자금 합산. 단, GP는 약정총액의 5% 이상 출자하며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
주목적 투자 대상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되, 대학창업기업*에 75% 이상 투자 단, 학생창업기업**에 투자 총액의 50% 이상 투자 * 대학창업기업은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초 투자 당시 대학생 및 대학원생(5년 이내 졸업자 포함)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창업 후 6개월 미만 기업의 경우 창업시점부터 등기)되어 있고 해당 임원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이하 "창업자") ② 최초 투자 당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대학기술지주 회사의 자회사 ** 대학창업기업 중 ① 유형 기업. 단, 해당 임원이 대학교 교직원인 경우는 제외
기준수익률	0%
존속기간	10년 이내
관리보수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 조합약정총액× 2.5% 결성일로부터 3년 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 2.5%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출처 : 한국벤처투자

-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외에도 중기부계정, 과기정통계정, 특허계정 등이 기술지주회사가 수행하기 적합한 펀드들인데, 해당 출자사업의 방향성 및 추진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펀드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출자자 모집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출자사업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기본적으로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역량과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음

<표 3-22>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1차 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창업 지원
	학생/교원 창업 및 창업 교육/지원 관련 실적 등
	투자집행
	운용사/운용인력의 투자 역량
	사후관리, 밸류업
	후속투자 유치 역량, 사후관리 역량
	수익률
	운용사/운용인력의 투자 회수(EXIT) 성과
	엑셀러레이팅
	운용사의 엑셀러레이팅 역량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표 3-22> 한국모태펀드 교육계정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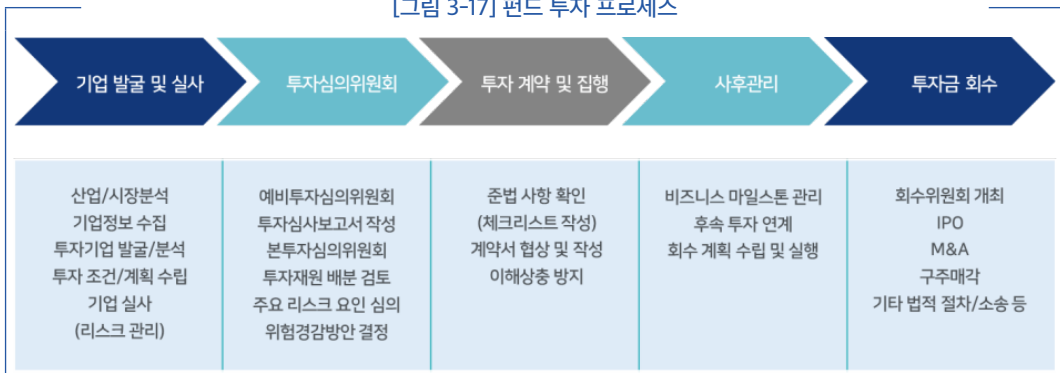
분류		주요 평가항목
2차 심사 평가항목	창업 지원	학생/교원 창업지원 인프라, 지원 사업, 보육시스템 및 보육 사례
	펀드결성 가능성	출자자 적정성, 민간 출자자 모집 역량 등
	투자역량	제안펀드 투자 전략 및 경험, 운용사 및 운용인력 투자실적 등
	사후관리, 밸류업	사후관리 프로세스, 후속투자 유치 사례 및 역량, 밸류업 사례
	수익률	수익창출 사례, 회수 전략 등

출처 : 한국벤처투자

● 펀드 운용 전략

- 성공적인 펀드 운용은 우수한 창업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로 회수하여 출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운영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할 것임
- 펀드를 활용한 투자와 자본금을 활용한 투자와의 가장 큰 다른 점은 회수 기한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임. 보통의 펀드 존속기간은 8년 내외이고 투자기간은 결성 후 3~4년이라 길게는 7년에서 짧게는 4년 안에 투자 후 회수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펀드 투자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회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후속 투자유치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업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을 살펴볼 때는 해당 기업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투자시장의 트렌드와 시장의 성장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시장의 방향성과 트렌드를 잘 파악하면서, 개별 기업의 사업성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함
- 기본적인 회수 전략 및 계획을 바탕으로 적절한 투자회수를 통해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임
- 타인의 자본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부 자원만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자회사 설립에 비해 보다 강화된 투자 및 사후 관리 규정을 요구함
- 일반적인 투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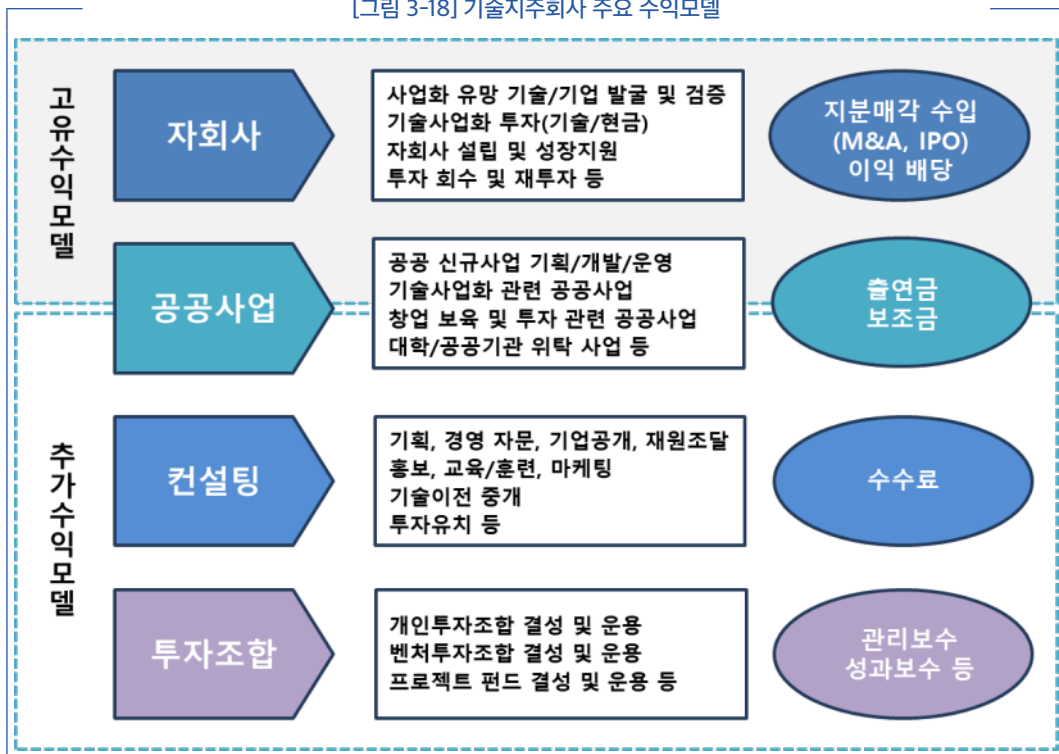
[그림 3-17] 펀드 투자 프로세스



출처 : 집필진 작성

- 투자하기 적합하다 판단되는 기업을 발굴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 조건을 확정하고 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
 - 투자조합 운용사의 선택에 따라 예비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본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납입함
 - 투자 이후 투자 시점에 논의되었던 비즈니스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관리하고, 후속 투자유치를 연계하면서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투자회수를 하고자 할 때는 회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 의결 및 실행 필요
- 기술지주회사 보유 특허 기술이전
- 기술지주회사 보유 특허의 기술이전을 통한 수입도 하나의 수익모델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해당 특허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회사 현물출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자회사로 출자되지 않고 남아 있는 특허의 경우는 사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해당 특허가 기술이전 되더라도 관련 법률과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액이 발명자 보상 및 기여자 보상으로 지급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낮아 주요 수익모델로 다루기에는 부족하다 판단됨

[그림 3-18] 기술지주회사 주요 수익모델



출처 : 집필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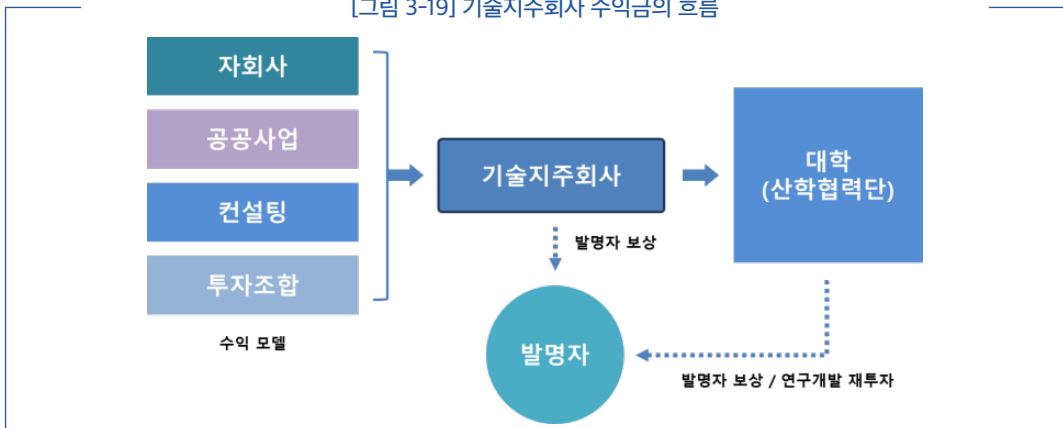
05 수익금 처리 및 보상

가. 수익금 처리

● 수익금 처리 개요

- 기술지주회사의 주요 설립목적이 기술사업화를 통해 대학 재정에 기여하고, 교육, 연구 및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는 만큼 기술지주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잘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 관리 및 기타 주요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단 및 대학에 환원하여 교육 및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명자 보상을 통한 적절한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수익금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주회사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들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기여자 보상제도(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기술사업화 성과 증대에 중요한 요소임
- 기술지주회사가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업무 성격이 창업기획자나 창업투자회사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별도의 회계 처리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림 3-19]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의 흐름



출처 : 집필진 작성

● 수익금 종류에 따른 유의사항

- 자회사 주식 매각에 따른 수익: 자회사 주식 매각에 따른 수익은 비상장주식 매각과 상장주식 매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보통 구주매각 및 M&A에 따른 매각이 비상장주식 매각에 해당하고, IPO에 따른 매각이 상장주식 매각에 해당함. 자회사 주식 매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함

<표 3-23> 자회사 주식 매각 수익의 종류와 고려 사항

구분		고려 사항
비상장 주식	구주매각	• 비상장주식 매각 수입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
	M&A에 따른 매각	• 증권거래세: 0.35% (신고기한: 거래일이 1월~6월인 경우에는 8월 31일, 거래일이 7월~12월인 경우 익년도 2월말일까지)
상장 주식	IPO에 따른 매각	• 상장법인 양도세(법인세) 비과세(대주주 제외) • 증권거래세: 0.18%

출처 : 집필진 작성

- 자회사 배당 수익: 과거에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지주회사를 위한 고율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켜 주었으나,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용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조문이 삭제되었고,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으로 일원화되었음. 다만,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는 더 좋아짐
- 다만,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던 혜택이 사라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음

<표 3-24> 출자비율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2

Tip. 익금불산입이란?

- 익금: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뚜렷한 익금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 공공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이나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 등이 기술지주회사가 수행하기에 적절한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인데, 해당 사업 수행에 따른 직접 사업비 및 인건비 활용 비율, 매칭 자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유망한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화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기술지주회사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수행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에 부담이 있고, 기술지주회사의 다른 수익사업들과의 성격이 달라 수입 및 지출 현황 파악 및 회계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공공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함.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조합 운용에 따른 수입과 잘 구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컨설팅 사업 수익
 -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기술지주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직접적인 기술사업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의 발명자 보상이나 기여자 보상에서 자유로운 수익이라 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의 다른 수익모델이 투자 후 수입 발생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컨설팅 사업 수익은 앞서 기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주 수익모델이 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기술지주회사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조합 운용 수익
 - 2016년 「산학협력법」 개정과 함께 기술지주회사가 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조합 운영에 따른 수익은 자회사 설립/관리라는 고유 수익모델에 이어 중요한 수익모델로 주목받게 됨
 - 컨설팅 사업 수익과 마찬가지로 발명자 보상 및 기여자 보상의 이슈가 없음
 - 투자조합은 회사와는 다른 회계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기술지주회사에 발생한 수입은 어떠한 용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임
 - 지속적인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실적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운용인력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일정 부분 처리해야 할 것임
-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된 수익금의 처리
 - 「산학협력법」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동법 제27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
 - * 「산학협력법」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6조 참고
 - 배당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
 - 산학협력단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이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배당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당해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을 목적으로 하여 수령한 배당금 전액을 손금 산입이 가능
 -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은 「산학협력법」 또는 정관상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을 포함
 - 손금계상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손금산입액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
- 수익금의 활용
 - 기술지주회사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됨
 - 기술지주회사 설립 초기에는 자회사 설립 및 기타 다른 업무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거의 없고, 투자 및 운영비 명목으로의 지출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 이 시기에 기술지주회사에서 얻은 수익은 기술지주회사의 고유 사업 추진, 조직 운영 경비, 그리고 투자를 위한 준비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임
- 기술지주회사의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게 되면 산학협력단에 대한 배당이나 학교로의 기부를 검토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 성공을 위해서는 유망기술을 기반으로 자회사를 꾸준히 설립해 가는 것이 중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배당이나 학교로의 기부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성공 사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이나 기부를 통해 대학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음
 - 대학 교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교육과 연구에 있는 만큼, 창업한 교원은 소속 학과 및 대학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기부가 해당 교원의 학과 및 대학에 대한 부채의식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다는 의미도 있음
- 기술지주회사의 수익은 발명자 보상과 기여자 보상금으로 활용되어 유망한 창업 아이템의 지속적인 공급과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림 3-20] 기술지주회사 수익금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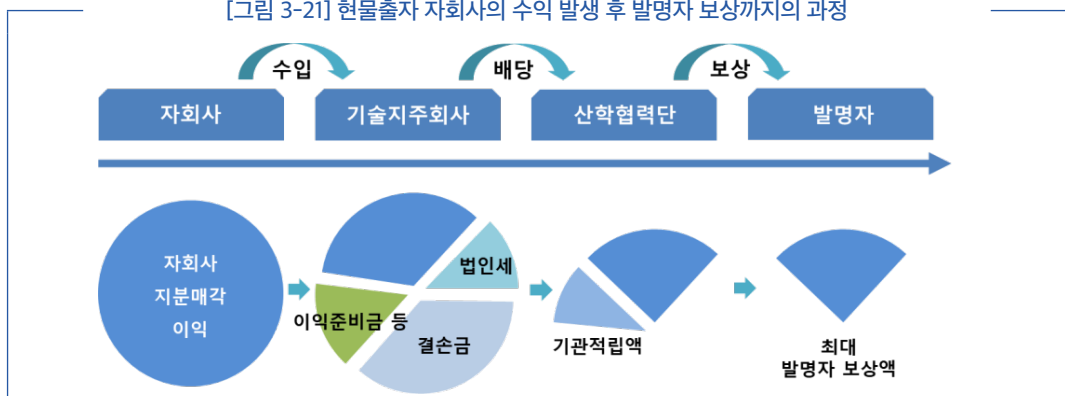
출처 : 집필진 작성

나. 발명자 보상

- 발명자 보상제도
 - 발명자 보상은 기술지주회사로 출자된 기술의 발명자에게 관련 법규와 계약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 기술지주회사로 유입된 자금은 발명자 보상 등을 위해서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야 함.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익 배당이 있고 필요시 유무상의 감자를 통한 배당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배당의 방법을 통해서 정당한 발명자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보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발명자 보상 체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 「발명진흥법」 및 각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학 교직원(종업원)의 발명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대학(사용자)에서 승계하는 것이 아닌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고 소유하며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발명자의 연구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업화 유망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발명자 보상 제도가 필요.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 등이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발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산학협력법」에는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4조에는 기술이전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별로 기술이전 수입에 대한 자체 발명자 및 기여자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출자된 기술의 사업화 성과에도 유사한 수준의 발명자 및 기여자 보상제도가 요구된다 할 수 있음
- 현물출자의 일반적인 사업화는 대학 교직원의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받아 특허화 한 후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출자된 특허를 다시 자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일반적인 자회사 지배구조는 산학협력단 -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 순으로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수익금은 이의 역방향으로 이동
- 현행법상 기술지주회사에서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기술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을 통해서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야 함
- 기술지주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보통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은 「상법」상의 배당을 통해서 산학협력단에 이전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에 배당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주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상법」 제462조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이란 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금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상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상법」 시행령 제19조)
- 따라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얻은 수익에서 기술지주회사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인 결손금을 보전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배당가능금액에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산학협력단에 배당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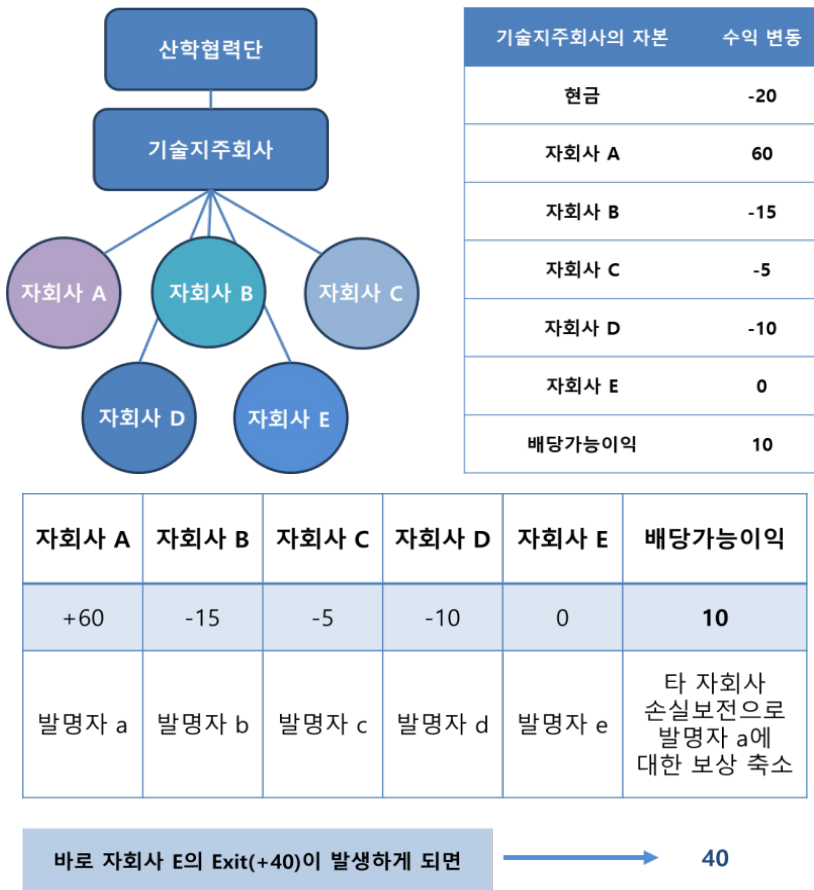
[그림 3-21] 현물출자 자회사의 수익 발생 후 발명자 보상까지의 과정



출처 : 집필진 작성

- 「상법」상 기술지주회사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을 한 후에 산학협력단에 배당이 가능한 데, 결손금에는 단순한 경영에 따른 결손금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회사의 손실이 포함됨
-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술지주회사의 결손금을 평가하면 자회사의 손실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비율만큼 기술지주회사의 손실로 계산됨
- 기술지주회사에서 설립하는 자회사 중 극히 일부만 성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로부터 출자되어 설립된 자회사들은 대부분 손실을 기록할 것이고, 그 손실액은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될 것임

[그림 3-22]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발명자 보상 불공정 이슈



발명자 a와 발명자 e간의 보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
Exit이 발생할 때마다 당시 결손금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출처 : 집필진 작성

- 자회사 설립/관리가 기술지주회사의 고유 수익모델이고 이외에 확실한 수익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따른 결손도 누적될 것임
-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출자된 기술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발명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산학협력단에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여야 발명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음

- 기술지주회사에서 특정 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누적된 결손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수익보다 결손금이 큰 상황이라면 산학협력단에 제공될 배당이 없을 것임
- 배당을 통해서 발명자에게 보상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결손금의 규모에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에 발생한 수익 대비 작은 규모의 보상이 될 수도 있음
- 이러한 구조는 한 개 이상의 자회사가 순차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발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회사 A의 주식이 먼저 매각되어 기술지주회사의 결손금이 보전되고, 그 이후 자회사 B의 주식이 매각된다면 자회사 B에서 발생한 수익은 결손금의 보전 없이 기술지주회사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배당이 가능할 것임. 자회사 A와 자회사 B의 매각 순서에 따라서 해당 기술의 발명자 간의 보상에 대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산학협력단과 발명자 간에 발명자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결손 문제로 자회사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법」 및 「기술이전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발명진흥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은 자신의 발명을 기준으로 기여율을 판단할 뿐 사용자의 다른 사업군을 포괄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기술이전을 선택하느냐, 자회사 창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발명자 보상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술사업화 추진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발명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술지주회사의 감자 혹은 산학협력단에 기부를 하는 방법을 통한 발명자 보상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감자의 경우 채권자 및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인 주주 형태가 아니면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님. 기부는 법인세 회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발명자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음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에 따르는 발명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발명자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법」에 근거를 만드는 것임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14년 12월 지식재산연구원 발행물을 통해 「산학협력법」에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발명자 보상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음

<표 3-25>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발명보상 할 수 있는 「산학협력법」 개정안

현행 산학협력법	개정 방향 검토
기술지주회사의 배당 방법에 대해서는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술지주회사의 배당방법으로 다음 조문을 신설(이익배당의 방법) ① 기술지주회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술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산학협력단을 대신하여 법 제32조 제1항제4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가 제1항의 보상을 지급한 경우 보상의 책임을 면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익배당액에서 제1항의 보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의 채권자는 제1항의 보상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출처 :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4호(2014년 12월)

- 대학의 기술사업화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도 상기 발명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면서 이미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대학마다 사업화를 추진하는 방향성 및 상황이 다를뿐더러, 개별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법은 아닐 것임

● 발명자 보상 방법

- 기술지주회사에서 자회사 성공 사례가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산학협력단에 배당하는 방법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명자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개별 대학들은 발명자 보상 관련 법령의 개정을 기대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발명자 보상 방법을 찾게 됨
- 발명자 보상 사례 검토
 -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자 보상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에서 직접 보상을 실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선택
 - 기술지주회사에서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의 발명자 보상 방식은 결국 ‘증여’의 방식임
 - 법적으로 보장되는 요율 및 각 대학의 발명자 보상 제도를 고려하여 대학마다 나름대로 발명자 보상을 시행하고 있음
 - » 가톨릭대학교기술지주(주)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발명자 간의 3자 계약을 통해서 발명자 보상을 기술지주회사에서 지급.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발명자 보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을 대신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발명자 보상을 실시한다는 조항과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에 별도의 발명자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감. 발명자 보상 시기는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자회사가 설립되자마자 시행
 - » 연세대학교기술지주(주)의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 규정을 통해서 금액 구간별 차등 비율을 적용하여 발명자에게 증여의 방식으로 발명자 보상을 처리. 발명자 보상 시기는 현금 수익의 경우는 수익발생 후 30일 이내로, 지분(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발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발명자 보상에 따른 증여세는 발명자가 부담하되, 증여세를 고려하여 발명자 보상 비율을 결정할 수도 있음
 - » 연합형기술지주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발명자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체계이므로 주주배당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면, 해당 산학협력단이 발명자에게 보상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발명자보상을 진행해야함
- 발명자 보상 관련 기타 고려 사항
 - 기술지주회사에서의 보상 지급 방식이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고려한 보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업가치가 낮은 설립 초기에 발명자 보상을 집행하는 것이 발명자에게 유리함
 - 기술지주회사에서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던 때가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면서 세 부담이 현저히 작았던 시기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는 기술지주회사의 보상은 발명자 입장에서 부담되는 방식이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2017년부터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이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세로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직접 보상 방식이 오히려 낮은 세율로 인한 장점을 가지게 됨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대부분의 자회사는 발명자인 창업교원이 대표이사로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가 필요한 회사들이 많음. 대표이사의 낮은 지분율은 국내 투자유치 환경에서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 초기에 발명자 보상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창업기업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창업팀의 지분율이 운영사 투자이후 협약 시까지 60% 이상이 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도 적극적인 발명자 보상이 필요할 수 있음
- 발명자 보상 이슈가 없는 자회사 설립
 - 현금 출자-기술이전을 통한 자회사 설립
 - 최근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가 최소 지분 요건을 갖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발명자인 대표이사가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형태로, 합작설립 혹은 지분편입 형태의 자회사라 할 수 있음. 대표이사의 지분율 확보와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자회사 설립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기술지주회사가 현금을 출자하면서 지분을 확보하고, 기술은 산학협력단에서 자회사로 바로 이전하는 구조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기술지주회사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을 직접 수령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발명자인 대표이사가 본인이 발명한 기술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회사로 이전받으면서 발명자 보상을 받는 구조는 회사의 자금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옮겨가는 모양새를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이전 대가를 산정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기여자 보상

- 기술지주회사의 기여자 보상
 -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그 성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지주회사에서도 창업 사업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기술지주회사의 기여자 보상이라 할 수 있음
 - 기여자 보상은 발명자 보상과 같은 논리로 사업화 성과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
 - 기술사업화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검증한 이후, 회사를 설립/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필요가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추가된 수익모델인 투자조합의 운용은 이미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높은 연봉 수준을 가진 업무 영역임
 -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술지주회사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갖추기에는 기술사업화의 성공 리스크가 크고, 대학의 자원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당 전문성을 키워가며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여자 보상 제도의 의의가 있음
- 투자조합의 운용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개별 대학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여자 보상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발명자 보상과도 유사하게, 기술의 사업화가 그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각 단계별로 기여자 및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여자 보상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
- 기술지주회사의 기여자 보상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자된 특허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컨설팅, 투자조합 운용에 따른 보상 등 기술지주회사의 모든 수익모델과 연계하여 설계할 수 있음
- 가장 기본적인 기여자 보상으로 자회사 투자회수에 대한 보상이 있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지분매각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여자 보상으로 할당하는 방식
- 공공사업이나 컨설팅의 경우에는 기술지주회사에 직접적인 재정 기여가 있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여자 보상으로 할당할 수 있음
- 투자조합 운용에 따른 보상은 펀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기업의 발굴,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모태펀드 및 성장금융 등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조합 운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다음의 표에서 기여자 보상 항목 및 보상 총액 산정 기준 예시를 제시하였는데, 기술지주회사 별로 각자 나름의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총액을 결정하면 될 것임

<표 3-26> 기여자 보상 항목 및 총액 산정 예시

구분	항목	보상 총액 산정 예시
1	자회사 투자회수금	순이익(매각 수입 - 제비용) x 10% 이내
2	공공사업비	간접비 x 20% 이내
3	컨설팅 사업 수수료	수수료 수입액 x 직원기여도 x 10%
4	투자조합 보수	각종 보수 x 20% 이내

출처 : 집필진 작성

- 기여자 보상금 총액을 결정한 후에는 기여자 개인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할 것임. 직원 개인에 대한 해당연도 평가 등급과 성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성과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업무도 있기 때문에 보상 항목별로 회사 전 직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과 각 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회사 전체의 동기부여와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필요함
- 기여자 보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직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서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사업화 및 투자 성과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Tip. 개인 기여자 보상금 산정 예시

- 한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2023년 자회사 투자회수를 통해서 40억원, 공공사업 간접비 수입으로 5억원, 컨설팅 사업을 통한 수수료로 5억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펀드 운용을 통해서도 20억원의 수입을 얻었음. 한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정기 인사위원회는 투자 재원 확보 및 직원 복지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의 자금을 사내에 유보시키기로 하면서 규정에서 정한 최대 요율의 60%를 일괄 적용하여 기여자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 한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직원 A는 자회사 투자 회수 1건의 직접기여자로 10억원의 투자 회수 건을 담당하였고, 회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핵심운용인력이며, 4억원의 수입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음.
- 한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보상금 규정에는 전 직원에게 배분하는 비율이 70%, 직접기여자에게 보상하는 비율이 30%로 규정되어 있음. 전 직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평가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배분을 하고, 직접기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해당 업무의 직접적인 기여자들에게만 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한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A는 정기 인사위원회에서의 연차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할 때 직원 A의 기여자 보상금을 단순화해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기여자 보상 총액 산정: 총 5억원

- ① (자회사 투자 회수금 40억원 - 제비용 10억원) $\times$ 10% $\times$ 60% = 1.8억원
- ② 공공사업 간접비 수입 5억 $\times$ 20% $\times$ 60% = 0.6억원
- ③ 컨설팅 사업 수수료 수입 5억원 $\times$ 직원기여도(40%) $\times$ 10% = 0.2억원
- ④ 투자조합 보수 20억원 $\times$ 20% $\times$ 60% = 2.4억원

2. 개인 기여자 보상금 결정: 직원 A의 기여자 보상금 총 0.679억원

- ① 전 직원 배분액 3.5억원 중 직원 A의 수령액 = 0.4억원
 - 상위등급 3인 0.4억원 (직원 A는 여기에 해당)
 - 중간등급 4인 0.35억원
 - 하위등급 3인 0.3억원
- ② 직접기여자 배분액 1.5억원 중 직원 A의 수령액 = 0.279억원
 - 자회사 투자 회수 직접 기여 $\rightarrow$ 1.8억원 $\times$ 0.3 $\times$ 0.25 = 0.135억원
 - 펀드 운용 수입 직접 기여 $\rightarrow$ 2.4억원 $\times$ 0.3 $\times$ 0.2 = 0.144억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

IV

부록

01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 및 각 단계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 (2025년 6월 기준)

구분	관련 법령	내용
설립주체 및 설립유형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1항	- 산학협력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 ※ 위의 기관은 타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립 가능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발기인은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는 단독,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공동으로 되어야 함
설립요건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2항	- 주식회사일 것 -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 산학협력단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경우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기술지주회사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전용공간을 갖출 것
업무 범위	산학협력법 제36조의2제4항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 등
기술지주회사 명칭	산학협력법 제36조의5, 상법 제19조	(단독형)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 주식회사임을 표시 (공동형)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 주식회사임을 표시
설립신청 절차 준수 여부	산학협력법 시행 규칙 제3조 및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설립목적, 출자내역 및 비율, 사업계획서, 임원의 이력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증빙 서류
	상법 제288조 ~ 제290조	발기인은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절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등)을 작성하여 기명(서명)날인 할 것
	상법 제292조	정관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
	산학협력법 제36조의7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지주회사 법인등기 단계

구분	관련 법령	내용
주금납입	상법 제295조	• 발기인은 주금을 납입할 주금납입은행을 지정하여 납입기일까지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고, 현물출자 목적재산을 인도 하여야 함
	상법 제318조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발급 의무
이사선임	상법 제296조, 제389조	•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
등기신청	상법 제317조	• 이사·감사·공증인의 조사·보고 및 감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 사업 개시일(등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 -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육부 설립허가서 사본, 정관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주주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 기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간까지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함
	법인세법 시행령 14조	•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설립 후 처음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4대보험	4대 보험 관련 법률	•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자회사 설립 및 기술지주회사 운영 단계

구분	관련 법령	내용
자회사 설립	산학협력법 제36조의3	• 자회사는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설립 •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음
	산학협력법 제36조의3	•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여야 함
	산학협력법 제36조의4③	•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음
	산학협력법 제36조의4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5조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설립(편입)시에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운영관련	산학협력법 제36조의4⑤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보증해서는 안 됨
	산학협력법 제36조의4⑥	•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주식을 소유하거나 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됨
보고의무	산학협력법 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 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용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용

0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16.] [교육부고시 제2025-20호, 2025. 7. 10.,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6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① 삭제

②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삭제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 또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1부
 - 가. 설립목적
 - 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 삭제

제4조의2(변경인가의 신청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서 1부
 - 가. 변경목적

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2호 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1부

5.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충족여부 확인

2. 법 제36조의8 제1항 각호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8 제2항 각호의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5. 법 제36조의2제6항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제5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자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신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관계자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각 호 사항에 대해 지주회사·자회사(설립 예정 기관 포함) 등의 관계자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7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삭제

제8조(이의신청) 삭제

제9조(설립·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
2. 삭제
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결과 보고) ① 삭제

② 법 제36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부칙 <제2016-107호, 201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0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일반사항

● I. 설립기획 단계

NO	체크리스트	확인
1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수요(기술자원)가 있는가? •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보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술의 권리관계(산학협력단 보유)를 검토 * 2023년 3월 28일 시행된 「산학협력법」시행령 제44조 개정으로, 타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도 자회사로의 편입이 가능	
2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이상의 기반(현금, 추진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가능성,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및 전문인력 확보 등 기본적인 경영 기반의 구축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	
3	기술지주회사 설립 유형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가? • 설립 유형(단독설립, 공동설립, 연합설립)별로 내부 설립 프로세스와 추진전략 및 운영 방향이 상이하므로 각 특성(장·단점)에 대한 검토 필요	
4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이에 기반한 설립의 기본방안을 내부에서 승인받았는가? •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설립기획 TFT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최적의 설립모델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부(공동연합 설립 경우는 참여기관 간)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 II. 설립준비 단계

NO	체크리스트	확인
5	설립준비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인하였는가?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발족(참여기관 업무협약) → CEO선임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인력확보 및 조직정비 → 출자기술 최종 선정 및 가치평가 의뢰 → 발명자 보상규정 정비 → 현물출자용 가치평가서 발급 및 법원 인가 * 출자기술 발굴에 앞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행정적 프로세스가 먼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기술에 대한 개별 사업화 검증과 공모(모집) 방식에 의한 자회사 후보기술 발굴의 병행이 가능	
6	공식적인 설립 추진위원회(의사결정 기구)를 적절하게 구성, 진행하고 있는가? • 설립 추진위원회는 산학협력단 및 대학본부의 관계부서장(보직 교수 등)을 포함하여 구성(공동 및 연합설립의 경우, 참여기관 간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 체결 필요),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일반적	

NO	체크리스트	확인
7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TFT(실무추진단)를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하는가? TFT(Task Force Team)는 대학의 특성과 교수·연구실의 연구방향과 성과를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인력을 포함하여 외부의 기술사업화, 금융, 회계법률 등의 전문가를 일부 포함하여 구성하고,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하고, 공식 설립 추진위원회를 보좌하며, 대학본부와 원활한 소통을 수행(공동 및 연합설립의 경우 참여 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및 설득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 포함)	
8	기술지주회사 임직원(대표이사 등) 선임에 대한 기준,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하였는가? 초기 설립 시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원칙과 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이며, 대외적인 활동과 함께 짧은 시간 내에 대학과의 긴밀한 교감을 이끌어내고, 조직의 안정화를 이뤄내는 역할을 수행(기술지주회사 임직원에 내부인력을 활용할 것인가, 외부전문가(공모, 초빙)를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설립준비 단계부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9	출자 대상기술에 대한 최종 선별 시, 시장성을 고려하였는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을 위해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기술사업화의 핵심(기술가치와 시장가치는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음) TFT는 객관적,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학협력단(대학본부)과 당해 발명자에게 사업화 타당성을 설명해야함. 또한 기술가치평가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해 제3의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경우, 그 결과물(보고서 등)을 기술가치평가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	
10	최종 선별된 출자기술에 대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 및 보상 규정을 정비 하였는가? - 출자대상기술의 권리관계(국가 R&D사업 주관기관, 연구를 지원한 기업, 공동 연구기관, 참여 연구원 및 타 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를 확인 - 출자대상기술의 발명자, 권리자(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동의서 및 현물출자에 따른 발명자 보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내부 규정 정비	
11	가치평가 받은 기술의 현물출자(변태설립사항)를 위해 관할지방법원(합의판사부)의 인가를 받는 절차에 확인하였는가? - 법원(합의판사부)에 대한 조사·보고가 1~2개월 정도 소요됨으로 출자용 기술가치평가서를 발급받는 즉시 법원에 보고(확인)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교육부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소요기간 단축가능 * 변태설립 인가에 대한 구비 서류 확인 : 발기설립 조사보고 및 인가신청서, 기술가치평가보고 및 확인서(감정서), 현물출자자산인도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정관사본, 기타 - 다만, 법원으로부터 출자하려는 기술가치평가 및 금액에 대한 승인을 받고 나면 14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하며,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발급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도 같이 제출해야 함 - 최근에는 교육부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승인이 까다로워 지면서 추가로 설립계획서 보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부로부터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함	

NO	체크리스트	확인
12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설립·운영과 관련된 지원사업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 등(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등)	

● III. 설립인가 단계

NO	체크리스트	확인
13	설립인가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인하였는가? • 발기인(조합) 구성 → 정관 작성 및 발기인 날인(필요시 공증) → 임원 취임승낙서 → 설립인가 신청서(설립·운영계획서, 첨부서류 구비) 작성 →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인가 심의 → 인가서 발급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은 보통 1년에 2회 접수 받음(상하반기 각1회)설립인가 신청 준비 시 사전에 신청 예정 기간 및 준비현황을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에 공유하여 일정을 논의	
14	발기인 및 발기인 조합의 구성에 있어 문제는 없는가? • 발기인 및 발기인조합(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은 회사설립을 위한 업무를 주도하여 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존재(복수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발기인으로 참여 가능)하는 것으로서,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발기인이 되는 것이 원칙(산학협력단장 개인이나 총장, 재단이사장, 발명자 등은 발기인이 될 수 없음)	
15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였는가? • 정관이란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한 문서로서 발기인이 기명날인(서명)한 뒤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정관으로서의 효력 발생 *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하면 효력 발생 즉, 공증 면제 •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16	설립인가신청서(설립·운영계획서, 구비서류)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작성하였는가? • 설립요건 검토사항 : 주식회사 여부, 임원 결격사유, 기술출자비율, 상시전담인력, 전용공간 구비 여부 등 • 설립계획서 상에 설립 초기(1단계) 자회사 수, 5개년 사업기간 자회사 설립 누적 수, 5개년 자회사 및 기술지주회사 매출 추정,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차별화된 사업전략(ex. OO펀드 조성 및 활용 등) 등을 기재	

● IV. 법인등기 단계

NO	체크리스트	확인
17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프로세스를 확인하였는가? • 설립인가서 발급(교육부) → 현물출자용 평가기술 변태설립 인가(법원) → 현물출자대상기술 소유권 이전(특허청) → 현금출자를 위한 주금납입 및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 설립등기 구비서류(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공증 → 관할 법원에 법인등기신청(설립인가서(교육부)와 현물출자 인가서를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확인 후 사업자등록 → 임직원 4대보험 신고 및 취업규칙 신고(고용노동부) → 현물출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설립 경과보고(교육부, 설립 후 30일 이내)	
18	현금 및 현물 출자에 따른 절차와 준비사항 확인하였는가? • 발기인은 주식의 총수를 인수 후 지체 없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각 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의 전액을 지정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납입(전액 납입제)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까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거나,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산학협력단의 경우, 출자기술에 관한 권리(지식재산권 등)를 기술지주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19	법인설립등기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였는가? • 산학협력단은 교육부 설립인가와 법원의 현물출자인가가 완료 되면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2주 내에 대표이사(또는 대리인)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	각종 신고사항을 이행하였는가? • 4대 보험 신고 : 1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 의무가입 • 취업규칙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자 • 현물출자 부가가치세 신고 : 현물출자는 재화 공급에 해당 • 교육부 설립사항 신고 :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 • 금융거래 개설 : 법인통장, 인터넷뱅킹, 법인신용카드 개설 • 겸직허가 신청 : 학교소속 교수가 임원 등 겸직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	

0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

설립·운영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NO	구분	참고사항
1	제출문	설립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할 것
2	요약문	- 설립목적, 설립기관 개요, 기술지주회사 현황, 출자내역 - 사업계획 - 설립 초기(1단계) 자회사 수, 5개년 사업 기간 자회사 설립 누적 수 5개년 자회사 누적 매출 및 기술지주회사 누적 매출 추정 - 해당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차별화 전략의 핵심
3	기술지주회사 개요	- 설립목적 및 배경, 설립기관 개요 - 기술지주회사 현황 - 회사개요, 대표자 인적사항, 임원현황, 조직구성 * 조직도와 각 부서(팀)의 주요역할 명시, 내부 및 외부조력(전문가, 자문단 등) * 설립 후 1년 내 확보할 조직구조를 기준으로 설립시점에서 추가 계획 제시
4	출자내역	- 기술지주회사 주주현황 - 설립기관별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5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	- 사업내용 - 기술지주회사의 기본업무 및 차별적 역량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초기 설립하는 자회사 사업내용을 제시 - 장현황 및 전망 -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타 기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해당기관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포지션 - 향후 5개년(최소 3개년) 자본(현금, 현물) 출자계획 및 매출계획 - 자회사 사업아이템의 시장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제시 - 추진계획 - 기술지주회사 세부 설립 계획 제시 - 자회사 설립을 위한 세부 계획 제시
6	기대효과	- 대학의 R&D 선순환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 - 자회사 아이템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내용 기술
7	별첨자료	- 임원(임용예정자 포함) 이력서, 재직증명서, 경력사유조회회보서, 성범죄 관련 경력사유 조회 회보서 - 현물출자용 가치평가 요약문, 정관 -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관련 증빙서류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 운영계획서

- ○○○○○○ (기술지주회사명)

년 월 일

○○○○○○(설립기관명)

* 설립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제 출 문

교육부장관 귀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립기관 : (관인)

(설립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술지주회사 : ○○○○○○(회사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요 약 문

1. 설립목적

(정관상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2. 설립기관 개요(설립기관이 복수인 경우 칸을 만들어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분교일 경우 그 사실을 명시)		(전화 :)	
		(팩스 :)	

3. 기술지주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기 업 명		대 표 자	
자 본 금		상시근로자수	
주소	본 사		(전화 :)
	지 사		(팩스 :)
	설립기관		

4 출자내역

가.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주식수	금액(지분)
합 계				

나. 세부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출자기관	출자유형 (기술/현물/현금)	출자금액(지분)
내부출자			
외부출자			
합계			

5. 인력 및 시설 등 설립·운영계획

--

《 목 차 》

I. 기술지주회사 개요	00
1. 설립목적 및 배경	00
2. 설립기관 개요	00
3. 기술지주회사 현황	00
II. 출자내역	00
1. 기술지주회사 주주현황	00
2.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00
III. 기술지주회사 설립 · 운영계획	00
1. 사업내용	00
2. 시장현황 및 전망	00
3. 추진계획	00
IV. 기대효과(사업타당성 평가 등)	00

I. 기술지주회사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설립기관 개요(설립기관이 복수인 경우 칸을 만들어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교인 경우 이를 명시)	(전화 :)		
	(팩스 :)		

3. 기술지주회사 현황

가. 회사 개요 (단위 : 백만원, 명)

기 업 명		대 표 자	
자 본 금		상시근로자수	
주소	본 사	(전화 :)	
	지 사	(팩스 :)	
	설립기관		

나.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생년월일	
주소		(전 화 :)	
		(E-mail :)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		
	~		
경 력	기간	근무처명	담당업무 직위
	~		
	~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등)			

다.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최종학력 (전공 · 학위)	주요경력

라. 조직구성

II. 출자내역

1. 기술지주회사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주식수	금액(지분)
합 계				

2. 세부 출자내역 및 비율

가. 내부출자(산학협력단)

(단위 : 백만원, %)

출자기관명	출자유형 (기술/현물/현금)	출자금액(지분)	세부내역

나. 외부출자

(단위 : 백만원, %)

출자기관명	출자유형 (기술/현물/현금)	출자금액(지분)	세부내역
합 계			

III. 기술지주회사 설립 · 운영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인력 및 시설 등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

IV. 기대효과(사업타당성에 대한 자체평가 등)

0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정관 예시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내용
필수 기재사항	①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
	② 상호 : 유사상호 사전검토 필요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을 예정하는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최저한도 100원 이상, 균일하게, 무액면주식 발행가능('12년 개정「상법」)
	⑤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행주식총수의 1/4규정 삭제('12년 개정「상법」)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일간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선택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 변태설립사항, 여러 종류의 주식발행,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등

정관의 인증

- 원시정관(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효력 발생(공증 면제)

주식발행사항 결정

- 회사설립 시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①주식의 종류와 수, ②액면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③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함

주금납입 (주식의 청약 → 주식의 배정 → 주금의 납입)

- 발기설립의 경우 각 발기인은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전부 인수하고(주식인수증) 지체없이 발기인대표가 지정한 납입은행에 그 인수금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서류(현물출자자산인도증)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술지주회사 표준정관 예>

정 관

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0000(회사명)' 또는 '0000(회사명) 주식회사' 라고 한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1)
- 2)
- 3)
- 4)
- 5)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과 지점) 당 회사는 본점을 (00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00시·도)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00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서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현물출자의 주식배당) 발기법인인 000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금과 함께 현물로 출자가 가능하며 현물출자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별지1의 기재와 같다.(변태설립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제9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

제10조(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주금납입의 지체) 회사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遲滯株金)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過怠金)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주식의 명의개서)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4조(주권의 재발행) ① 주식의 분할·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주주,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제18조(소집)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제19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0조(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2조(이사와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이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 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6조(회사대표) 당 회사의 대표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7조(대표이사)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8조(업무진행)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회의 결의)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계산(計算)

제34조(영업연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0이상)
- 2) 별도적립금 약간
- 3) 주주배당금 약간
- 4) 임원상여금 약간
- 5) 후기 이월금 약간

제37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된다.

부 칙

제38조(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9조(준용규정 및 내부규정)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한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0조(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

제4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0000(회사명)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주식회사 0000 (회사명)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발 기 인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별 지 1【현물출자 현황】

1. 출자자의 성명

현물출자 발기인 00대학교 산학협력단

2. 출자재산의 종류와 수량

권리구분	진행상태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특허	등록	000000000기술	제0000000호

3. 출자재산의 가격 내지 평가액 : 금 000원

4. 이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00,000주

0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

변경·운영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NO	구분	참고사항
1	제출문	• 변경·운영 신청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할 것
2	요약문	• 변경목적, 설립기관 개요, 기술지주회사 개요, 기술지주회사 변경 현황, 출자 변경내역, 세부 출자내역 • 변경·운영계획
3	기술지주회사 변경 개요	• 변경목적 및 배경, 설립기관 개요, 기술지주회사 개요 • 기술지주회사 변경 현황 - 회사개요(변경 전/후), 대표자 인적사항(변경 후), 변경 후 임원현황
4	출자 변경내역	• 기술지주회사 주주현황(변경 전/후) • 변경 후 세부 출자내역 및 비율
5	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	• 사업내용 - 기술지주회사의 기본업무 및 차별적 역량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 설립된 자회사 사업내용을 제시 • 시장현황 및 전망 -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변경 전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해당기관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포지션 - 향후 5개년(최소 3개년) 자본(현금, 현물) 출자계획 및 매출계획 - 자회사 사업아이템의 시장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제시 • 추진계획 - 기술지주회사 변경 후 세부운영계획 제시 - 자회사 설립·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 제시
6	기대효과	• 변경 타당성에 대한 자체평가
7	별첨자료	• 변경내용 증빙서류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등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서

년 월 일

○○○○○(기술지주회사명)

* 변경·운영 신청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제 출 문

교육부장관 귀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변경·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술지주회사 : ○○○○○(법인인감 날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변경·운영 신청기관이 복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요 약 문

1. 변경목적

(정관상 사업목적 등을 기반으로 변경·운영 목적 기재)

2. 설립기관 개요(설립기관이 복수인 경우 칸을 만들어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교일 경우 그 사실을 명시)		(전화 :)	
		(팩스 :)	

3. 기술지주회사 개요(신청기관이 복수인 경우 칸을 만들어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사 소재지			

4. 기술지주회사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기 업 명		대 표 자	
자 본 금		상시근로자수	
주소	본 사	(전화 :)	
		(팩스 :)	
	지 사		
	설립기관		

5 출자 변경내역

가.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주식수	금액(지분)
합 계				

나. 세부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출자기관	출자유형 (기술/현물/현금)	출자금액(지분)
내부출자			
외부출자			
합계			

6. 인력 및 시설 등 변경·운영계획

--

《 목 차 》

I. 기술지주회사 변경 개요	00
1. 변경 목적 및 배경	00
2. 설립기관 개요	00
3. 기술지주회사 개요	00
4. 기술지주회사 변경 현황	00
II. 출자 변경내역	00
1. 기술지주회사 주주현황	00
2. 변경 후 세부 출자내역 및 비율	00
III. 기술지주회사 변경 · 운영계획	00
1. 사업내용	00
2. 시장 현황 및 전망	00
3. 추진계획	00
IV. 기대효과	00

I. 기술지주회사 변경 개요

1. 변경목적 및 배경

2. 설립기관 개요(설립기관이 복수인 경우 칸을 만들어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교인 경우 이를 명시)		(전화 :) (팩스 :)	

3. 기술지주회사 개요(신청기관이 복수인 경우 칸을 만들어 모두 기재하고 대표기관을 명시)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사 소재지			

4. 기술지주회사 변경 현황

가. 회사 개요(변경 전)

(단위 : 백만원, 명)

기 업 명		대 표 자	
자 본 금		상시근로자수	
주소	본 사	(전화 :)	
	지 사	(팩스 :)	
	설립기관		

나. 회사 개요(변경 후)

(단위 : 백만원, 명)

기 업 명		대 표 자	
자 본 금		상시근로자수	
주소	본 사	(전화 :)	
	지 사	(팩스 :)	
	설립기관		

다. 대표자 인적사항(변경 후)

성명(한자)	()	생년월일	
주소		(전 화 :)	
		(E-mail :)	
학	기간	학교명	전공
력	~		학위
	~		
경	기간	근무처명	담당업무
력	~		직위
	~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등)			

라. 변경 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최종학력 (전공 · 학위)	주요경력

※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이력서, 임원의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첨부

II. 출자 변경내역

1. 기술지주회사 주주현황

가. 변경 전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주식수	금액	지분율
합 계					

나. 변경 후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법인명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주식수	금액	지분율
합 계					

2. 변경 후 세부 출자내역 및 비율

가. 내부출자(산학협력단)

(단위 : 백만원, %)

출자기관명	출자유형(기술/기술 외 현물/현금)	출자금액	지분율

나. 외부출자

(단위 : 백만원, %)

출자기관명	출자유형(기술/기술 외 현물/현금)	출자금액	지분율

III. 기술지주회사 변경 · 운영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인력 및 시설 등 변경 · 운영에 관한 사항)

IV. 기대효과(변경 타당성에 대한 자체평가 등)

07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신청 및 운영에 따른 각종 양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20.>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산학협력단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대학명	
	소재지(본교)	전화/팩스
	소재지(분교)	전화/팩스

출자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개요

출자자	성명(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기술지주회사	기업명		
	소재지	본사	
		지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계획서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4. 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처리기관: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20.>

제 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기술지주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본사		
	지사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술지주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산학협력단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본교)	전화/팩스
	소재지(분교)	전화/팩스

출자자	성명(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기술지주회사	기업명			
	소재지	본사		
		지사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로 없음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5. 6. 20.>

제 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

기술지주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본사		
	지사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20.>

[] 설립인가

[] 변경인가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 기관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팩스	
		지사		전화/팩스	
신청 요지					
신청 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교육부	

08 기술사업화 발명자보상 계약서 예시

<발명자보상 계약서 예시 ①>

기술사업화 발명자 보상 계약서

(갑) 00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주 소 :

(을) 00대학교기술지주(주) 대표이사 ○ ○ ○

주 소 :

(병) 00대학교 ○○○과 교수 ○○○

주 소 :

상기 (갑)과 (을)과 (병)은 (병)이 발명하여 (갑)이 (보유/출원)중인 하기의 기술을 00대학교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함)에 기술출자함에 따라 발명진흥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00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하여 발명자 보상을 진행하기로 한다. (을)은 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자회사인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및 주식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한다.

가. (갑)의 기술출자 특허(특허출원) 리스트

나. (을)은 앞서 명시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회사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및 주식매각대금 중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분하며, (갑)은 (을)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00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기술이전 실시료 분배)에 따라 발명자인 (병)에게 보상한다.

다. 배분시점은 제3자에게서 배당금 또는 주식매각대금이 (을)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갑)에게 배분한다.

라. 단, (을)이 자회사로의 기술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였을 경우, (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기술이전 수익 00%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을)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00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기술이전 실시료 분배)에 따라 발명자인 (병)에게 보상한다.

마. 단, 향후 추가 증자 및 그 밖에 가치를 변동시킬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20 년 월 일

<발명자보상 계약서 예시 ②>

발명자 보상 계약서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00대학교 00학과 교수 000(이하 “발명자”라 한다)과 00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는 “00000000”(이하 계약기술이라 한다) 기술의 사업화 협력 및 발명자 보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명자가 발명하고 협력단이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계약기술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계약 당사자 간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하고, 체계적인 발명자 보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술) 본 건의 계약기술은 발명자가 발명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권리를 소유하는 기술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의 계약기술 목록과 같으며 계약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를 포함한다.

제3조(계약내용) ① 제2조의 계약기술 관련 모든 권리 및 사업화 권한은 산학협력단에게 있으며, 발명자는 계약기술의 성공적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실질적 제공에 신의성실을 다해 적극 노력한다.

②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계약기술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 설립(편입 및 재투자 포함)·기술이전 등 기타 사업활동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③ 발명자는 계약기술의 현물출자를 위해 산정된 공인기관의 기술평가금액에 동의하고,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기술가치평가금액을 기반으로 계약기술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는 현물출자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협력단에 발행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계약기술을 자회사 설립(편입 및 재투자 포함), 기술이전 등 기타 사업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은 제2조에 대한 보상으로, 기술지주회사가 계약기술의 이전을 통해 발생시킨 이익 또는 계약기술로 설립(편입 및 재투자 포함)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 실현된 이익 중, 현물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배당받고, 협력단은 이 수익에 대해 일체의 세금을 공제한 잔액의 00%를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⑥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별지 2]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⑦ 발명자는 계약기술을 기반으로 자회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회사의 발전에 신의성실을 다한다.

⑧ 기술지주회사는 계약기술로 설립된 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 매각 시, 기간을 정하여 우선매입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하며, 협력단은 이에 동의 한다. 다만, 지분 매각 시 주당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른 평가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 산학협력단, 발명자, 기술지주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 중에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며 계약기간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단,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제3자에게 공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 발명자, 기술지주회사 중 일방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동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①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발명자는 협력단의 손해에 대해 전부를 배상한다.

제6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관할)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간에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하기로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00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7조 (기타) 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0. 00. 00.

(산학협력단)	기관명	
	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0 0 0 (인)

(발명자)	성명	0 0 0 (인)
	주소	
	주민번호	

(기술지주회사)	회사명	
	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	0 0 0 (인)

[별지 1] 계약기술 목록**계약기술 목록**

1. 기술명:
2. 현물출자액 :
3. 계약기술 목록

[별지 2] 발명자 보상금에 대한 지분**발명자 보상금에 대한 지분**

1. 기술명:
2. 현물출자액 :
3. 발명자 보상금에 대한 지분

09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1. • “기술지주회사”라는 공통된 명칭을 사용하나, 설립 관련 근거법령 및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제도 유형이 다릅니다.

구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주무 부처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설립 방식	인가제	등록제	등록제
설립 주체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은 산학협력단과 함께 설립 가능)	공공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출연(연), 전문연 등)	출연(연)
예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 미래과학기술지주, 에트리홀딩스	아직 없음

• 하나의 기술지주회사는 상기 제도 중 하나의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회사 설립 및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은 해당 근거 법령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특허의 기술가치평가 기관이 따로 있나요?

A2. •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기술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법에 따라 다음의 공인된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기술가치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공인 기술평가기관 → 국가기술은행(www.ntb.kr) 홈페이지 기술평가기관 참조

• 해당 출자기술의 분야와 기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법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요?

A3.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자본금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은 없습니다.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심사 시, 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창업 및 사업화의 역량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합니다.
- 따라서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기술창업 및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술지주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설립인가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적절한 자본금의 규모 설정을 고민 중이시라면
 - 1) 최소 향후 5년 간의 연도별 자회사 설립 및 투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 2) 최소 향후 5년 간의 기술지주회사의 사업 방향 및 조직 규모, 이와 관련한 운영 경비(인건비 등)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 최소 5년간 기술지주회사의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등)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자회사의 현금 투자 등) 등 기술지주회사에 필요한 자금 규모의 산출, 재무계획(안) 마련
 - 3)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출자하고자 하는 현물(기술) 자본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 + 전체 자본금에서 현물자본금의 비율이 30% 초과하여 구성되어야 함
- 상기의 내용을 고려하셔서 최초의 자본 금액이 설정되면 매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을 증자하실지에 대한 전체적인 재무계획(안)을 마련하십시오.

Q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 중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전용공간 확보 및 전담인력 채용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지요?

- A4.** • 기술지주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술지주회사 업무 및 자회사 업무 지원, 창업 보육,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업무 등을 상시 전담하는 임직원을 상시인력에 대한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현재는 산학협력법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정해 놓은 기준이 없으므로, 기술지주회사 업무 전담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설립인가 신청 당시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아래 증빙서류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전담인력 채용 진행 중인 증빙서류 : 채용공고문 및 게시 증빙자료 등
 - 전용공간 확보 증빙서류 : 입주 예정 건물(사무실) 사진 및 평면도, 공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Q5. 우리 대학이 아닌 타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나요?

- A5.** • 2023년 3월 28일에 시행된 「산학협력법」시행령 제44조 개정으로, 타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도 자회사로의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나. 가목 외에 산업교육기관 다. 연구기관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에 따른 연구소 기업 <개정 2012. 7. 26., 2023. 3. 28.>

- 따라서 우리 대학의 기술이 이전된 중소기업, 실험실공장이나 연구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타 대학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우리 대학의 기술이전 없이 현금출자 및 지분 매입을 통해 의결권 있는 지분 10%이상 획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추면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Q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서 자회사 발굴 및 설립 등 기본업무 외 영리사업도 가능한지요?

- A6.**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기까지(일반적으로 5~10년 소요예상)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운영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산학협력법」제36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수익사업)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지주회사의 창투조합 출자 허용, 연구소기업 등을 자회사로 편입, 기술사업화 관련 위탁 업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산학협력단 조직(TLO,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등)과의 협력으로 기술이전, 인큐베이팅, 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로 확대할 수 있으며, 외부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기업 발굴 및 컨설팅, 자회사 마케팅 및 영업 지원을 통한 부가적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4. 12., 2025. 6. 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4. 12.>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자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 4의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 가. 자회사
 -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동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

Q7. 산학연협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을 완료, 설립인가 자문위원회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A7. • 설립인가 자문위원회 개최 및 준비 자료*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자문위원회 개최 전 교육부 또는 협회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발표자료 출력본, 설립인가계획서 출력본, 출자받는 기술가치평가서 원본 및 사본 등

•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25~30분(발표 : 10~ 15분, 질의응답 : 15분)이며,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셔서 발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모델과 사업전략 및 최초 출자되는 자회사 후보기술의 사업성 및 사업계획
- 기술지주회사 투자회수 및 수익 발생 시점까지의 재무계획(최소 5년)
- 해당 대학의 비전과 특화된 연구개발 분야가 잘 조화된 내용 제시 및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설립보다는 운영이 더 어렵기에, 자회사로의 투자회수 전까지의 회사를 운영을 위한 자금 및 전담인력 확보, 수익 창출 방안 등에 구체적인 계획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이후에도 설립인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A8. • 아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은 설립 이후 운영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설립요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에 알려야 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2024. 12. 2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4. 산학협력단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6. 30., 2020. 12. 29., 2025. 6. 2.>

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 2024.12.20.에 산학협력법률 제36조의8제1항제1호의 조항이 개정,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내 기술현물 출자비용 미충족은 설립인가 취소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9. 기술지주회사 운영 중 변동사항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나요?

A9. •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다음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기관(산학협력단)은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변경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근거 : 교육부고시 제2025-20호 제10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고시 제2025-20호, 2025. 7. 10., 일부개정])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 단, 실무적으로 교육부와 의 협의를 통해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에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기 및 연간 조사 응답으로 교육부 보고사항 중 자주 변동되는 사항 일부를 갈음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립기관인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에 공문을 통해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각 보고 항목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의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협회에서 분기별로 안내해 드리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고문헌

- 김유신·이지훈 외(20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매뉴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5), ‘연구소기업 설립 GUIDE BOOK’
- 김유신·이지훈 외(2016), “대학 창의적 자산기반 창업 길잡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고혁진·이지훈 외(2019), “대학發 창업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9),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이지훈(2020), “기술사업화 지원조직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지훈 외(2020),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 김경환·이지훈(2021) 기술자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CEOMAKER
- 이지훈(2021), “기술지주회사 제도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지훈 외(2021), “실험실창업을 저해하는 지식재산 걸림돌 조사 및 분석”, 특허청
- 정재연·이지훈 외(2021),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이지훈 외(2022), “기술지주회사 질적관리 및 기술사업화 거버넌스 확대방안”,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김경환·이지훈(2023),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사업화 지원 길라잡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이지훈 외(2023), “2021년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운영현황 조사보고서”,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이흥우·이지훈 외(2023), “산학협력 길라잡이 I”,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남궁문·이지훈 외(2023),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제2차 기본계획”,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이지훈·심경수 외(2024), “대학 창의적 자산기반 창업 길잡이 2024”,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참조 기사 및 온라인 문헌정보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https://www.kath.or.kr>
-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 (한국벤처투자) <https://www.kvic.or.kr/>
- (협동조합) <https://www.coop.go.kr/home/index.do>
- (창업진흥원) <https://www.kised.or.kr/>
- (벤처기업협회) <https://www.venture.or.kr/#/intro>
- (연구개발진흥재단) <https://www.innopolis.or.kr/inno>
- (한국벤처투자) <https://www.kvic.or.kr/>
-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 <https://www.k-ac.or.kr/>
- (한국엔젤투자협회) <https://home.kban.or.kr/>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매뉴얼(개정)

기획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도우동 과장, 곽혜윤 사무관, 이성화 주무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실 박한석 실장, 박태식 팀장, 서용태 변리사, 강서영 연구원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지훈 사무총장, 김도성 국장, 박송이 차장, 임선영 과장
집필진	이지훈(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박성주(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김도성(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서수지(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박정웅(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박송이(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임선영(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감수	박성수(경상국립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상영(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손세창(광주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이창준(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김유신(한국PCP)
발행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발행일	2025년 6월 26일
가격	비매품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반팀 서용태 변리사 (☎ 042-869-6409)
디자인/인쇄	에코디자인 (☎ 044-868-0054)
I S B N	979-11-86956-34-2

- 본 책자의 원문파일(PDF)은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www.uicc.re.kr) 및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www.kath.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

